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 12.

연구수행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홍순혜(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김혜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혜원(성공회대학교 교수)
변귀연(호남대학교 교수)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조보라(서울여자대학교 석사)
장 샘(서울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

-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발생원인 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육권의 개념과 내용, 교육권 보장 실태를 알아보았다. 셋째,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과 교육권 보장 실태는 어떠한지, 어떤 학생지도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미혼모시설 실무자 16명, 학교교사 252명, 학교사회복지사 2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4명, 학업지속 미혼모 2명, 교사 5명, 학교사회복지사 3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 결과

●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후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18명의 미혼모 중에서 미혼모시설 입소 이전에 학교를 완전히 중퇴한 경우는 1/3 정도였다.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연령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 임신 이후 학업중단의 이유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기 이전에 임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37명의 교사들이 미혼모 학생 지도 현황에 관하여 응답한 결과, 지도했던 임신 학생들 중 전학을 간 학생이 16.2%, 자퇴를 한 학생이 16.2%, 원적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잠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가 65%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미혼모 학생들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신이 교사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자퇴나 전학을 요구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퇴를 권고 받은 학생들은 모두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권과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임신 및 출산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는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조사 대상자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형태에 대해 원적 학교 재학, 원적학교의 위탁교육, 대안학교, 기술 및 취업 교육, 검정고시 등 조금씩 상이한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아기 양육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사회와 학교의 미혼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혼모 학생이 아동도 양육하

고 학업도 지속하고 청소년으로서의 욕구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 중에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경우는 6명(3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알지 못했다. 학교가 안 경우 4명에 대해 휴학권고를, 2명에 대해서는 자퇴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통한 임신 학생지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출산이나 낙태나 혹은 학업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항 결정을 위해 상담해 주는 것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직접 지도의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혼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와 팀을 이루어 비록 학교 내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미혼모 학생을 지원하였다.

●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0% 이상의 교사와 32.0%의 학교사회복지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약 75%, 학교사회복지사의 약 52%가 임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2.7%, ‘자퇴시킨다’가 27.8%, ‘전학 가도록 한다’가 18.1%를 차지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각각 60.0%, 20.0%, 16.0%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집단과 학교사회복지사 집단에서 자퇴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7.8%, 16.0%가 나왔다는 사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대만의 학생 출산휴가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52.0% 이상의 교사와 44.0%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교사에게서 33.6%, 학교사회복지사에게서 54.0%로 나타났다.

●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 취업, 진로 관련 서비스 실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사회복지사나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지원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미혼모시설이나 미혼모 중간의 집 등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관련 요인

심층면접 결과, 학교가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모르고 친구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가 불러오는 임신 후기가 방학이나 졸업과 맞물리면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미혼모 생활시설의 거주지 제공, 타인에 의한 아동 양육, 미혼모시설에서 연결해주는 대학생 멘토의 지원,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학업지속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는 일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희망 요인

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 미혼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학업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미혼모일수록 학업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태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미혼모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응답을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경험을 살펴보니, 미혼부 및 가족의 지지는 매우 미미하였다. 친구들도 약 30% 정도만이 지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임신 사실로 인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미혼모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5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는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으나, 시설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는 7% 미만으로 나타나 인식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들 자신보다는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산 후에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안학교 설치, 성교육 및 임신 예방 교육의 확충을 지적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 감소, 미혼모 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미혼모 학생 관리팀 운영, 다양한 교육 대안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출산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와 경제적 지원, 탁아서비스,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등의 양육비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가 아기를 양육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계비, 양육비, 보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체계가 구축된다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아거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모든 지원에 앞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먼저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모두 95%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편견의 감소와 함께 학업 지속을 보장해 주어야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함의

- 학생들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

연구 결과와 이의 함의를 토대로 도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내용은 다음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 법 개정
 - 교육부 지침 발령
-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 청소년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대안학교 또는 청소년 미혼모만을 위한 새로운 대안학교의 교육을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통해 원적학교 교육의 일정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 이용 방안
 - 청소년 미혼모 교육비 지원 방안
- 교육권 보장 전달체계
 - 1366 서비스에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서비스 연결 기능 추가
 - 청소년 미혼모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대안) 학교 및 교사 간 중재, 상담·보호, 법률 지원, 입양,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관련법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사회적 인식 전환
 - 청소년 미혼모 대신 새로운 용어 사용
 - 사회적 인식 변화 교육 및 논의의 장 마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
| 3. 연구방법 | 4 |
| 1) 문헌연구 | 4 |
| 2) 조사연구 | 4 |
| II.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5 |
| 1.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 5 |
| 2. 청소년 미혼모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6 |
| III.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보장 실태 | 9 |
| 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내용 | 9 |
| 1) 교육권의 개념 | 9 |
| 2) 교육권의 내용 | 10 |
| 3) 교육권의 성격 | 12 |
|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 14 |
| 1) 교육권 보장 실태 | 14 |
| 2) 교육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방안 | 16 |
| 3.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보장 실태 | 17 |
|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19 |
| IV.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 23 |
| 1. 미국 | 23 |
| 1) 10대 미혼모 실태 | 23 |
| 2)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정책 | 24 |
| 3) 미혼모 학업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5 |
| 4) 미국 사례의 시사점 | 33 |

| | |
|--|----|
| 2. 영국 | 34 |
| 1)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 34 |
| 2)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 34 |
|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 35 |
| 4) 영국 사례의 시사점 | 40 |
| 3. 독일 | 41 |
| 1) 청소년 독신모 실태 | 41 |
| 2) 청소년 독신모 교육권 보장 및 지원 정책 | 44 |
| 3) 독일 사례의 시사점 | 56 |
| 4. 일본 | 59 |
| 1) 청소년 미혼모 실태 | 59 |
|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정도와 취업 지원 실태 | 62 |
| 3) 청소년 미혼모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 67 |
|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 74 |
| 5. 대만 : ‘학생 출산휴가제’를 중심으로 | 75 |
| 1) 중고등학생의 임신 및 출산 실태 | 75 |
| 2)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정책 | 76 |
| 3) 교육부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실례들 | 78 |
| 4) 대만 사례의 시사점 | 79 |
| | |
| V. 조사방법 | 81 |
|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조사 방법 | 83 |
|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3 |
| 2)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4 |
| 2. 미혼모시설 실무자 대상 조사 방법 | 85 |
| 1) 미혼모시설 실무자 설문조사 방법 | 85 |
| 2) 전국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 86 |
| 3. 교사대상 조사 방법 | 86 |
| 1)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6 |
|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7 |
| 4.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조사 방법 | 88 |
| 1)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8 |

| | |
|--|------------|
| 2)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8 |
| VI. 설문조사 결과 | 89 |
|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9 |
| 1)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 89 |
| 2) 미혼모시설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 90 |
| 3) 교사의 일반적 특성 | 91 |
| 4) 학교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 93 |
|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관련 실태 및 욕구 | 94 |
| 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 94 |
|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 97 |
|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 98 |
| 4)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100 |
| 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 현황 및 태도 | 104 |
| 1) 학교의 지도 현황 | 104 |
| 2)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 107 |
| 3)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 111 |
|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 112 |
| 5.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학업지속 희망여부 관련 요인 | 113 |
| 1) 학업지속 관련 요인 | 113 |
| 2) 학업지속 희망 요인 | 114 |
| 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견 | 115 |
| 1)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 115 |
|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17 |
| 3)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 120 |
| 4)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121 |
| VII. 심층면접 결과 | 129 |
|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29 |
| 1) 학업 지속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 129 |
| 2) 면접 당시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 133 |
|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36 |

| | |
|--|------------|
| 1) 일반적 사항 | 136 |
|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 137 |
|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 137 |
|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 137 |
|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 138 |
|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 138 |
|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 139 |
|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 139 |
| 3.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40 |
| 1) 일반적 사항 | 140 |
|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 140 |
|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 141 |
|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 141 |
|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 142 |
|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 142 |
|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 143 |
|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 143 |
| 4.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 결과 | 143 |
| 1) 청소년 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점 | 144 |
| 2) 시설에서 청소년 미혼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145 |
| 3)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 및 사회적 서비스 | 147 |
| 4)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을 지속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 | 148 |
| 5)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 | 149 |
| 6)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 | 150 |
| V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51 |
| 1. 요약 및 결론 | 151 |
| 1) 연구과정 요약 | 151 |
| 2)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151 |
| 2. 연구의 함의 | 166 |
| 3. 정책적 제언 | 169 |
| 1)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 169 |

| | |
|-------------------------------------|-----|
| 2)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 172 |
| 3)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 이용 방안 | 175 |
| 4) 교육권 보장 전달체계 | 176 |
| 5) 관련 법 개정 | 177 |
| 6) 사회적 인식 전환 | 180 |
| | |
| IX. 부록 | 187 |
| 부록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대상 설문지 | 187 |
| 부록 2. 미혼모 시설 실무자 대상 설문지 | 202 |
| 부록 3.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지 | 210 |

| | |
|--|-----|
| <표 II-1> 입양기관의 미혼모 연령 | 6 |
| <표 IV-1> 미국 오하이오주 LEAP 프로그램 내용 | 31 |
| <표 IV-2> 독일의 시설 이용 요보호 아동·청소년 실태 | 43 |
| <표 IV-3>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 58 |
| <표 IV-4> 일본의 모(母) 연령별 출산 아동 수 | 60 |
| <표 IV-5> 연도별 20세 미만의 인공임신중절 건수와 비율 | 61 |
| <표 IV-6> 조사응답자(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던 10대 여성)의 연령별 분포 | 62 |
| <표 IV-7> 고등학생 성경험 비율 | 75 |
| <표 V-1> 조사대상자 유형에 따른 조사 진행방식 | 81 |
| <표 V-2> 조사대상자별, 연구방법별 조사의 내용 | 81 |
| <표 VI-1>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 90 |
| <표 VI-2> 미혼모시설 및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 91 |
| <표 VI-3> 교사의 일반적 특성 | 92 |
| <표 VI-4> 설문조사 참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 93 |
| <표 VI-5> 중고등학교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 95 |
| <표 VI-6> 청소년 미혼모별 학적 변화와 최종 학력 | 96 |
| <표 VI-7>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 97 |
| <표 VI-8> 학업지속을 원하는 이유 | 97 |
| <표 VI-9> 청소년 미혼모에게 바람직한 교육형태 | 98 |
| <표 VI-10>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 여부 및 현재 학업지속 여부에 따른 청소년 미혼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방법 | 100 |
| <표 VI-1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101 |
| <표 VI-12> 미혼모시설 실무자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101 |
| <표 VI-13>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102 |
| <표 VI-14>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103 |
| <표 VI-15>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사실에 대한 학교의 반응 | 104 |

| | |
|--|-----|
| <표 VI-16>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사실에 대한 학교의 인지 여부, 반응 및 학적변화 | 105 |
| <표 VI-17> 미혼모 학생 지도현황 | 106 |
| <표 VI-18> 학교사회복지사의 임신학생 지도 현황 | 107 |
| <표 VI-19>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견해 | 108 |
| <표 VI-20> 교사가 응답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 태도에 따른 이유 | 108 |
| <표 VI-21>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 태도에 따른 이유 | 109 |
| <표 VI-22>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 110 |
| <표 VI-23> 출산 예정인 임신 학생 발생 시 현재 근무학교의 예상 조치 | 111 |
| <표 VI-24> ‘출산휴가제’에 대한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태도 | 111 |
| <표 VI-25> 청소년 미혼모가 제공받은 지역사회서비스 | 112 |
| <표 VI-26> 학업지속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 | 114 |
| <표 VI-27> 학업지속 희망여부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요인들 | 115 |
| <표 VI-28> 임신 및 출산 사실에 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 116 |
| <표 VI-29>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태도 | 118 |
| <표 VI-30>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 당사자 책임성 인식 | 118 |
| <표 VI-3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 태도에 대한 인식 | 119 |
| <표 VI-32>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 사항 | 120 |
| <표 VI-33>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 121 |
| <표 VI-34>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 122 |
| <표 VI-35>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 | 123 |
| <표 VI-36>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 124 |
| <표 VI-37> 미혼모시설 실무자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 125 |
| <표 VI-38>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 126 |
| <표 VI-39>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 127 |

| | |
|---|-----|
| <표 VII-1> 학업 중단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사항 | 133 |
| <표 VII-2>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일 및 학교자퇴 시기 | 134 |
| <표 VII-3> 교사들의 일반적 사항 | 137 |
| <표 VII-4>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일반적 사항 | 140 |
| <표 VIII-1> 법 개정 내용 | 171 |
| <표 VIII-2>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추가 내용 | 171 |
| <표 VIII-3> 대안학교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방안 | 174 |
| <표 VIII-4> 청소년 미혼모 교육비 지원 방안 | 176 |
| <표 VIII-5> 관련 법 개정 내용 | 180 |
| <표 VIII-6> 사회적 인식 변화 방안 | 181 |

그림 목차

<그림 VIII-1> 청소년 미혼모 지원 one-stop 종합보호체계 17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성개방화에 따라 성경험 청소년 수의 증가, 청소년 성경험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청소년 미혼모¹⁾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혼모수는 약 4천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도 이후에 와서는 가족개념의 변화로 인해 아기를 낳아 직접 양육하는 10대 미혼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15세~19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10대 미혼모를 지칭하는 ‘리틀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한 케이블 방송에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리틀맘의 삶이 소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이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성교육이나 미혼모 발생 이후의 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회적 이탈자로 규정되고 자녀출산에 필요한 도움만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현행 대책은 이들의 사회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반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 이후 사후적인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교육권 보장을 통한 장기적 자립을 보장하는데 주안점

1) 미혼모(未婚母)는 ‘아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未婚)에서 아이를 낳은 모’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의미는 언젠가는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상적 상태로 전제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요즘은 단순히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비혼(非婚)을 토대로 한 비혼모(非婚母)라는 용어가 전문가와 여성운동가 중심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중적 의미에서는 아직도 미혼모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 비혼모 대상 연구들에서도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혼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도 미혼모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을 두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는 적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 국가들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 또는 정서적 안정을 돕고 아동양육 관련 서비스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대만에서조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출산 예정 학생들에게 ‘출산휴가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권의 보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아동 발달권의 보장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직은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의 99.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통계청, 2006)²⁾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CAPD, 1996).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학업중단은 결국 취업관련 지식이나 기술부족으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참여에 장애요소가 되며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 CAPD, 1996). 이럴 경우 이들의 사회복지 의존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혼모의 빈곤문제는 다시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이 ‘낮은 교육 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은 미혼모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미래를 보장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를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

2)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학교 졸업자 수는 612,936명이었으며 이 중 상급학교 진학자수는 611,496명이었다.

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학교교육을 지속하거나 취업교육을 이용하여 적응에 성공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교육권 등 이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향후 이들의 자립과 적응을 돕는 보다 궁극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인 동시에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에 대한 근거를 연구하고,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들을 검토하고,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도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교육권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교육권이 현재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문헌이나 교칙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외국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및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또는 간담회)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실태 및 경험, 학적상태, 학교의 지도현황,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바람직한 교육권 보장 방안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분석,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정책 시사점 등을 바탕으

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1) 문헌연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논문,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내용과 학교 현장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칙과 정부의 관련법들도 문헌연구에 함께 포함시켰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외국의 교육권 보장 현황(학교에서의 학업지도 현황을 포함하여)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유럽 2개국(영국, 독일), 아시아 2개국(일본, 대만) 등 총 5개국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각 나라에서 출판된 저서, 논문, 정책 보고서, 인터넷자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학업지도 방안과 관련 사회적 서비스들을 살펴보았다. 대만의 경우는 2007년 9월부터 도입된 ‘학생 출산휴가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2007년 7월 6일 우리나라의 MBC 시사 프로그램 W에서 방영한 “대만의 10대 미혼모 대책”이라는 방영자료에 근거하였다.

2) 조사연구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경험, 학적상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바람직한 학업지속 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V. 조사방법’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II.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김혜선·김은하, 2006).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의식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노현정, 2002;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위의 개념 정의에서 공통적인 것은 미혼모라고 부를 때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여성과 아기를 출산한 여성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 정의와 통념을 고려하여 미혼모를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으로 개념 정의하고, 거기에 연령 기준을 첨가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미혼모 개념은 아이를 낳기 위한 정상 상태로서 혼인을 전제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점차 미혼모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비혼모’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아직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여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도 미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UN 산하의 WHO(2004)는 청소년 임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보고서에서 ‘청소년(adolescent)’이라는 용어가 흔히 ‘10대(teenager)’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고 따라서 ‘청소년 임신’은 ‘10세~19세 여성의 임신’이라고 정의하였다(WHO, 2004), 청소년 임신에서 12, 13세 어린 여성과 19세 여성의 임신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청소년 임신을 10세~14세 청소년, 15세~19세 청소년으로 나누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WHO, 2004).

본 연구는 WHO의 청소년 임신 정의에 근거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0대(10세~19세) 여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정의는 본 연구의 목적이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충분히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2. 청소년 미혼모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미혼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은닉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는 미혼모의 연령 중 15세에서 19세가 전체의 48.3%라고 보고했는데(한영주, 1998),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에 발표한 24.8%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1990년대에는 10대 미혼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윤미현·이재연, 200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의 입양 아동 가운데 미혼모의 아이가 전체 입양아의 90.0% 이상(한겨레신문 2001.5.9)이고, 전체 미혼모 중 10대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에는 24.9%이었으나 2000년에는 62.0%로 크게 늘어났다(홀트 내부자료, 2001; 김경주, 2001). 그러나 2000년 이후에 4대 해외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 중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007명(58.3%), 2003년 1,748명(46.1%), 2004년 1,355명(39.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허남순·노충래, 2005).

〈표 II-1〉 입양기관의 미혼모 연령 단위(명/%)

| 연령 연도 | 15세 미만 | 16-20세 | 21-25세 | 26세이상 | 계 |
|----------|----------|-------------|-------------|-----------|-------|
| 2002 | 180(5.2) | 1,827(53.1) | 1,126(32.8) | 305(8.9) | 3,438 |
| 2003 | 172(4.5) | 1,586(41.6) | 1,396(36.6) | 662(17.3) | 3,816 |
| 2004 | 122(3.5) | 1,233(35.8) | 1,170(34.0) | 918(26.7) | 3,443 |

출처 : 허남순·노충래, 2005.

미혼모 중 학생의 비율을 보면 1984년에 비해 1996년에는 0.4%에서 28.7%로 높은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어 10대 학생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도미향·정은미, 2001에서 재인용). 또 미혼모의 비율이 2002년 24.6%, 2003년 18.8%, 2004년 16.7%로 조금씩 줄고 있으나 여전히 미혼모의 직업 중 학생이 무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허남순·노충래, 2005).

또한 미혼모의 학력을 보면 전체 미혼모 중고등학교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77.4%, 2003년 78.4%, 2004년 78.0%였다(허남순·노충래, 2005). 이것은 미혼모의 학력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10대의 경우 연령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수준이 낮고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학업지속이 곤란하므로 자연스럽게 저학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도미향·정은미, 2001). 실제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미혼모들은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낮고 대부분이 복지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지, 2000).

이와 같은 우리나라 10대 미혼모나 미혼부의 중학교 중퇴 혹은 고등학교 중퇴는 앞으로 이들이 고교졸업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들의 학업 중단으로 인해 미래 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Barro, 1984; 윤미현, 2002에서 재인용)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윤미현·이재연, 2002).

미혼모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윤미현·이재연(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첫 성관계 연령이 16세에서 19세인 경우가 73.1%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 이상 임신한 경우도 22.3%에 달해 중학교 저학년에서의 효과적인 성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 미혼모의 재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대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임신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대 미혼모에 비해 더 크다(Roosa, 1991; 윤미현·이재연, 2002에서 재인용). 또한 다른 사회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

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자신은 낙인과 냉대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이시백 외, 2002;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더구나 청소년 미혼모일 경우 청소년에게 두발의 자유마저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낙인과 냉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미혼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도 평균 이하로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혼부로부터 받는 지지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안재진·김지혜, 2004), 미혼모가 삶의 위기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 중단이라는 교육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후 저임금 직종에의 고용으로 인한 빈곤, 낙인, 냉대,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에다 불안정한 산후조리, 임신 중독 등 의학적 위기까지 이중삼중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보장 실태

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내용

현재까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일반적인 교육권에 대한 개념 논의로부터 도출하고자 한다.

1) 교육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육권에 관한 해석은 ‘교육에 관한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강인수, 1998; 김정래, 2002에서 재인용). 이렇게 보면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 다시 말해 ‘학습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무로 인해 부여받은 일종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권한’을 ‘권리’라고 이해할 경우, 교육에 있어서 교육하는 사람의 직무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정래, 2002).

이러한 관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에 있어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락권의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락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설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락권을 위해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이재명, 2007에서 재인용).

2) 교육권의 내용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권의 내용을 헌법의 차원, 교육기본법, 국제 조약의 차원에서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차원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은 단순히 교육받을 권리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헌법 ②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권은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와 교육 시킬 보호자의 의무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 교육기본법의 차원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을 받을 권리와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습권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조건에 상관없이 무차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3) 국제 조약의 차원

국제조약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청소년이 처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제2조 1)”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 ①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협약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1항 마’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학교 교육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 ①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교육권의 성격

교육권의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교육권의 성격은 도덕권, 기본권, 사회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도덕권으로서의 교육권

교육받을 권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교육권은 실정법이 보장하건 보장하지 않건 간에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권³⁾이다(김정래, 2002).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교육받을 권리는 이미 인정되어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서는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을 통해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1959년 아동권리선언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근거는 특히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 고유의 요구와 관련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아동의 성장·발달과 인격 완성 및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가 아동의 학습권이다. 그리고 학습권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중심으로서 기본적인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고 인간의 성장 발달권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권이다(황성기, 1994).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직 미성숙⁴⁾하고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게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권리가 되는 셈이다.

(3)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

교육권은 도덕권이며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 보장은 교육권을 사회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실천 가능

3) 도덕권은 비록 실정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권리이다(김정래, 2002).

4) 여기서 ‘미성숙’은 성인과 비교하여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과 성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김정래, 2002).

성을 갖는다.

마샬(Marshall)(1992)의 시민권의 3가지 범주⁵⁾ 중에서 교육권은 사회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는 사회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에 교육제도를 포함시켰다(안치민, 2003). 이것은 교육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나 교육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의 측면에서는 교육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교육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권의 핵심적 성격은 사회권적인 성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1) 교육권 보장 실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권리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 중의 하나인 무차별의 원칙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관습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의 냉대를 받고 거부되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그들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완전한 인격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불분명한 미래의 진로 및 경제적인 빈곤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Young, Martin, Young, & Ting, 2001; 김만지, 2004에서 재인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립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말한다. 사회권은 주로 20세기 이후 확립된 것으로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Marshall & Bottomore, 1992; 안치민, 2003에서 재인용).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한 연구(윤미현·이재연, 2002)에서 교육 정도가 중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인 경우가 31.6%, 고등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인 경우가 61.5%로 나타나 이들의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 임신에 대한 학교의 조치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자퇴하라고 했다는 응답이 약 20.0%, 알아서 자퇴했다는 응답이 약 20.0% 정도로 나타났다. 만약 학생의 임신 사실을 학교에서 알고 나서 자퇴권고의 형식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당사국은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28조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학교 측에 의한 자퇴권고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변호사협회에서 펴낸 『아동권리메뉴얼』이란 책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자퇴권고는 형식적으로 자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강제성을 배경에 깔고 있으므로 일종의 간접강제이며, 자퇴를 권고하는 단계라면 당해 학생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미 학교생활에 친숙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이고 심지어 학교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의 상태에서 자퇴권고는 오히려 그 후에 학교생활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하승수·김진, 1999).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칙을 살펴보면, 자퇴에 관한 규정에서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생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2001)에서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의 학교가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 대해, 또 13.2%의 학교가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 54.0%의 학교가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운동사랑방, 2001).

그런데 이 규정은 지극히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는 학교 구성원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고정된 잣대를 가진 규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시대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에게 행해지는 퇴학 처분이나 자퇴권고가 과연 인권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과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 교육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방안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즉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서비스로서 물리치료, 작업 치료 등의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용 교구나 학습보조기,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것은 단지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단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양육희망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12.1%에서 2005년 31.7%로 증가했다(donga.com. 2007. 10. 6). 이것은 입양아 수 감소와 입양아 중 미혼모가 낳은 아동 비율의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90년대 80.0% 수준에서 2000년 이후 60.0%대로 줄었다. 물론 양육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4.5세로 전체 미혼모 평균인 21.4세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donga.com. 2007. 10. 6)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심리적 지원, 보육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10대 미혼모가 학교로 복귀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Rich·이수연, 2000)에서 미혼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아동보육, 교통비, 여타 지원 등 복지정책의

차이가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부모나 조부모와 살고 있는 미혼모일수록 학교복귀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적·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학업 지속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보장 실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인적인 부도덕한 성행동을 한 사람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편이다. 실제로 미혼모 복지에 대한 한인영(1998)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인 미혼모의 62.0%가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든 것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추측할 만하다. 더구나 미혼모 중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라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아직은 미성숙하고 발달 과정 중어서 있어서 성인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진취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미 미혼모 문제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에 대한 지원과 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위주의 정책을 우선시 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미혼모를 개인의 병리현상으로만 바라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그들이 사회적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한인영, 1998).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보호와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고, 10대 미혼모 특성과 실태(윤미현·이재연, 2002; 한인영, 1998), 미혼모 정책(김재득·이행숙, 2002; 도미향·정은미, 2001; 박인선, 1998; 한인영, 1998; 허남순·노충래, 2005), 10대 미혼모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김만지, 2000; 김만지, 2001; 김연희, 2002; 김혜련, 2002; 김효준, 2001), 10대 미혼모의 경험과 양육 결정 체험(김혜

선·김은하, 2006)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보장 실태가 어떠한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미혼모가 안전하게 분만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미혼모 보호 시설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2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연도별 보호 시설의 이용 수 현황을 보면 2000년에 1,274명에서 2003년에 1,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가 2003년에 3,700명이었던 것을 보면 미혼모 시설 이용률은 절반 정도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 이것은 미혼모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인권을 존중해 줌으로써 미혼모 시설을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또 미혼모의 출산 후 장래계획에서 10대 미혼모의 76.9%가 아기를 입양시키겠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36.9%의 10대 미혼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또 36.2%의 10대 미혼모가 아기를 맡길 임시위탁시설이 있다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겠다고 응답했다(윤미현·이재연, 2002). 이것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기의 장래에 대해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죄인처럼 바라보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을 포기하는 미혼모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한 연구에서 미혼모들은 아기를 포기하도록 권유되거나 강요되었고, 친권 포기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는 느낌과 분만 후 아기와 애착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친권포기 결정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수록 친모증후군 증상이 더 심했다고 보고했다(박인선, 1998에서 재인용). 이것은 미혼모에 대한 출산전후 서비스에 있어서 미혼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과거에는 미혼모라고 하면 대다수가 입양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를 직접 키우려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에 실시한 미혼모 욕구 조사 결과 37.7%의 미혼모가 재정적인 지원만 있다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했다(허남순·노충래, 2005). 또 미혼모보호·자립시설의 한 관계자는 “5년 전만 해도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가 15.0% 정도였다면, 지금은 65.0% 이상이 양육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2006년에 국내 입양이 1,694명에서 1,332명으로 줄었고, 국외입양도 2,365명에서 1,899명으로 줄어들었다(hani.co.kr. 2007. 8. 13).

물론 이것은 2000년 이후 전체 미혼모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상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20대 미혼모에 비해 아동을 양육하려는 선택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지는 셈이 된다.

이처럼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와 양육 아동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그들을 비난하고 사회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미혼모와 그 자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혼모의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미혼모자시설, 양육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그룹홈),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이 있다. 미혼모자시설과 양육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은 아동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미혼모자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

의 건강을 회복하고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출산전후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동안 미혼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2006년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있다. 입소 기간 동안 숙식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혼모들의 개별적인 욕구나 능력에 맞추어 직업을 훈련하거나 학습을 보충해줌으로써 미혼모시설 퇴소 후 학교 복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2007년 현재 전국에 17개소가 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항 6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1년 동안(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연장기간은 총 1년 이내로 한다)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기서는 숙식보호서비스, 의료지원, 자립지원,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곳의 수용률은 현재 110.0%일 정도로 포화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donga.com. 2007. 10. 6).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그들이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라면,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서 2006년 12월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부자복지시설로 추가되었고 2007년 10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부자복지시설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2년동안(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보호시설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출산한 미혼모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곧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정서적 불안정과 주거지 불안정 등으로 인한 재임신 가능성을 낮춘다는 데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호시설이 2006년 현재 전국에 41개 있다. 보호 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는다.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하거나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자가정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모자자립시설이 전국에 4개소가 있다.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은 주로 혼인 후 배우자 사망, 또는 배우자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혼모가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김재득·이행숙, 2002).

IV.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1. 미국

미국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개인생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각 주 정부의 자율,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은 미혼모, 한부모 정책의 기초를 이룬다.

1) 10대 미혼모 실태

미국의 10대 임신비율, 출산율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다. 미국의 10대 청소년에 의한 출산은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미국 전체 출산의 13.0%에 해당되었다(Allen-Mears, 2007). 최근 미국의 10대 출산에 대한 통계는 그나마 고무적이다. 1991년과 2002년 사이에 10대 출산 비율은 30.0% 감소하였다. 10대 각 연령대 별로 또 모든 인종 별, 민족 집단 별로 보아도 감소추세에 있다(Thomas & Dimitriv, 2007). 이렇듯 1990년대에 들어서서 10대의 혼외출산, 혼전임신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Anda, 2006) 여전히 유럽연합이나 다른 OECD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허남순·노충래, 2005). 미국의 10대 소녀 10명 중 4명 정도가 적어도 한 차례 임신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10대 출산의 78%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신미식, 2002). 그러나 혼외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보고에 의하면 1980년에서 2003년 사이 10대 출산 비중은 전체 미혼 여성 출산 중 19%에서 53%까지 매우 높아지고 있다. 10대 임신의 약 74%~95%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었으며, 2000년 임신한 10대 가운데 58%는 출산을 하였으나 28%는 낙태를, 15%는 유산을 하였다(허남순·노충래, 2005). 2003년 10대 출산율은 미국 전체 출산율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10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녀양육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청소년 중에 임신을 알고 난 직후 64%의 응답자가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36%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

에는 아이를 원해서 혹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여서(46.2%), 낙태나 입양을 반대해서(31.5%), 아이를 원하고 또한 입양이나 낙태를 반대해서(19.0%),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아이를 원해서(3.3%)였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식, 2002).

2)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정책

미국의 10대 미혼모 발생으로 이들의 수용문제, 학업, 직업문제 및 부모교육 문제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0대 임신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업중퇴 및 불충분한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에 부족한 비전문적 기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곧 미래 사회의 노동생산성을 위협하게 되었다(Adams, Taylor, & Pittman, 1989; 김재득·이행숙, 2002에서 재인용). 즉 10대 미혼모 문제는 학업중단, 저소득, 빈곤, 복지의존이라는 순환적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다음은 미국의 한 10대 미혼모에 대한 기사이다.

10학년생인 조애나는 터질 듯한 배를 내밀고 출산일 이틀 전까지 학교에 다녔다. 예쁜 딸아이를 낳고 지금은 남자 친구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이 낳기 며칠 전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내게는 철딱서니 없게 느껴지는 'excited'라는 대답을 했다.

계획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그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단다. 산후조리 기간인 두달이 지나면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두 달 동안의 결석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양해를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받아야 한다.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한다. 이 미혼모에게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밖의 어른들은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그저 현실을 인정할 뿐이다([http : //theko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http://theko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한 10대가 아이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10대 미혼모의 경우 단지 3분의 1 정도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신미식, 2002). 그들은 출산을 뒤로

미룬 여자 청소년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아 이들 가운데 1.5%만이 30세가 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한다(허남순·노충래, 2005).

일찍이 1972년 미국의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다는 것이 그녀에게서 교육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972년 교육법안 제9조(Title IX : 1975년 7월 효력 발생)는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는 단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llen-Meares, 2007).

이렇듯 교육 법안에는 임신 및 출산을 한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대 부모는 자신들의 학업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시적 취업 및 복지 의존의 위험이 높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성인기에 요구되는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가 아기는 발달지체, 조산, 저체중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학업을 계속하는 10대 부모는 아동양육, 교통편, 의사와의 진료약속, 엄마, 딸, 학생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결국 그들의 교육적 실패에 기여한다.

미국의 새로운 사회복지 개혁법안인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는 각 주가 혼인 외 출산을 예방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특별한 강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10대 부모들은 시간 제한적이고 노동을 요구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받을 수 있다. TANF는 수혜대상자에게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어른이 보호하는 집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여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이에 상응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TANF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Kaplan, 1997).

3) 미혼모 학업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미국은 10대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순결교육인 절제교육프로그램과 피임법을 중심으로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허남순·노충래, 2005).

① 절제교육프로그램(abstinence education)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나 성병의 종류와 그 피해를 이해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성행위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다. 절제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한 어린시기부터 자아존중, 자기절제력, 타인에 대한 가치 등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②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교육을 위해 학교 일선 교사에게 성교육을 훈련시켜 임신과 출산, 피임방법, 성병의 위험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성예방 프로그램(prevention program in school)을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 내 예방프로그램(prevention program in community)은 10대 임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지역연합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임신 예방 차원에서 건강, 교육, 직업훈련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혼모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자기 계발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가 동참하는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이 이미 미혼모가 된 청소년들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이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임신 또는 출산한 10대 미혼모의 교과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혼모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 내 교과교육프로그램 TAPP, 주 지원 학교기반 서비스 LEAP,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 밖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 학교 내 교과 교육 프로그램 : TAPP(Teenage Parenting Program)⁶⁾

미국에서 임신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 내 10대 부모 프로그램(Teenage Parenting Program : TAPP)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10대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적은 곳에서 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학업을 지속,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학업성취 지원이라는 취지의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학업과 육아 성취,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신모와 청소년 미혼부모에게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적, 의료적,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내-학교(school-within-school)의 개념으로 학생-교사 비율을 소규모로 특별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이들의 학업성취와 졸업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해준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혼모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TAPP의 사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임신하여 부모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청소년과 그 가정의 건강, 교육, 경제적 기회, 자급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추구하며 달성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TAPP는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10대(여자 청소년은 19세, 남자 청소년은 21세까지)와 아기, 가족에게 포괄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 또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에 미국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의 TAPP를 소개한다.

6) 일반적으로 10대 부모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TAPP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full name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Arizona 주의 TAPP는 Teenage Parent Program을 나타내며 또는 CA주 Santa Barbara 카운티의 경우 Teenage Parenting Program 혹은 Teenage Pregnancy and Parenting(TAPP) Program으로 사용함. 샌프란시스코에서는 Teenage Pregnancy and Parenting Project를 TAPP라고 하며, 미네소타주의 경우 Teenage Pregnancy and Parenting Program을 TAPPP로 쓰기도 함.

①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 TAPP⁷⁾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경우 TAPP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 가정생활프로그램(the Adolescent Family Life Program : AFLP) 과 Cal-Learn프로그램이다.

가. 청소년 가정생활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때에 사례관리자가 사정, 옹호, 적절한 지도, 지원, 의뢰와 부조의 도움을 준다. 임신했거나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10대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향상시키고, 자기 충족을 형성하며, 아기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 연이은 임신을 지연시키면서 경제적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며 완수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나. Cal-Learn 프로그램 대상

Cal-Works부조 수급자인 18세 미만의 임신했거나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10대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성과 지급적 성격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이다. 졸업을 위한 학교출석과 학점취득이 의무적이며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며 보상지급이 가능하다.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10대의 학교출석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 교통비, 학비가 제공된다. 사례관리자는 10대 부모가 교육적 목표를 갖고 직업선택과 인생의 목적을 탐색하고 이것을 고용기회로 연결시키도록 도와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al-Learn 프로그램의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와 동등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10대 부모
- 만 19세 미만의 Cal-Work 수급자
- 만 19세 이전에 Cal-learn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세인 자는 원하면 20세까

7) [http : //www.sbcphd.org/family/tapp.html](http://www.sbcphd.org/family/tapp.html),
[http : //www.sbcphd.org/family/cal_learn.html](http://www.sbcphd.org/family/cal_learn.html)

지 참여가능하다.

○ 참여자 요구사항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상응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에
출석해야한다.

- 10대 부모 학교에 의해 규정된 전일제 수업참여

○ 지원서비스

- 아동양육

- 교통비

- 관련 비용

○ Cal-Learn 보너스

- C(2.0)학점이상 받으면 만족할 만한 학업성취로 보고 1년에 \$100 4회 지
급한다.

-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면 \$500 지급한다.

② 샌프란시스코의 학교-지역사회기반 TAPP : Teenage Pregnancy and Parenting
Project⁸⁾

이 프로젝트의 사명은 임신한 10대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 건강교육, 영아
사망을 줄이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체중 출산아와 10대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 직업, 부모교육서비
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제공자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유
지한다.

○ 역사 및 대상

1981년에 시작된 이 TAPP는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제공하는 학교-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21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
며 매년 임신한 10대, 출산한 10대 미혼부모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동보
육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http : //www.fsasf.org/programs/children_youth_family.html](http://www.fsasf.org/programs/children_youth_family.html)

[http : //www.ed.gov/pubs/Compendium/ch4c.html](http://www.ed.gov/pubs/Compendium/ch4c.html)

○ 서비스모델

TAPP는 임신했거나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10대, 그들의 형제, 그리고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두 개의 또래 교육모델 프로그램 - T-RAPP와 TTCB - 이 제공된다. 임신예방을 성취하기 위한 10대 자원(Teenage Resources to Achieve Pregnancy Prevention : T-RAPP)는 일차적으로 7학년~8학년의 10대를 타겟으로 하며, TTCB(Together Taking Care of Business) 남학생 책임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을 타겟으로 한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10대를 Junior League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과 생활기술을 강조하며, 아동발달서비스는 15세 이하의 임신한 10대 또는 10대 부모에게 제공된다.

○ 평가모델

평가 자료는 사전, 사후 질문지를 통해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측정한다. 프로그램 보고서는 인테이크시, 임신결과, 그리고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측정한다.

(2) 주(州)지원 학교기반 서비스 : LEAP(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주차원(state-wide)에서 지원하는 학교기반(school-based)서비스 LEAP(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LEAP를 소개한다.

○ 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

오하이오주의 LEAP는 임신했거나 부모가 된 복지수급 대상 10대들의 학교 출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향상된 취업 결과와 복지 의존성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 참여자들은 학교 등록, 학교 출석, 대학 등록, 복지 수급 참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대상

GED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복지수급 대상 중 20세 미만(10대)의 미혼 모가 대상이다.

○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학교 또는 GED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각 참여자를 위하여 사례관리자를 제공하며, 사례관리자의 인정 하에 아동보호와 이동 지원을 제공한다.

〈표 IV-1〉 미국 오하이오주 LEAP 프로그램 내용

| 구성요소 | 제공(자) | 기간 | 내 용 |
|-------------|--------|---------|--|
| 재정 인센티브 | | 프로그램 내내 | 학교 또는 GED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복지 급여 외 \$62을 더 지급하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월 복지 급여 외 \$62을 지급한다. 만약 10대 미혼모들이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학교에 등록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10대들은 그들이 이행할 때까지 매월 복지 급여에서 \$62을 삭감한다. |
| 사례관리 | 사례 관리자 | 프로그램 내내 | 10대 미혼모들은 사례관리자에게 배정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학교 출석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도와준다. |
| 아동보호 및 이동지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내 | 10대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이동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들은 단지 사례관리자의 승인하에만 제공된다. |

출처 : Guide to Effective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Ohio LEAP, <http://www.childtrends.org/Lifecourse/Programs/OhioLEAP>

(3) 대안학교 모델

백인 밀집지역과 같이 미혼모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10대 미혼모 만을 위한 특수고등학교(소위 Mother High)가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 미국 플로리다주와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대안학교 모델을 소개한다⁹⁾.

① 플로리다주의 COPE(Continuing Opportu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

플로리다주 북부에 위치한 10대 미혼부모를 위한 대안학교로 주와 시의 교육

9) 허남순·노충래, 2005.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의 아동은 대안학교와 연결된 탁아서비스센터에서 보육하며 대안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학업과 검정고시(GED) 준비를 지원한다.

○ 교육 및 서비스 내용

건강보호, 교육, 아동양육훈련 및 산전 후 교육, 가족계획, 상담, 지역사회연결, 대학 교육과정, 취업상담 및 훈련, 졸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시설

학내 보건센터와 아동보육센터, 차량이동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② 덴버 시의 Florence Crittenton School

10대모를 위한 비영리기관인 Parent Pathways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250명의 미혼모와 60명의 미혼부에게 교과수업, 부모교육, 직업교육, 일상생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로부터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가받은 이 학교는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1982년부터 덴버 공립학교의 학점과 학위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 및 서비스 내용

양육 및 아동발달교육, 중등과정 수업, 덴버 공립학교 학점 취득 고등과정 수업, 경력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 직업교육, 아동 조기 교육실 운영, 산전 및 유아건강교육, 차량이동서비스, 지역아웃리치팀(10대 미혼모 젊은이로 구성된 임신예방 지역사회 파견팀), 학생 리더십 조직, 가정방문 등을 내용으로 한다.

○ 기타 서비스 및 시설

교내 탁아시설, 10대 부와 자녀 유대감 서비스, GED준비 수업 및 튜터링 지원, 유아 및 아동 학습센터, 가정이 없는 어린 가족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4) 학교 밖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미혼모 복지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에게 일상생활 기술과 정서적 지지,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

미혼모 시설은 10대 미혼모들에게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검정고시를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육아건강, 양육, 재정지원편성, 식품구입과 준비 등과 같은 기본적 가정경영 기술을 가르치며, 자신감 훈련, 성교육, 갈등해결 훈련, 약물남용방지훈련 등을 통하여 예비성인으로 준비시키고 있다(김재득·이행숙, 2002).

4) 미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자치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청소년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 중 다른 어느 국가보다 10대 청소년 미혼모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으로 인한 학업 중단 및 불충분한 교육, 이로 인한 불안정한 취업, 10대 미혼모 자녀들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있다.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10대 부모는 자신들의 학업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시적 취업 및 복지 의존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사후대책보다는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도 주목해 볼 만 하다. 예방 대책의 경우 순결교육 차원의 절제교육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법 중심 교육의 두 가지 방향이 모두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TAPP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자 청소년 뿐 아니라 남자 청소년도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배우는 점을 보면, 양육 책임을 양성에게 끌고

루 묻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국

1)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¹⁰⁾

해마다 약 5만 건의 십대 임신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약 94% 이상이 16세~19세이며, 16세 미만은 나머지 6% 정도이다. 이 수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한 상태이나 아직도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그 중 60% 이상이 미혼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30%는 동거하고 있으며, 9%는 결혼한 상태이다. 교육이나 취업 및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미혼모는 70%가 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아이의 양육은 25%가 청소년 미혼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0%가 그들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옥소에 있는 15세~21세의 청소년들 중 25%가 미혼부일 것으로, 39%는 미혼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들이 다시 청소년 미혼모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대 미혼모의 신생아 사망률은 일반 여성들의 신생아 사망률에 비해 60% 이상 높으며, 저체중, 사고, 병원 입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거상황도 지역의 공동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6배에 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는 빈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적절한 직업과 교육의 결핍으로 인해 실업, 절망감, 아동보육의 기회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¹¹⁾

1999년 The Social Exclusion Unit's Report(1999)가 발표되기 전까지 영국의 경우 십대 임신에 대한 기조는 억제책이어서 성교육프로그램 및 십대 미혼모들이 직접 경험담을 학교에서 들려주거나 고위험집단 소녀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학교 시험날짜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동시에 청소

10) Department of Health. 2007. *Teenage Pregnancy Next Steps :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nd Primary Care Trusts on Effective Delivery of Local Strategies.*

11) <http://www.dfes.gov.uk/teenagepregnancy>

년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에도 균등한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The Social Exclusion Unit's Report(1999)는 십대 미혼모에 대한 2가지를 국가적 목표로 정하고 있다. 2010년까지 18세 이하 임신율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과 이들이 장기간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취업과 훈련 등에 10대 미혼모들의 참여를 증가시킨다. 이어서 블레어 정부는 2002년 교육, 취업과 훈련 등에 10대 미혼모의 참여율을 60%까지 증가시키고 이의 부족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조직과 파트너십으로 이루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에서도 10대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해서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이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6세~17세의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산전후에 최대 18주 동안 학교 결석을 인정해주며, 단지 본인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치 않을 경우 대안학교를 갈 수도 있으며, 가정교사학습이나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Ehrlich & Vega-Matos, 2000). 또한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학습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기준도 기존의 전통적인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던 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대체 인정과목으로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면서 시교육청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 활동, 안전 등에 관한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¹²⁾

(1)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20 Sure Start Plus』는 임신여성과 청소년 미혼모에게 개별적인 상담전문가의

12) Department of Health. 2007. *Teenage Pregnancy Next Steps :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nd Primary Care Trusts on Effective Delivery of Local Strategies.*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양육모가 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마침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출산 후 학습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하여 학습지원 제도를 통하여 아이 돌봄 비용을 지불하여 준다. 또한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하여 10대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학습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The Teenage Pregnancy Unit와 보건부에 조정실을 두어 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서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보건부, 교육부, 부총리실, 고용 및 연금과, 가정과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2002년 3년간 약 60백만 파운드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과 훈련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 훈련, 고용에의 참여는 십대 임신 예방을 위한 전략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지침서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으며 『10대 임신관련 기금(Teenage Pregnancy Standards Fund)』을 설립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1년에 5백만 파운드(약 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가 보육을 포함한 학습 장벽들을 극복하고 학업, 직업훈련, 고용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욕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연계해주는 개별적인 전문 상담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 EMAS)』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급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에 따른 부가적인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부가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는 출산에 따른 휴학, 휴업, 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학업에 복귀하도록 보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9개의 시범

지역에서 미혼모들이 학업, 직업 훈련 혹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②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소득지원

『20 Sure Start Plus』 시범 사업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개별적인 전문 상담가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십대 아버지가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보전을 위해서 그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수당(Incomes Support and Job Seekers Allowance)』을 25세 이상이 받는 비율로 받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수당 및 가족 수당을 받고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보다 두 배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모자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New Deal for Lone Parents)』에 참가하고 있는 모자가정부모는 근로를 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아동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더불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을 시 주당 15파운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양육 세제감면(Childcare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혼모의 아동이 그들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생활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들이 아동의 부모로서 Childcare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주택지원

18세 이하이면서 그들의 부모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없는 모든 십대 부모 가장은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주택 프로젝트(housing project)』는 주거 공간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및 부모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 시설은 24시간 현지 지원을 받는 호스텔에서부터 독립적인 아파트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넓은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유동적인 지원까지 있다. 주택공사(The Housing Corporation)에서는 현재 십대 미혼모와 임신모를 위한 서로 다른 5개 모델의 거주 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모델 가운데에서도 각 십대 미혼모의 특성과 담당지원배치, 그리고 주택시설의 질적인 측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6개의 시범시설(Housing)에서 어떻게 십

대 부모들을 지원할 것인지 지도하면서 어떠한 지원 시설이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에 맞으며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범사업은 유동적인 지원의 역할과 어떠한 주거 시설이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는 다른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가 더 잘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2) 청소년 미혼모 프로그램의 사례¹³⁾ :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
(‘Young Parent’s Project’, Sunderland)¹⁴⁾**

①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 및 방법

이 프로그램은 썬더랜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모는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버스 교통비 및 차량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교육, 정보 및 건강관련 조언, 부모양육 및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주택 등을 제공해주며, 나아가 outreach 집단을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

이 프로젝트에서는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미혼모 혹은 유사한 프로그램에 배치되지 못한 미혼모들을 위해 주 3회(화, 수, 목) 수업을 제공해준다. 이 시설에서는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며,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방문자(health visitor)가 1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방문하며, 조산원의 사람이 2주마다 한 번 씩 산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의 산모병동도 방문한다. 청소년 미혼모가 이미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만, 학교복귀가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 제공 되는 교육프로그램(the Onsite Education Provision)에 등록할 수 있다.

나. 16세 이상의 미혼모 : 프로젝트 주 5일 개방

탁아소는 주 3일(화, 수, 목) 개원하며, 아동들이 탁아소에 있는 동안 미혼모 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Bride Connect를 통해 1주일에 2일, 약 30

13) 허남순·노충래(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14) 주소 : Winchester House, Baxter Rd, Town End Farm, Sunderland, SR54LW.

주 동안 운영한다. 이 수업은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면서 시교육청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것으로, 수업은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 활동, 안전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탁아소가 문을 닫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부모들이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예 : 아기 마사지하는 방법, 부모가 영아와 함께 탐색하는 활동 등).

방문센터(Drop-in Center)에서는 부모들이 친구들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 주택, 경력,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을 제공하여 연령에 맞는 장난감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주택 지원 담당자는 의존적인 생활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지,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때 세입자를 위한 문제, 예를 들어, 예산, 사회적 고립, 주택서비스 수급 등에 관해 상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자립생활 기술’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건방문자는 부모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아기 클리닉과 아동양육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유, 취침관리, 성장 및 발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간호처방사(Nurse Prescriber)는 아동 및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예 : 구강 칸디다증, 머리의 이, 각질 등)에 관해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일대일 진료소(One to One Clinic)에서, 건강방문자는 다이어트 및 운동, 피임 및 성생활, 금연과 관련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해 준다.

경력연결조언자(Link Careers Adviser)는 일주일에 한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이 때 경력관련 조언, 취업정보 및 면접기술 등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 미혼모들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여성들이 받는 정보와 안내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재까지의 결과

16세 미만의 많은 미혼모들이 검정고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 미혼모는 2세 된 아동을 돌보면서 8개의 B와 2개의 C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필요한 과정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가 이용자 친화적이었다. 즉 젊은 미혼모들이 비심판적인 지지

와 지원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 젊은 미혼모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계획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과정을 파악하고 기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었다. 셋째, 프로젝트의 직원들은 이들 미혼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③ 향후계획

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아웃리치헤 나갈 예정이며, 멘토들이 훈련을 받아 곧 미혼부모들과 1대1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아동보모서비스를 곧 실시할 예정에 있다.

4) 영국 사례의 시사점

영국 사례에서 볼 때, 10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통제적 정책이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1999년 The Social Exclusion Unit's Report(1999)를 계기로 예방책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성교육을 벗어나 청소년 대상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남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볼 때 모두 남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명백하게 『20 Sure Start Plus』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이 아버지의 보육 참여와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산 전후 학교 출석 인정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도 우리나라 실정에서 점차 참고할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10대 청소년 미혼모 대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수업대체 인정과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출산후 학습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비용,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 EMAS)』 등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10대 청소년 미혼모 대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건부, 교육부, 부총리실, 고용 및 연금과, 가정과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일하고 있다.

특히 쉐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Young Parent’s Project’, Sunderland)는 청소년 미혼모 연령을 16세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매우 큰 청소년기 연령 차는 다른 생애주기 시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 차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 미혼모를 ‘10대’로 범주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독일

1) 청소년 독신모 실태

(1) 개념 정의

독일에서 미혼모(未婚母)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혼인 관계 이후에 홀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 경우를 모(부)자 가정이라 하고, 혼인 관계 외 혹은 이전에 출산을 한 경우를 미혼모라 분류하는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즉 독일의 경우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독신(양육)모(Alleinerziehende Mutter :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독일 상황에서는 우리식의 미혼모를 독신모(獨身母)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복지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미혼모

독신모는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다. 일부에서 마치 독신모를 여성해방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소위 “캐리어 우먼”을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신모를 동일 집단으로 묘사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을 만큼 독신모 개개인의 생활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의 해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모로서 겪어야 하는 공

통 문제가 독신모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이 독신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더 나아가 10대 독신모, 즉 미성년 독신모는 특히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KJHG)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0대 청소년이 독신부모가 되었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 - 학교 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제한 등 - 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개입은 10대 독신부모의 국적에 따른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3) 실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독신부모 숫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26만 여명이 늘어나서, 2005년 현재 약 250만 명 정도를 헤아린다. 독신부모가 된 이유는 절반 가량(55%)이 이혼이나 별거이다. 사별의 경우는 23%,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22%에 달한다. 전체 자녀 양육 가구에서 독신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구서독 지역은 19%, 구동독 지역은 2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대 독신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10대 청소년 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가 10대 독신모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거나 보호주거 형태에서 살고 있는, 혹은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를 받고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약 4만 여명 중 10대 독신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대 독신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10대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만 해도 전체 임신 중 10대 임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가 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비율이 약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⁵⁾

15) http://www.eltern.de/forfamily/schule_erziehung/erziehung/schwangerschaft_minderjaehrig.htm?p=2에서 2007년 10월 25일 내려받음.

〈표 IV-2〉 독일의 시설 이용 요보호 아동·청소년 실태

단위 : 명

| | 합 계 | 주간시설 (Tagesgruppe) 보호 | 위탁가정보호 (Vollzeit- pflegein einer anderen Familie) | 수용시설, 기타 보호주거 (Heim-erziehung; sonstige betreute Wohnform)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Intensive sozial- 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
|------------------|---------|-----------------------------|--|--|--|
| 합계 | 131,005 | 16,543 | 50,364 | 61,806 | 2,292 |
| 연령 | | | | | |
| 1세 미만 | 1,034 | 16 | 813 | 205 | - |
| 1세 이상 3세 미만 | 3,684 | 111 | 3,050 | 523 | - |
| 3세 이상 6세 미만 | 8,599 | 278 | 6,901 | 1,420 | - |
| 6세 이상 9세 미만 | 14,543 | 2,799 | 8,324 | 3,420 | - |
| 9세 이상 12세 미만 | 22,629 | 6,954 | 8,635 | 6,994 | 46 |
| 12세 이상 15세 미만 | 29,032 | 4,844 | 9,805 | 14,093 | 290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37,801 | 1,478 | 9,989 | 25,200 | 1,134 |
| 18세 이상 21세 미만 | 12,472 | 55 | 2,638 | 9,032 | 747 |
| 21세 이상 | 1,211 | 8 | 209 | 919 | 75 |

출처 : 독일 통계청¹⁶⁾

게다가 10대 독신모의 경우에 대부분 학교 교육 대상자로 볼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관 영역이다. 따라서 각 주별로 흩어져 나오는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10대 독신모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수립은 그리 관심을 끄는 정책 영역은 아닌 셈이다. 예를 들어,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

16)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Sozialleistungen/KinderJugendhilfe/Tabellen/Content100/AusserhElternhaus__persMerkmale,templateId=renderPrint.psml 2007년 10월 20일 내려받음.

지역 전체에서 1년에 20명 정도 나오는 10대 독신모 학생을 위한 단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0대 독신모는 대체로 학교나 직장, 가족 생활에서 상당한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chneider, 2001). 이러한 갈등 상황은 가정 폭력 피해, 학교 등교 안하기, 약물 남용, 성매매, 시설 수용과 가정 사이를 오가는 일상, 문화적 정체감 상실, 비행, 사회적 소외 등 문제로 구체화된다. 문제를 가진 10대 독신모들은 교육적·치료적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를 쉽게 보이며 또한 전문가의 개입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며 전문가와의 관계 형성을 불신하거나 혹은 피해의식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10대 독신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가족(Herkunftsfamilie)으로부터 일단 격리시키고 주로 시설 거주 등을 시작으로 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규모의 특성과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는 보편주의적 특성상, 10대 독신모를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독신모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맥락에서 10대 독신모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독신모 교육권 보장 및 지원 정책

독신모 지원정책 내용은 일반적 차원의 내용과 특히 수용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10대 독신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대 독신모의 경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대체로 시설 거주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10대 독신모 당사자의 교육권 보장과 10대 독신모 자녀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시설 수용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 차원의 독신모 지원정책을 주로 생계 보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주로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독신모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생계 보장

생계 보장 관련 정책 내용으로는 취업활동 지원, 아동수당, 취업활동으로 인한 아동보호 비용 지원, 사회부조와 주거수당 등이 있다.

① 취업활동 지원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내용은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취업활동 시간 조절이 있다.

가. 고용 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취업활동 중에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모성보호법(Das Mutterschutzgesetz)에 근거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임신 여성은 태아와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 하루에 4시간 이상 서서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야간·휴일·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 출산 예정일 6주전부터 일하지 않을 권리, 출산 후 8주 동안 일하지 않을 권리 등을 갖는다.¹⁷⁾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모성보호규정은 임신 여성이 업무보조, 임시직, 시간제 근무, 정규직 근무를 하든지 간에 모든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또한 출산 후 16주 동안은 고용보호를 받기 때문에 출산여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되지 않는다.¹⁸⁾

임신·출산 여성이 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이면서 질병수당(Krankengeld)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모성보호 기간 동안 모성보호수당(Mutterschaftsgeld)을 받는다. 모성보호수당은 매일 최고 13유로씩 계산되며, 이 금액이 해당 여성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출산 여성의 연령, 혼인 상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 취업활동 시간 조절

취업활동 시간 조절은 임신·출산 여성이, 특히 독신모가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지원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임신·출산 여성이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를 보자. 시간제 근무라 함은 업무 보조 등 임시직 업무부터 시작하여 주당 30시간을 넘지 않는 근무를

17) 조기출산이나 쌍둥이 이상 출산일 경우 이 기간은 12주로 늘어난다(모성보호법 9조).

18) 모성보호법 2, 3, 4조 참고.

의미한다(VAMV, 2004). 최소 1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출산 여성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규직 근무를 시간제 근무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규정 역시 임신·출산 여성의 연령, 혼인상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②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취업활동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Rückerstattung zuviel bezahlter Steuer)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아동의 최저생계보장 비용은 면세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념 때문이다. 2007년 현재 독일에서는 첫째에서 셋째 자녀까지는 월 154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월 179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 후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동이 계속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25세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10대 독신모들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자신의 취업활동을 근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상보상(Förderleistung) 형태로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③ 취업활동으로 인한 아동보호비용

취업활동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경우에 생기는 비용의 2/3까지 혹은 연 최고 4,000유로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비용이 연 6,000유로가 될 경우 소득공제혜택 4,000유로를 받게 된다. 아동보호비용이 연 1,000유로일 경우에는 666유로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비용이 연 8,000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4,000유로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신부모의 경우에는 연소득 중 1,308유로를 부담경감지원액(Entlastungsbetrag) 명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24조b(§ 24b des Einkommensteuergesetzes : EStG)이다.

④ 사회부조와 주거수당(Wohngeld)

독신부모를 위한 중요한 생계보장제도가 사회부조(Sozialhilfe)이다. 일반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사회부조가 독신모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독신부모로서 사회부조 수급 자격을 갖게 되면 독신부모 추가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부조 급여 내용은 대체로 가장 기본급여(Regelsatz für Haushaltsvorstand), 자녀 기본 급여, 주거비용, 난방비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신부모는 가장 기본급여에 더 하여 독신부모 기본급여를 월 약 100유로 정도를 더 받는 셈이 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수당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10대 독신모의 경우에 독립가구를 이루어 사는 경우에는 언급한 사회부조급여와 주거수당 수급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10대 독신모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수용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회부조와 주거수당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용시설에 거주할 경우에 아동·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설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 비용의 규모는 시설과 시설소재 지역 사회국(Sozialamt)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사회부조제도가 10대 독신모 대상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 외에도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는 이유는 사회부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 때문이다. 사회부조법 제76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⁹⁾

첫째, 비용 부담 주체로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공공기관과 합의한 수준과 내용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충분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이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의식주 조달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에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시설 투자비용은 해당 비용에 대해 공공기관이 해당

19) § 76 des SGB 1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과 합의를 받을 때에만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담에서 고려하는 요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부조 제공 공공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경제성(Wirtschaftlichkeit) 보장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 또한 경제성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 서비스 내용 및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적절한 형태로 구성되어 클라이언트에게도 알려져야 한다. 사회부조 제공 공공기관은 수용시설관리부서(Heimaufsichtsbehörden), 의료보험조합 심사판정위원회(der Medizinische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와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중평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정재훈, 2007).

(2) 10대 독신모의 교육권과 양육권 보장 실태

① 논의의 전제

일단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즉 부모가 자녀를 일정한 공동체에서 양육하는 형태로 살아간다면 특정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가족정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여 지급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독신모라고 해서 가족정책 제공 급여 대상자에서 특별히 제외될만한 이유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10대 취학 연령에 학교를 다니는 10대 독신모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 제공된다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은 대체로 시설 수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거주시설에서 10대 독신모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② 10대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아동·청소년지원법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8권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 제22조 a항에서는 일일이용시설(Tageseinrichtungen)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정재훈, 2007).²⁰⁾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시설 제공

20) § 22a des SGB 8.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교육적 개념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시설 제공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은 시설 근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인력(Tagespflegepersonen)이 양육권자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 사회 복지서비스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다른 아동·가족 관련 기관이나 상담소,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교육적·조직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갖는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휴가로 인하여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사이 아동·청소년이 양육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공공기관은 대체보호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넷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장애가 없는 아동·청소년은 한 집단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부조(Sozialhilfe) 제공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관련 계획·개념 설정·재정 조달 등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즉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영리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 복지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이러한 법 규정에서 찾으면서 적절한 지원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10대 독신모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독신모 문제에 개입하는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KJHG) 제1조 3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10대 독신모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성장에 되는 도움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둘째, 10대 독신모 양육 아동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권리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KJHG) 24조는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신부모가 (취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보다 우선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²¹⁾

이 법 규정에 따라 10대 독신모도 다른 부모들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규정이 10대 독신모 대상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개념이 사회교육적 개별보호(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개념에 따라 주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대인서비스가 제공된다.

③ 사회교육적 개별보호(sozialpädagogischen Einzelbetreuung)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는 다른 정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독신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위협받는 환경에 처할 경우 보호자는 양육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사회법전 8장 제27조). ‘아동·청소년 복지가 위협받는 환경’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심리적·개인적 사회화 과정이다. 아동·청소년은 어떤 위험을 겪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 경우에 아동·청소년 그리고 아동·

21) 아동·청소년지원법 24조 a(4)2 : “Kinder, deren Eltern oder alleinerziehende Elternteile eine Ausbildung oder Erwerbstätigkeit aufnehmen oder an einer Maßnahme zur Eingliederung in Arbeit im Sinne des Vierten Gesetzes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teilnehmen, besonders zu berücksichtigen.”

청소년의 보호자는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느 종류의 도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할 지는 사회법전 8권 제36조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된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는 사회법전 8권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움의 형태이다. 사회적 개별보호가 특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에 따른 개별보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개별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간과 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자, 당사자로서 청소년, (시설 거주 의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청소년국(Jugendamt) 담당 공무원이 합의하여 구성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놓게 된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10대 독신모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족 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가 추구하는 개입 목적은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연령에 맞는 지원·격려·동반자적 도움을 통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④ 거주시설 서비스 내용

가. 법적 근거

시설에 거주할 경우 10대 독신모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 8권 제78조(§78 SGB VIII)에 토대를 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 제34조, 제35a조, 제41조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독신모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이 시설 거주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요소

10대 독신모가 시설에 살 경우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10대 독신모 수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는다. 시설은 이 비율을 지키는 선에서 지역 사회국(Sozialamt)으

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자의 인적 구성은 보육사(ErzieherInnen),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nInnen), 사회복지사(SozialarbeiterInnen)등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전문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담과 대화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상담과 대화 시간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상담과 대화 시간이 계획표에 있어야 한다. 둘째, 개입해야 할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이 갖는 모습에 대한 합의는 부모, 10대 독신모 당사자,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아동보육사,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Jugendamt) 담당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된다. 셋째, 집단 활동, 체험 학습, 부모 상담 등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른 상담소, 거주 시설,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과 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특히 10대 독신모의 경우 시설·공무원과 학교 관계자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룹홈이나 보호주거(Betreutes Wohnen) 형태로 전환하여 시설 거주 청소년의 사회적 자활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비스 구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시설거주 10대 독신모를 돌보는 전문가는 개별 상황에 적합한 원조 계획을 짜야 한다. 이 원조 계획은 재정을 담당하는 지역 청소년국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교육적 욕구(notwendiger erzieherischer Bedarf)가 반영되었는지가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0대 독신모가 처한 상황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동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과제를 정하게 되면 서비스 전달과 개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의 규모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재정 담당 지역 청소년국(Jugendamt)이 협상하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청소년국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시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가 끝나면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 기관 전문가가 함께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갖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조 계획이 시행되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발견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즉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즉시 원조 계획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하고 있던 도움 외에 더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움과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서비스 전달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 전문가는 사회법전 8권 제65조에 근거한 ‘비밀유지 의무(Schweigepflicht)’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형법 제203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다. 서비스 전달 방향

시설에 거주할 경우 10대 독신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적 개별보호에서는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 주고 자신이 학교에 갈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엄마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는 (0세에서 3세 사이일 경우에는)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아동보육사가 돌봐 주지만, 방과 후 엄마가 시설로 돌아오면 아이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는다. 장보기, 식사 준비, 아이 먹을 것 마련하기 등을 스스로 하면서 학교 과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대 독신모는 함께 시설에 살고 있는 다른 독신모들과 함께 일상을 조직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한다.

시설 거주 10대 독신모들의 일상 조직과 협력 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아동보육사, 사회교육사 등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보겠다.²²⁾ 전문가들은 동반자적 개입 과정에서 10대 독신모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사회적·성적(性的)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둘째, 같은 혹은 비슷한 연령층 독신모들과 더 성숙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셋째, 부모 혹은 주변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함으로써 본래 출생가족(Herkunftsfamilie)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다.²³⁾ 넷째, 취업 준비를 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22) 독일 트리어 시 소재 안나(Anna) 재단 운영 10대 독신모 거주시설 일상의 예.

23)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성하고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다섯째,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배운다. 여섯째,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가치 체계와 윤리 의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우 관계에 자신을 스스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여덟째,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행동 개념을 확립한다. 아홉째, 폭력·약물 남용·정체감 상실 등에서 경험했던 갈등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열 번째, 일상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시설 거주 10대 독신모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전문가는 10대 독신모의 문제와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담당 공무원 간 연락 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락 체계는 10대 독신모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와 또다른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구축된 원조 네트워크 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례는 기록으로 정리되어 일주일에 한번 혹은 최소한 이주일에 한번 사례관리 분석 자료로서 정리되어 전문가와 공무원 간 공유된다. 이 기록을 토대로 개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대개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교육사)는 10대 독신모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한다. 이 사례관리 기록은 10대 독신모 당사자도 알 권리를 갖는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해당 사례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 수퍼비전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재정을 담당하는 지역 청소년국에게 서비스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⑤ 학교 교육 지원

독일 교육 과정 운영은 주정부 자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도중 임신·출산 경우가 생긴다면 주정부마다 대응책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임

다고 보는 것이다.

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주는 사회부조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 생활 도중 임신·출산은 보통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것과 같은 대우와 권리를 갖는다.

가.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출산의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 경우에는, 혹은 다니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질병의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주 정부는 질병 때문에 불가피한 결석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교육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혹은 시간제학교(Teilzeitschule)의 경우에는 3일 이상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질병 발병 정도가 빈번하여 학생의 수학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학교 교장이 직권으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 소속 의사가 인정하는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²⁴⁾

학생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질병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Bei einer Krankheitsdauer von mehr als zehn, bei Teilzeitschulen von mehr als drei Unterrichtstagen, kann der Klassenlehrer vom Entschuldigungspflichtigen die Vorlage eines 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Lassen sich bei auffällig häufigen Erkrankungen Zweifel an der Fähigkeit des Schülers, der Teilnahmepflicht gemäß § 1 nachzukommen, auf andere Weise nicht ausräumen, kann der Schulleiter vom Entschuldigungspflichtigen die Vorlage eines 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In diesen Fällen und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bei langen Erkrankungen kann der Schulleiter auch die Vorlage eines amts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Heilkuren oder Erholungsaufenthalte, die vom Staatlichen Gesundheitsamt oder vom Vertrauensarzt einer Krankenkasse veranlasst oder befürwortet worden sind.” http://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에서 2007년 10월 26일 내려받음.

“임신 때문에 학교를 올 수 없거나 혹은 올 의향이 없는 여학생은 질병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대우한다. 직업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임신 때문에 취업 훈련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²⁵⁾

이렇게 볼 때, 재학 중 학생이 임신을 하고 이에 따라 결석을 할 경우에 출석 처리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 휴학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의 이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재학 생활 지원

독일의 경우 교육정책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관임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따라서 학교 교육 지원 내용은 주마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이하 수업자료 : Lernmittel)를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은 10대 독신모가 추가 비용 없이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자료 무상지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회적 낙인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지원받는 수업자료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이다. 여기에는 교과서, 언어사전, 백과사전, 공책 등이 포함된다.

3) 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먼저 용어 사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독일에서는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미혼모와 모(부)자가정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독신부모(Alleinerziehende Eltern) 가정으로 보고 있다. 따

25) “Eine Schülerin, die wegen ihrer Schwangerschaft die Schule nicht besuchen kann oder will, ist wie eine Schülerin zu behandeln, die wegen Krankheit den Unterricht nicht besuchen kann. Für Schülerinnen der Berufsschule gilt dies nur insoweit, als sie wegen ihrer Schwangerschaft nicht mehr in ihrer Ausbildungs- oder Arbeitsstätte tätig sind.”
-http://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에서 2007년 10월 26일 내려받음.

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서 ‘10대 미혼모’도 ‘10대 독신모(獨身母)’로 표현하는 것이 독일식 개념으로는 적당하게 된다.

둘째, 용어 사용에서의 전향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독신모는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적 약자층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이다. 다만,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는 전체 독신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적고, 게다가 10대 독신모를 학생 집단의 일부로서 설정하고 정책적 접근을 할 경우에는 정책 주체가 연방정부(Bundesregierung)가 아니라 주 정부(Landesregierung)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독자적 대상 집단으로서 10대 독신모의 존재는 대체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의 독자적 대상 집단이 아닌 것이 정책 대상 집단에서 소외됨을 의미하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신모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정책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즉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신(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대 독신모 역시 일반적으로 가족이, 그리고 독신부모가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아동수당, 취업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 보조, 사회부조, 주거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넷째, 일반적인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신부모가 대상 집단이 되는 것처럼, 10대 독신모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즉 문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독신모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내용에는 주로 시설 거주와 그와 연계된 사회 교육적 개별보호 등 대인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다섯째,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생기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조달 등 문제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은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출석 인정 및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비용 문제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무상지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독일 사회에서 10대 독신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

기 때문에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모성보호법·아동수당법·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시설 거주 우선권, 사회 교육적 개별보호 등 대인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수업권과 결석권, 휴학권 등 권리는 각 주 교육법에 근거하여 가지게 된다(표 IV-3 참조).

〈표 IV-3〉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 일반적인 지원 내용 | 10대 독신모 우선 지원 내용 | 법적 근거 |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도움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 |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 gesetz : KJHG) 1조 3절 |
| 보육시설 이용 권리 |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 gesetz : KJHG) 24조 |
| 임신·출산 때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 지원 내용 동일 | 모성보호법 (Das Mutterschutzgesetz) |
| 아동수당 | 무상보상(Förderleistung)의 개념으로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Kindergeldgesetz) |
| 취업활동으로 생기는 아동보호비용 지원 | 지원 내용 동일 | 소득세법 24조b (§ 24b des Einkommensteuergesetzes : EStG) |
| 최저생계비 보조와 주거수당 | 시설거주를 통해 해결 | 아동·청소년지원법 |
| -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사회법전 8권 |
| - | 수업자료 무상 지원 | 각 주 교육법 |
| -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처리 및 휴학 인정 | 각 주 교육법 |

4. 일본

1) 청소년 미혼모 실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성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태도, 특히 혼전 성관계에 대한 도덕관념의 약화와 함께 피임에 관한 정보제공의 부족, 그리고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에 대한 조절능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의 낙태율은 1999년 29,675명으로서 전체 낙태율의 6.0%를 차지하였으나, 불과 4년 뒤인 2003년에는 40,754명으로서 전체 낙태율의 12.0%를 차지함으로써 2배 이상 증가하였다(厚生統計協會, 2004). 한편 일본산부인과학회²⁶⁾(1979)는 일본 여자 청소년의 첫 번째 월경 평균연령(平均初潮年齡)은 12.3세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일본전국고등학교 PTA연합회와 교토(京都)대학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고등학생 10,000명 가운데 초등학교 때 이미 성경험(성관계)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명이었다. 2003년 효고현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2학년 가운데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28.0%, 여학생의 33.0%로 나타났다. 더구나 성경험을 한 학생의 14.0%는 15세 이전에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청소년 미혼모(unmarried mother)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10대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10세 이상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모자가정, 이하 한부모가정)에서의 모(母)를 의미한다. 厚生労働性(2004)의 「人口動態統計」에 따르면, <표 IV-4>과 같이 아동을 출산한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은 1980년 14,590명이었던 것이 저출산사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582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대에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연이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혼부의 양육지원도 없다. 더구나 이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자퇴하고 중등교육을 중도에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에 종사하거나 자립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설사 이들

26) <http://www.jaog.or.jp>에서 재인용.

〈표 IV-4〉 일본의 모(母) 연령별 출산 아동 수

단위 : 명

| 연 령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03년 |
|---------|-----------|-----------|-----------|-----------|
| 14세 이하 | 14 | 18 | 43 | 49 |
| 15세~19세 | 14,576 | 17,478 | 19,729 | 19,533 |
| 20세~24세 | 296,854 | 191,859 | 161,361 | 142,080 |
| 25세~29세 | 810,204 | 550,994 | 470,833 | 396,058 |
| 30세~34세 | 388,935 | 356,026 | 396,901 | 408,672 |
| 35세~39세 | 59,127 | 92,377 | 126,409 | 139,519 |
| 40세~44세 | 6,911 | 12,587 | 14,848 | 17,482 |
| 45세~49세 | 257 | 224 | 396 | 402 |
| 50세 이상 | 1 | - | 6 | 19 |
| 전체 | 1,576,889 | 1,221,585 | 1,190,547 | 1,123,828 |

자료 : 厚生労働性(2004).

이 결혼을 통해 10대에 엄마가 되었다고 해도 이들의 이혼율이 8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20대까지 출산을 연기한 여성들의 이혼율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日本産婦人科醫師會醫療對策委員會²⁷⁾(2004)가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10대 청소년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표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10대 청소년 인공임신중절건수가 1975년까지 전체 중절건수의 1.8%이었으나 1985년 5.1%, 1996년 7.6%, 2002년에는 13.6%로 1975년의 경우보다 약 7.5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현상을 우려한 日本産婦人科醫師會醫療對策委員會는 91개 의료기관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던 10대 여성 626명(전체 10대 임신중절여성의 1.34%)을 대상으로 임신중절을 결정한 이유, 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방안, 피임방법, 10대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27) <http://www.jaog.or.jp>에서 재인용.

<표 IV-5> 연도별 20세 미만의 인공임신중절 건수와 비율

단위 : 명(%)

| 연도 | 전체 임신중절건수 | 20세 미만의 임신중절 건수 | 비율(%) |
|-------|-----------|-----------------|-------|
| 1955년 | 1,170,143 | 14,475 | 1.2 |
| 1965년 | 843,248 | 13,303 | 1.6 |
| 1975년 | 671,597 | 12,123 | 1.8 |
| 1985년 | 550,127 | 28,038 | 5.1 |
| 1996년 | 343,024 | 26,117 | 7.6 |
| 2002년 | 341,588 | 46,511 | 13.6 |

출처 : 日本産婦人科醫師會醫療對策委員會(2004).

적인 성교육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연령별 현황은 <표 IV-6>과 같다. 특히 16세 이상 19세까지 연령에 비례하여 인공임신중절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조사응답자의 96.8%가 미혼이며, 1.9%는 출산 경험이 있고, 18.8%는 이미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응답자의 24.3%만이 직업이 있고, 75.2%는 직업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77.0%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 상대남성의 45.0%는 17세~19세이고, 53.4%는 직업이 있고 43.0%는 직업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80.4%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아이를 낳고 싶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아 19세 이상 응답자의 41.8%가 ‘아이를 낳고 싶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은 ‘수입이 적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67.7%,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6.3%, ‘학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38.7%, ‘부모의 반대’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일 부모 또는 사회의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은 ‘학업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다면’ 31.0%, ‘상대방과 결혼할 수 있다면’ 30.5%, ‘임신출산 비용이 현재보다 더 적게 든다면’ 28.0%, ‘부모가 이해하여 준다면’ 21.1%,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된다면’ 20.2%, ‘교육비가 적게 든다면’ 16.2%, ‘상대방이 이해하여 준다면’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8) <http://www.jaog.or.jp>

〈표 IV-6〉 조사응답자(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던 10대 여성)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연 령 | 조사응답자 수 | 비율(%) |
|-----|---------|-------|
| 14세 | 11 | 1.8 |
| 15세 | 18 | 2.9 |
| 16세 | 78 | 12.1 |
| 17세 | 130 | 20.8 |
| 18세 | 158 | 25.2 |
| 19세 | 232 | 37.1 |
| 무응답 | 1 | 0.2 |
| 합 계 | 626 | 100.0 |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보장 정도와 취업 지원 실태

일본의 교육권은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교육의 청구권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귀옥, 2001). 한편 이 연구는 교육권의 보장 범위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실정법에 따라 명시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자의에 의해 학교를 탈퇴(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나 별도의 정책 또는 서비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 10대가 출산을 하기에는 부모의 반대, 사회적 편견, 학업이수의 제한, 취업의 제한 등 장애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日本産婦人科醫師會醫療對策委員會(2004)의 조사결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던 10대 청소년의 31.0%가 학업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등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은 곧 현재 일본에서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임신중절을 하는 10대 여학생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日本産婦人科醫師會醫療對策委員會(2004)는 중·고등

학교와 대학교에 있어서 임신한 학생을 위한 육아휴가제도의 도입, 재학생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http : //www.jaog.or.jp](http://www.jaog.or.jp)).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대책위원회의 제안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결혼하고 출산하여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內閣府少子化社會對策推進專門委員會(2006; [http : //www.cao.go.jp](http://www.cao.go.jp)에서 재인용)는 싱글맘이나 혼외(婚外)자녀 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10대의 출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자립한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이나 후생노동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한 출산휴가정책(제5절 대만의 출산휴가정책 참조) 등 특별한 대책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일본 후생노동성이나 문부과학성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대체로 교육 그 자체보다는 자립지원교육 훈련급여사업, 모자가정고등직업훈련촉진사업,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 등과 같이 고용 특히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노동능력의 적극 활용과 클라이언트 강점사정의 관점에서 소위 싱글맘, 한부모가정 여성가장을 피보호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을 강화하였다(허남순·노충래, 2005). 이러한 정책은 특히 사별보다는 자발적 이혼에 의해 한부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 추진되었다. 그런데 모자가정 스스로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이들의 생활보호수급율은 저하되었으나 아동부양수당 수급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사회복지경제정책의 모델인 워크웨어(workfare : 일을 통한 복지)에 기초하여 종래의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개정하였고, 2004년에는 모자가정 모의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母子家庭の母の就業の支援に關する特別措置法)²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혼 모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양육비 등 아동양육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는 모자가정 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母子家庭自立支援給付金事業, 이하 모자가정자립지원급여사업³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생노동성은 2007년 6월 개정된 모자가정 모의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자가정 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07). 모자가정의 모는

29) 제1조(목적) 동법의 목적은 최근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모자가정 모의 취업이 더욱 곤란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고 모자가정의 아동부양수당 지급기간이 제한되는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모자가정 모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모자가정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모자가정 모의 취업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충실) 후생노동성 장관은 동법의 시행일로부터 2009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모자 및 과부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방침에 관해서는 모자가정 모의 취업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취업의 지원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조(국회에 관한 보고 등) 정부는 매년 대상기간에 있어서 각 연도별 모자가정 모의 취업 지원을 도모하는 시책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모자복지자금대여금 대역에 관한 특별 배려) 정부는 대상기간에 있어서 모자 및 과부복지법 제16조에 규정된 모자복지자금대역금의 대역과 관련 하여 모자가정 모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조항에 규정된 정령(政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 사업자에 관한 대한 협력 요청) 국가(중앙정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모자가정 모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복지단체 등의 수주기회의 증대에 대한 배려) 국가는 모자가정 모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자 및 과부복지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모자복지단체,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수주(受注: 생산업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주로 모자가정의 모에게 수주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의 물품과 업무 조달과 관련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6조에 규정된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모자가정 모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0) 우리나라에서는 급부(給付)보다는 급여(benefit)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한편 급부금은 급여금으로서 현금형태의 급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본 전국의 각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 시(시·군·구),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정·촌(읍·면·동)은 지역사회 청소년 미혼모 등 모자가정 모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모자가정자립지원급여사업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1) 자립지원교육훈련급여사업(自立支援教育訓練給付金事業)

① 목표와 개요

이 사업의 목표는 모자가정 모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고용보험의 교육훈련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지정교육 강좌를 수강하고 수료한 경우, 총경비의 40.0%(최저 8,001엔~최대 20만엔)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개강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는 총경비의 20.0%(최저 4,001엔~최대 10만엔)로 감소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 모의 자립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부양수당을 신청하는 모에게 아동부양수당현황서 용지와 함께 이 사업의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송하고 있다.

② 대상자(자격요건)

- 아동부양수당지급수준의 모자세대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
-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급여사업의 대상이 되는 강좌

- 고용보험제도의 교육훈련급여로 지정된 교육훈련강좌
- 별도로 지정된 취업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강좌
- 기타 위에 기술된 강좌에 준하여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2) 모자가정고등직업훈련촉진사업(母子家庭高等技能訓練促進費事業)

① 목표와 개요

이 사업의 목표는 모자가정 모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수준 높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모자가정의 모가 간호사, 개호복지사(careworker), 물리치료사 등 고등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경우, 총 수업이수기간의 최종 1/3 기간 동안 「고등기술훈련촉진비」 월 103,000엔(최대 12개월까지로 한정)을 지급받고 있다.

② 대상자(자격요건)

- 아동부양수당지급수준의 모자세대
-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자격의 취득이 가능한 자
- 육아(자녀양육)와 학업(수업이수)의 양립이 곤란한 자

(3)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常用雇用轉換獎勵金事業)

① 목표와 개요

이 사업의 목표는 모자가정 모의 상용고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한 모자가정의 모(이하 대상노동자)를 상용고용(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OJT 등)을 시키고, 이러한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용고용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2004년부터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게 모자가정의 모 1인당 30만원을 상용고용전환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 사업주(자격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주
-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통해 대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무료직업소개기관의 소개를 통해 대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상용고용으로 전환된 모자가정의 모를 연속 6개월 간 고용한 사업주

- 과거 6개월 동안 상용고용노동자를 해고시킨 경험이 없는 사업주
- 과거 3년 동안 고용되었던 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③ 대상 노동자(자격요건)

- 아동부양수당지급수준의 모자세대
- 공공직업안정소와 직업소개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
- 상용고용 시 취업에 제약이 없는 자

3) 청소년 미혼모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³¹⁾

청소년 미혼모의 권리와 일상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출산하여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는 청소년 미혼모가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모자가정)을 단위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대에 자녀를 출산한 여자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과 관련한 교육문제는 물론 낙인감, 자아존중감 약화 등 심리적 문제, 부모와의 갈등은 물론 대인관계 불안, 취업제한, 자립 등 사회적응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20대 또는 30대 출산여성과 동일하게 산전 및 산후관리 등 산부인과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대의 출산여성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양육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부담이 경감 또는 완화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복지법과 모자 및 과부복지법, 그리고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정아동지원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미혼부의 양육비 강제징수제도, 기타 등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31) 厚生統計協會. 2004. 「國民の福祉の動向」.

(1) 한부모가정아동지원서비스

① 목표

모자가정의 모친은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모자 및 과부복지법을 중심으로 각종 시책에 의해 모자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② 주요 내용

가. 경제적 지원

- 유족기초연금/유족후생연금
- 아동부양수당
- 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
- 생활보호제도의 모자·부자가정 대상 가산액
- 세계상의 조치

나. 취업·자립지원(앞 내용의 보완)

- 모자가정취업·자립지원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정촌)는 2004년부터 모자가정취업·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모자가정의 모에게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준비, 취업지원세미나, 취업유망자격증 습득을 위한 강습회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모자생활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양육비 상담, 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양립지원헬로워크 운영

정부는 육아와 함께 취업을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든 모자가정 모가 직업과 가정생활을 순조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양립지원헬로워크를 12개소 설치하여 희망직업 등록, 이직기간 중 직업정보 제공, 직업교육과 훈련, 직업상담과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정촌)는 개별 모자가정 모의

아동부양수당 수급상황과 일상생활 욕구에 맞춰 자립지원계획을 책정하고, 모자 가정취업·자립지원센터나 양립지원헬로워크 등과 연계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자립과 취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전개될 예정이다.

○ 시행고용(trial employment)장려금사업

모자가정의 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육아와 교육훈련이수를 양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구직활동은 제한되고 미취업기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며 노동능력이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사업의 목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 상호이해를 사전에 도모하여 모자가정의 모가 개인적 가족환경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모자가정의 모 가운데 특별히 취직이 어려운 자의 고용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직업안정소나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고용할 사업주에게는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을 지급한다.

○ 모자복지단체 사업수주추진사업

정부는 모자가정 모의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사업수주를 추진하는 모자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하여금 모자가정의 모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 특정사업추진모델사업

정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모자가정 모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선진방법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장려할만한 모델을 확대하여 보급한다.

다. 양육·가정생활지원

- 한부모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
- 보육소에의 우선입소
-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라. 주택 등 종합적 지원

- 모자자립지원원(구 모자상담원)
- 모자생활지원시설
- 모자복지센터

마. 기타 지원

- 공영주택의 특별 공급
- 모자휴양홈

(2) 모자보건서비스

① 목표

모자보건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양육되는 모성을 존중·보호하고, 어린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발달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 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건강을 유지·관리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요 내용

모자보건 활동은 모자보건법과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건시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실행하고 있다.

- 임신부 건강검사
- 유아건강검사
- 1년 6개월 아동 건강검사
- 3세 아동 건강검사
- 취학 시 건강진단
- 임신부·신생아 방문지도
- 미숙아 방문지도 및 양육의료
- 모자보건수첩
- 예방접종
- 장애아동 요육(療育)지도

(3) 보육서비스

보호자의 취업이나 교육, 질병 등의 사정에 따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보육소(이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의 진행 등에 수반하여 보육시간의 연장 및 영아보육, 일시보육 등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보육사업으로서 각종 보육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1999년 12월 『신엔젤플랜』이 책정되어 2000년 이후 중점적인 정비가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12월 『아동양육응원플랜』이 새롭게 책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집은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 2만2,490개소(공립 1만2,356개소, 사립 1만134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용 정원은 202만8,045명, 이용 아동 수는 196만 6929명이다. 따라서 보육수급율(이용아동수÷정원수×100)은 97.0%(공립 91.1%, 사립 104.0%)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는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4) 아동수당

① 목표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질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수급자격

아동수당은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그 아동과 일정한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3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수료 전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한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특례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2004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415만엔) 이상의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 수금액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 각각 월 5,000엔, 세 번째 자녀 이후 월 10,000엔이다.

다. 지급방법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시정촌에 청구하여, 지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급자격이 인정되면, 청구한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5) 미혼부의 양육비 강제징수제도

일본에서는 이혼이나 사실혼에 의한 아버지 또는 미혼부가 양육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997년 이들의 자진 납입율이 낮아지자 강제징수제도가 도입되었다(허남순·노충래, 2005). 정부는 국세청에 강제집행을 위탁하여 미혼부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동산과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특히 미변제분은 채무로 축적된다. 2004년 민사강제집행법이 개정되어 월급에서 변제기인 전에 압류, 즉 예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해 양육비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회라도 양육비가 체납되어 있으면 해당 체납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월급에서 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6) 성교육

① 사춘기건강교실 운영

일본 전국의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체 보호와 생명존엄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춘기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강의 내용은 “단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하자”, “단 한번으로 부모가 된다!”, “섹스에 자격이 필요하다” 등이며, 성병 감염 방지, 피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한편 체험교육을 위해 “임신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신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임신예방 프로그램

가. 금욕교육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즉,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임신해도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지식에 기초한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에게 육체의 정상적 기능과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 클리닉 중심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은 주치의의 통해 상담과 간단한 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하며, 이러한 진료와 서비스는 학교 기반 클리닉과 연계되어 있다.

(7) 성 및 임신 상담

① 사춘기 임신위기센터

사단법인 가정양호촉진협회가 사춘기 학생들을 위한 임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10대 미혼 청소년들이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우, 양육이 어렵거나 보육시설을 통해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10대 여학생과 그 파트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임신에 따른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일단 10대 청소년이 임신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을 경우, 낙태 혹은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이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② 여성클리닉

1명의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낙태한 여성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지고 사례를 관리하여 주는 1차간호사제도(primary nursing system)를 통해 미혼모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출산 또는 낙태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원을 특별히 배치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홍보책자의 배포는 물론 피임, 성병, 월경이상, 임신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퓨어카운슬링(또래상담)

의료와 간호계 대학생과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성에 관한 퓨어카운슬러(또래상담자)를 양성한다. 또래성상담은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성병 감염, 콘돔의 사용방법, 경구피임, 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토론, 게임, 롤플레이 등의 형태로 나눈다. 또한 또래상담자는 이미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가르치며, 피임약의 정확한 구입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문화권에 속한 일본에서의 변화는 특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10대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 10대 임신·낙태·출산 문제가 총체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10대 미혼모 문제가 일찍이 시작되어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와 달리 일본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나 별도의 정책 또는 서비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미혼모보다는 모자가정 대상 즉, 가족을 단위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이나 문부과학성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교육 그 자체보다는 자립지원교육훈련급여사업 등과 같이 고용 특히,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사춘기건강교실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춘기 임신위기센터를 운영하여 10대 청소년이 임신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을 경우, 낙태 혹은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이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넷째, 퓨어카운슬링(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성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나이차가 별로 없는 대학생들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표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다.

5. 대만 : ‘학생 출산휴가제’를 중심으로³²⁾

1) 중고등학생의 임신 및 출산 실태

대만의 중고등학교에서 출산 휴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식적 발표를 하였다. 대만에서 출산 휴가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만의 청소년들의 임신 및 출산 실태로부터 기인한다. 대만의 미성년 임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2.95%이고, 싱가포르(8.0%), 일본(4.0%), 한국(2.8%) 순이다. 이는 일본의 3배, 한국의 4배에 이른다. 대만에서 2006년 1년간 미성년자 5,6천명이 아이를 낳았고(츠후이중/미혼모 쉼터 소장 인터뷰), 한 해에 미성년자의 임신은 3만 명 정도에 달한다(한 민간 단체 조사 결과). 청소년의 첫 성경험 나이와 임신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관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교제 시작일로부터 평균 49일이고, 첫 경험은 평균 15.9세라고 한다(대만 신문). 이성 교제시 성관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성인은 76일인데 비해 대학생 63일, 고등학생 49일로 고등학생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7〉 고등학생 성경험 비율

| 성 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 여학생 | 6.7% | 10.4% | 19.0% |
| 남학생 | 10.4% | 13.9% | 19.0% |

32) 대만에 대한 내용은 2007년 7월 6일 MBC 시사 프로그램 W의 “대만의 10대 미혼모 대책”이라는 방영자료를 녹취하여 연구의 취지에 맞게 요약, 기술한 것임.

2)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정책

(1) 도입 배경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격적 차별 및 낙인이 심각하였다. 이를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 장벽을 해소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이 마련되었다. 교육부 당국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차별이다.”(고후이첸/교육부 학생국장)

또한 미혼모 시설의 실무자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설명한다. “휴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극빈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마치지 못했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나중에 사회 극빈층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츠후이중/미혼모 쉼터 소장)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되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발전되어 왔고 출산휴가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2)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대만은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며 억제책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법으로 성별평등교육법과 성별평등법시행령이 있다. 법에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2004년 성별평등교육법 제14조). 또한 임신한 학생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해 ①교내·외 시설 구비 ②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상담서비스 제공(2005년 성별평등법시행령 11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위의 법과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혼모 대책이 발전되어 온 것이다.

(3) 출산휴가제의 내용

출산휴가제는 대만의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다. 대만 여고생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휴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56일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고 2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 처리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성적은 휴가 후에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이와 같이 임신 및 출산한 여고생에 대한 배려로 출산 후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찬반 논쟁

① 찬성 의견

교육부와 여권신장연합회 등은 이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다.

“임신한 여학생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천이춘/타이베이 여권신장연합회 인터뷰 中)

“남녀 학생 모두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바르지 못한 행동을 격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제도와 임신 증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후이첸/교육부 학생 국장)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5년, 10년, 20년 후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아직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여학생들이 없습니다만 홍보와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천이춘/타이베이 여권신장연합회)

“여고생이라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할지 말지도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고생)

② 반대 의견

여러 학교와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문란해 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산휴가제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다.

“교육부의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을 사실상 허락하는 것입니다.” (리수첸/타이베이 국문교육 교사연맹 인터뷰 중)

“먼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배웠을 때에만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임신 했다고 어떻게 애를 낳게 합니까?” (쉬밍광/ 정다부중학교 학부모회장)

“이 정책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성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부추긴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임신하더라도 뒤에서 모두 해결해 준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왕스친/대만직업고등학교 학부모 협회)

“임신한 학생을 가엾게 생각하고 동정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치는 것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리수첸/타이베이 국문교육 교사연맹-홍따오 중학교)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여고생)

3) 교육부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들

(1) 화시아 직업고등학교

“임신한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 마련하였다. 임신한 학생이 공부하다가 쉬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냉장고 구비(우유를 넣어 둘 수 있도록)하고, 임산부를 위한 전용 책상 마련하였다. 임산부 전용 책상은 임신한 여학생의 체형에 맞게 책걸상을 크고 넓은 것으로 구비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임신한 학생은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을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한 학생이 생기면 그 학생 신체 사이즈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린러첸/화시아 직업고등학교 상담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2) 10대를 위한 산부인과

정부 시책에 따라 대만 내 4개 지역에서 10대를 위한 산부인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 중 ‘10대의 행복 9호’는 2005년 문을 연 10대 전용 산부인과이다. 병원 2층 전체가 10대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성상담, 피임교육, 낙태시술과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임신을 하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그들은 어디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전문적인 의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병원이 좋은지도 모른다. 낙태수술이나 출산을 할 수 있는 곳도 알 수가 없다”(천원룡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4) 대만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청소년 임신율이 높은 대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중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만 교육부의 입장은 중고등학교 미혼모 학생에 대한 인격적 차별 및 낙인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여 학업 중도 포기로 인한 취업 장벽을 해소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을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성별평등교육법에 담겨진 내용과 같이 학교가 임신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법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V. 조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 미혼모시설 실무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또는 간담회)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를 둘러싼 다양한 체계내의 관점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진행방식과 조사대상자를 표로 제시하면 <표 V-1>와 같다. 또한 조사대상자별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표 V-1> 조사대상자 유형에 따른 조사 진행방식

| | | |
|------------|---------------|--------------|
| 청소년 미혼모 조사 | 학업중단 미혼모 심층면접 | 미혼모 설문조사 |
| | 학업지속 미혼모 심층면접 | |
| 시설 실무자 조사 |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 | 시설 실무자 설문조사 |
| | | |
| 교사 조사 | 교사 심층면접 | 교사 설문조사 |
| 학교사회복지사 조사 | 학교사회복지사 심층면접 | 학교사회복지사 설문조사 |

<표 V-2> 조사대상자별, 연구방법별 조사의 내용

| 조사방법 | | 조사내용 |
|--------|------|---|
| 미혼모 대상 | 심층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및 입소 경위 ·임신 당시 학교지도 상황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임신에 대한 미혼부, 학교, 가족, 친구 등의 반응 ·임신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경험 ·임신 후 받은 서비스 ·앞으로의 교육, 진로, 양육 계획, 욕구 및 희망사항 |

〈표 V-2〉 계속

| 조사방법 | | 조사내용 |
|-----------------|------|--|
| 미혼모 대상 | 심층면접 | ·서비스에 대한 제언 ·학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들 ·학업을 지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 ·청소년 미혼모의 성공적인 학업지속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 (학업지속 미혼모들에게만 해당) |
| | 설문조사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임신 및 출산 상황 ·가족, 친구, 기타 사회적 지지 ·학적상태, 학교 및 교사의 반응 및 지도상황 ·학업지속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 기관 실무자 대상 | 간담회 | ·청소년 미혼모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청소년 미혼모 자립, 양육과 관련된 문제점들, 기타 문제점들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교육, 취업 및 진로 관련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따른 어려움/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사회적 서비스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을 지속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원적 학교로의 복학, 대안학교 입학, 다양한 직업학교의 활용, 검정고시 등)은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각 대안들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청소년 미혼모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 |
| | 설문조사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 인식 ·기관현황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장애요인 ·청소년 미혼모에게 적합한 교육형태 ·청소년 미혼모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 |
|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 심층면접 | ·당시 임신 상태 ·당시 학생의 주요 호소 문제 및 어려움 ·당시 학생의 보호자 및 가족들의 임신사실 인지 여부 ·학교 측 관계자 및 담당자의 임신 사실 인지 여부 |

<표 V-2> 계속

| 조사방법 | | 조사내용 |
|-----------------|------|---|
|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 심층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임신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임신 후 학생의 학교 등교의 지속 여부 및 현재의 학적 상태 ·임신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 유무 ·임신 학생의 이후 생활 및 진로 ·임신 학생과의 현재 지속적인 연락 여부 ·출산 후 학생의 학업지속을 위한 상담 및 진학정보의 제공 여부 ·임신학생에 대한 현행 학교 교칙의 개선방안 ·미혼모학생의 학업의 지속이나 진로를 돕기 위하여 학교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 |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임신 및 출산 학생 지도 경험 및 지도내용 ·적절한 학교조치에 대한 인식 : 임신 및 출산은 징계 되어야 하는가? 청소년 미혼모의 재학이 다른 학생 들에게 위해한가? 청소년 미혼모에게 적합한 교육형태는 무엇인가? 대만의 출산휴가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국가정책 |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조사 방법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소년 미혼모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미 출산을 경험한 19세 이하의 미혼 10대 여성을 의미한다.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 방법

기관실무자들의 자문과 미혼모 심층면접 결과 등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내용은 <표 V-2>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으며 전체 설문지는 <부록 1>을 참조하면 된다. 설문지는 4명의 청소년 미혼모를 통해 사

전조사한 후 후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정 작업을 통해 최종 완성하였으며, 자가 기입식이다.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10대(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는 확인하기도, 접촉하기 어려운 상태라 전국에 있는 미혼모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중간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진은, 미혼모시설 12곳, 모자보호시설 4곳, 모자일시보호시설 13곳, 미혼모 중간의집 9곳에 대한 연락처를 시설들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 모든 시설에 전화를 걸어 조사 당시인 2007년 9월 현재 10대(20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입소해 있는지 확인하였다. 청소년 미혼모가 있는 경우 실무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실무자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여 연구진에게 반송하도록 하였다. 전화로 당시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해 있다고 대답한 기관은 모두 조사에 응해 주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미혼모시설들을 추가로 조사대상 시설목록에 포함시켰으며 이런 시설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2개 기관에 설문을 발송하였으며 16개 기관에 거주하는 63명의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2)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방법

청소년 미혼모들의 상황과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출산대기 중이거나 출산한 청소년 미혼모 6명을 면대면 면접하였다. 6명 중 4명은 현재 학업중단 중이며 2명은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심층면접을 위해 질문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였으며 이 목록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이외에 미혼부, 학교교사, 가족, 친구들의 출산, 입양, 양육 관련 반응과 지지 여부, 미혼모 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로부터 받은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질문하였으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는 학업지속에 도움을 준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의 보호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최초 계획은 보다 많은 학업지속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면접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으나 여러 학교를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만일 성공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학생들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출산 후 퇴소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 수 또한 매우 적은데다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학교 몰래 출산을 했거나 출산 사실을 숨기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다수의 경우 미혼모 스스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외부에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혼모시설에서 이런 학생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측에서 신원을 알려주기 꺼리거나 시설이 협조적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가 노출을 꺼리는 상태이므로 성공사례를 접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 사이트와 리틀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업지속 성공사례를 발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반인에게 카페가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관련 정보들이 더 많이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미혼모시설 실무자 대상 조사 방법

1) 미혼모시설 실무자 설문조사 방법

미혼모 시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설문을 발송하면서 각 시설의 실무자 1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부록 2> 참조). 시설 실무자는 청소년 미혼모를 가까이에서 돌보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이 함께 수렴된다면 다각적 측면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제시 또한 보다 적절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10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총 16개 기관의 실무자 1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 전국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막 출산한 많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인 미혼모시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 미혼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간담회의 목적은 시설 실무자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동시에 청소년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 앞서 청소년 미혼모들의 상황과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기관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보내 충분히 논제를 생각하고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전국에 있는 총 12개 미혼모 생활시설에 공문을 보내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9개 지역(서울, 춘천, 인천, 대구, 부산, 광주,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10개 기관에서 총 11명의 실무자 또는 기관장이 참석하였다.

3. 교사대상 조사 방법

1)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가능하면 학생주임교사, 상담주임교사, 보건교사를 포함하여 약 4명의 교사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시범학교가 전국 64개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학교들 중 50%인 3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전국의 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들이 갖는 특수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교들로부터도 임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 학교에서 5명 이하의 교사들만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를 따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임신 및 출산 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 및 지도 내용, 적절한 학교조치에 대한 의견, 청소년 미혼모에게 적합한 교육형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국가정책 등을 질문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부록 3>참조). 설문지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또는 개별적으로 우편발송되었으며³³⁾ 자료 수집은 10월 말부터 11월 초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교사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주임교사, 상담주임교사, 보건교사, 그 외의 기타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되 교사들은 각자 응답한 설문지를 연구자들이 동봉한 개별 봉투에 집어넣어 봉한 후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교사들의 응답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응답내용을 볼 수 있다는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15개 지역에 근무하는 252명의 교사들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임의적으로 선정된 4명의 교사를 심층 면접하였는데 이 중 2명은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그런 경험은 없으나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심층면접 시 사전에 준비한 질문목록을 활용하였으며, 미혼모 학생과의 면접 시기, 당시 학생의 임신 상태, 주요 호소 문제 및 어려움, 가족들과 학교 측 관계자 및 담당자의 임신 사실 인지 여부, 학생 임신과 관련한 보호자와의 면접 진행 여부, 임신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임신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임신 후 학생의 학교 등교의 지속 여부 및 현재의 학적 상태, 임신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 유무, 임신 학생의 이후 생활 및 진로, 출산 후 학생의 학업지속을 위한 상담 및 진학

33)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에는 설문지가 우편 발송되었으며 그 외의 학교들에는 교사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전달해 주거나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메일로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 응답자의 8.7%에 해당하는 22명 이었다.

정보의 제공여부, 출산 후 복학 시도 유무 및 이에 관한 학교 측의 결정 내용, 복학이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안 제시 여부, 임신학생에 대한 현행 학교 교칙의 개선방안, 미혼모학생의 학업의 지속이나 진로를 돕기 위하여 학교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4.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조사 방법

1)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전국 16개 시도의 64개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³⁴⁾ 이 학교들 중 50%인 3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64개교 중 32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자고등학교와 학교사회복지사가 금년에 새로이 배치된 학교는 가능한 제외시켰다. 32개 학교에 교사들에게 사용한 것도 똑같은 질문지를(<부록 3> 참조) 우편 발송하였으며 자가 응답 후 연구자들에게 반송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전국 14개 시도 25개 학교에 근무하는 25명의 학교사회복지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2)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청소년 미혼모를 상담하고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4명 찾아내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시 사용한 질문목록은 교사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34) 9개 도(道)와 7개 직할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하는 16개 지역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VI.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8세와 19세가 각각 16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6세와 17세가 많았으며 각각 13명(20.6%)이었다. 그 외에 15세 3명(4.8%), 13세와 14세는 각각 1명(1.6%)씩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고등학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90.5%인 57명은 미혼모자시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혼모자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미혼모 중간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4명(6.3%)였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가 17명(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22.0%(14명)를 차지하였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28.6%(18명)이나 되었다.

부모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혼한 경우가 25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가 20명(32.3%)이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32.3%를 제외하면 67.3%의 응답자가 부모님 중 두 분 다 없거나 한 분만 계시거나 이혼 또는 별거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가 28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편'은 24명(38.1%), '아주 어려운 편'은 11명(17.5%)이었다. '어려운 편'과 '아주 어려운 편'을 합한 전체의 55.6%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잘 사는 편'과 '아주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조사가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응답자의 약 3/4인 73.0%(46명)는 현재 임신 중이었으며 27.0%는 이미 출산한 경우였다. 총 임신 횟수는 1회(51명, 81.0%)가 가장 많았으며 2회가 11명(17.5%), 3회가 1명(1.6%)이었다.

〈표 VI-1〉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현재 나이 (n=63) | 13 | 1(1.6) | 부모님 상황 (n=62) | 두 분 다 돌아가심 | 1(1.6) |
| | 14 | 1(1.6) | | 아버지만 돌아가심 | 8(12.9) |
| | 15 | 3(4.8) | | 어머니만 돌아가심 | 1(1.6) |
| | 16 | 13(20.6) | | 부모님 함께 사심 | 20(32.3) |
| | 17 | 13(20.6) | | 부모님 이혼 | 25(40.3) |
| | 18 | 16(25.4) | | 부모님 별거 | 7(11.3) |
| 거주 장소 (n=63) | 미혼모자시설 | 57(90.5) | 가족의 경제적 상황 (n=63) | 보통 | 28(44.4) |
| | 미혼모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4(6.3) | | 어려운 편 | 24(38.1) |
| | 기타 | 2(3.2) | | 아주 어려운 편 | 11(17.5) |
| 교육 정도 (n=63) | 중학교 휴학 | 2(3.2) | 임신/출산 여부 (n=63) | 임신 중 출산 후 | 46(73.0) |
| | 중학교 중퇴 | 10(15.9) | | | |
| | 중학교 졸업 | 6(9.5) | | | |
| | 고 재학/휴학 | 14(22.3) | 총 임신 횟수 (n=63) | 1 | 51(81.0) |
| | 고 중퇴 | 17(27.0) | | | |
| | 고 졸업 | 12(19.0) | | | |
| | 대학교 휴학 | 2(3.2) | | | |
| | | | 2 | 11(17.5) | |
| | | | 3 | 1(1.6) | |

2) 미혼모시설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한 모든 실무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6명(37.5%), 30대 3명(18.8%), 40대 5명(31.3%), 50대 2명(12.5%)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13명(81.2)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은 2명(12.5%), 고등학교 졸업은 1명(6.3%)이었다. 생활복지사가 10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 3명(18.8%), 사무국장 2명(12.5%), 생활지도원이 1명(6.2%)이었다. 근무기간은 3년 이상~5년 이하가 반수인 8명(50.0%)이고, 1년 이상~3년 이하가 4명(25.0%), 5년 이상~10년 이하, 10년 이상이 각각 2명(12.5%)이었다. 조사 참여 실무자는 전국 10개 지역 16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87.5%(14명)가 미혼모 생활시설에 속해 있었다.

〈표 VI-2〉 미혼모시설 및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n=16)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1(6.3) | 근무 시설 | 미혼모시설 | 14(87.5) |
| | 대학교 졸업 | 13(81.2) | | 미혼모자 및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 2(12.5) |
| | 대학원 졸업 | 2(12.5) | | | |
| 연령 | 20대 | 6(37.5) | 근무 지역 | 서울 | 5(31.2) |
| | 30대 | 3(18.8) | | 경기 | 3(18.7) |
| | 40대 | 5(31.3) | | 대전 | 1(6.3) |
| | 50대 | 2(12.5) | | 광주 | 1(6.3) |
| 직급 | 시설장 | 3(18.8) | | 전북 | 1(6.3) |
| | 사무국장 | 2(12.5) | | 전남 | 1(6.3) |
| | 생활복지사 | 10(62.5) | | 대구 | 1(6.3) |
| | 생활지도원 | 1(6.2) | | 부산 | 1(6.3) |
| 근무 기간 | 1년 이상~3년 이하 | 4(25.0) | | 울산 | 1(6.3) |
| | 3년 이상~5년이하 | 8(50.0) | | 경남 | 1(6.3) |
| | 5년 이상~10년 이하 | 2(12.5) | | | |
| | 10년 이상 | 2(12.5) | | | |

3) 교사의 일반적 특성

응답교사들 중 154명(61.1)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98명(38.9%)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101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71명(28.3%), 50대는 57명(22.7%)이었다.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55명(61.8%)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는 90명(35.9%)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으로는 무교(94명, 37.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독교(55명, 21.9%)로 조사되었다.

응답교사의 소속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43.8%)와 일반계 고등학교(41.4%)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가 32명(12.7%)을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교사 5명(2.0%)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직책을 살펴본 결과 평교사가 133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부장교사 80명(31.7%), 보건 교사 37명(14.7%), 교장·교감 2명(0.8%)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부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5명(21.8%), 진로상담부 36명(14.3%), 보건실 35명(13.9%)이었다. 반 수의 교사들은 위의 부

〈표 VI-3〉 교사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성별 (n=252) | 남 | 98(38.9) | 직책 (n=252) | 교장, 교감 | 2(0.8) |
| | 여 | 154(61.1) | | 부장교사 | 80(31.7) |
| 연령 (n=251) | 20대 | 20(8.0) | 평교사 | 133(52.8) | |
| | 30대 | 71(28.3) | 보건교사 | 37(14.7) | |
| | 40대 | 101(40.2) | | | |
| | 50대 | 57(22.7) | | | |
| | 60대 이상 | 2(0.8) | | | |
| 최종 학력 (n=251) | 대학 졸업 | 155(61.8) | 소속 부서 (n=252) | 학생생활지도부 | 55(21.8) |
| | 석사학위이상 | 90(35.9) | | 진로상담부 | 36(14.3) |
| | 박사학위이상 | 6(2.4) | | 보건실 | 35(13.9) |
| | | | | 기타(위 이외) | 126(50.0) |
| 종교 (n=251) | 기독교 | 55(21.9) | 근무 지역 (n=251) | 서울 | 15(6.0) |
| | 천주교 | 42(16.7) | | 부산 | 4(1.6) |
| | 불교 | 42(16.7) | | 대구 | 8(3.2) |
| | 무교 | 94(37.5) | | 인천 | 11(4.4) |
| | 기타 | 18(7.2) | | 광주 | 14(5.6) |
| 교사 근무 경력 (n=250) | 5년 이하 | 52(20.8) | | 대전 | 7(2.8) |
| | 6-10년 | 36(14.4) | | 울산 | 6(2.4) |
| | 11-20년 | 75(30.0) | | 경기 | 54(21.5) |
| | 21-30년 | 74(29.6) | | 강원 | 7(2.8) |
| | 30년 이상 | 13(5.2) | | 충북 | 38(15.1) |
| 소속 학교의 유형 (n=251) | 중학교 | 110(43.8) | | 충남 | 4(1.6) |
| | 일반계고 | 104(41.4) | | 전남 | 27(10.8) |
| | 실업계고 | 32(12.7) | | 경북 | 8(3.2) |
| | 고등학교과정 | | | 경남 | 8(3.2) |
| | 대안학교 | 5(2.0) | | 제주 | 40(15.9) |

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학년부, 교무부, 문화부, 상담부, 학생복지부, 연구부, 예체능부, 실업교육부, 도서실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근무지역은 15개 시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1.5%(54명)로 가장 많았다.

4) 학교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총 25명으로 대부분(24명, 96.0%)이 여성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8명(72.0%)으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6명(24.0%), 40대가 1명(4.0%)으로 구성되었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14명(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학위 소지자도 11명(44.0%)이었다. 종교로는 기독교(36.0%)가 가장 많았고 무교(32.0%), 천주교(24.0%), 불교(8.0%)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2년(13명, 52.0%)이 가장 많았고 1년 미만도 28.0%나 되어 비교적 짧은 학교근무 경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한 것이 비교

〈표 VI-4〉 설문조사 참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n=25)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성별 | 남 | 1(4.0) | 소속 부서 |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기타 | 9(36.0) 9(36.0) 7(28.0) |
| | 여 | 24(96.0) | | | |
| 연령 | 20대 | 18(72.0) | | | |
| | 30대 | 6(24.0) | | | |
| | 40대 | 1(4.0) | | | |
| 최종 학력 | 대학 졸업 | 14(56.0) | | | |
| | 석사학위 이상 | 11(44.0) | 대구 | 2(8.0) | |
| 종교 | 기독교 | 9(36.0) | 인천 | 1(4.0) | |
| | 천주교 | 6(24.0) | 광주 | 2(8.0) | |
| | 불 교 | 2(8.0) | 대전 | 2(8.0) | |
| | 무 교 | 8(32.0) | 울산 | 2(8.0) | |
| 근무 경력 | 1년 | 7(28.0) | 경기 | 4(16.0) | |
| | 2년 | 13(52.0) | 강원 | 2(8.0) | |
| | 3년 | 4(16.0) | 충북 | 2(8.0) | |
| | 6년 | 1(4.0) | 충남 | 1(4.0) | |
| 소속 학교의 유형 | 중학교 | 13(52.0) | 전남 | 1(4.0) | |
| | 일반계고등학교 | 5(20.0) | 경북 | 2(8.0) | |
| | 실업계고등학교 | 4(16.0) | 경남 | 2(8.0) | |
| | 중학교과정 대안학교 | 1(4.0) | 제주 | 1(4.0) | |
| | 고등학교과정 대안학교 | 2(8.0) | | | |

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속 학교는 중학교(52.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20.0%), 실업계 고등학교(16.0%)순이었으며 기타로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4명의 학교사회복지사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소속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생활지도부와 진로상담부가 각각 9명(36.1%)씩 가장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전국의 14개 시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1~4명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응답해주었다.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관련 실태 및 욕구

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 미혼모의 학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임신 당시에 이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가 45명(71.4%)으로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18명(28.6%)이었다.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경우 당시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명(29.4%)씩을 차지하였으며, 3학년은 4명(23.5%)이다. 중학생은 2학년 2명(11.8%), 3학년 1명(5.9%)으로 총 17.7%였다. 임신당시 고등학생이 82.3%, 중학생이 17.7%로 고등학교 재학이 중학교 재학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위 결과에서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은 18명이었는데, 이 중 현재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11명(61.1%)이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3학년때 임신하여 무사히 학교를 졸업한 미혼모가 1명 있었으며 나머지 6명(33.3%)은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 당시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없었는데,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히 이 학생들이 휴학 중인지, 휴학하지 않고 장기결석 중인지를 구분해 내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약 1/3의 학생들이 임신으로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머지 2/3는 출산 후 학교로 돌아갈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현재의 학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11명 중 6명만이 답

변을 주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4명(66.7%), 고등학교 3학년이 2명(33.3%)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학 당시의 학년에서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신 당시 및 현재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는 45명(71.4%)이었으며,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중퇴한 경우가 6명(9.5%), 임신 당시에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적을 두고 있거나 임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12명(19.1%)이었다.

〈표 VI-5〉 중고등학교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n=63) | 학교에 다님 학교에 안다님 | 18(28.6) 45(71.4) | 재학 당시 학년 (n=17) | 중학교 2학년 | 2(11.8) |
| | | | | 중학교 3학년 | 1(5.9) |
| | | | | 고등학교 1학년 | 5(29.4) |
| | | | | 고등학교 2학년 | 5(29.4) |
| | | | | 고등학교 3학년 | 4(23.5) |
| 현재 학교 재학 여부 (n=18) | 휴학중/장기결석 얼마전 졸업 중퇴 | 11(61.1) 1(5.6) 6(33.3) | 현재 학년 (n=6) | 고등학교 1학년 | 4(66.7) |
| | | | | 고등학교 3학년 | 2(33.3) |
| | | | | | |
| 학적 변동 상태 (n=63) |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다니고 있지 않다. | | 45(71.4) | | |
| |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다니고 있지 않다. | | 6(9.5) | | |
| |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다니고 있다. | | 11(17.5) | | |
| |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임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 1(1.6) | | |
| 현재 하고 있는 일 (복수응답) (n=63) |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휴학 중이다. | | 11(17.5) | | |
| |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고 있다. | | 3(4.8) | | |
| | 자격증 취득, 기술훈련을 위해 학원, 센터, 복지관 등에 다니고 있다. | | 4(6.3) | | |
| | 돈을 벌고 있다(취업, 아르바이트 등). | | 1(1.6) | | |
| |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 | | 5(7.9) | | |
| | 출산 준비 중이거나 산후 조리 중이다. | | 50(79.4) | | |
| | 기타 | | 6(9.5) | | |

모든 응답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출산 준비 중이거나 산후 조리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50명(79.4%))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가 5명(7.9%)이었다. 자격증 취득, 기술 훈련을 위해 학원

을 다니고 있는 경우는 4명(6.3%),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3명(4.8%)이었다. 청소년 미혼모 응답자의 대다수가 출산을 준비하거나 산후 조리, 또는 아이 양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대상자들이 출산대기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인 미혼모시설 거주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 이후 학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위의 63명의 응답자 중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 18명의 학적 변화 과정을 <표 VI-6>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VI-6> 청소년 미혼모별 학적 변화와 최종 학력

| 미혼모 | 현재 임신중 또는 출산 | 임신 당시 학년 | 임신후 학적변화 | 최종 학력 |
|-----|-----------------|-------------|-------------|-------|
| 1 | 출산 | 중2 | 휴학 | 중 휴학 |
| 2 | 임신 | 중2 | 자퇴 | 중 중퇴 |
| 3 | 임신 | 중3 | 휴학 | 중 휴학 |
| 4 | 출산 | 고1 | 재학 | 고 휴학 |
| 5 | 임신 | 고1 | 자퇴 | 고 휴학 |
| 6 | 임신 | 고1 | 재학 | 고 재학 |
| 7 | 임신 | 고1 | 재학 | 고 재학 |
| 8 | 임신 | 고1 | 휴학 | 고 중퇴 |
| 9 | 임신 | 고2 | 자퇴 | 고 중퇴 |
| 10 | 임신 | 고2 | 휴학 | 고 재학 |
| 11 | 임신 | 고2 | 휴학 | 고 휴학 |
| 12 | 임신 | 고2 | 자퇴 | 고 중퇴 |
| 13 | 임신 | 고2 | 자퇴 | 고 중퇴 |
| 14 | 임신 | 고3 | 휴학 | 고 휴학 |
| 15 | 임신 | 고3 | 자퇴 | 고 중퇴 |
| 16 | 출산 | 고3 | 졸업 | 고 졸업 |
| 17 | 임신 | 고3 | 휴학 | 고 휴학 |
| 18 | 임신 | 고3 | 휴학 | 고 재학 |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지속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니 학업을 지속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명(87.6%),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12명(19.4%)으로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I-7〉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 학업지속 욕구 | 빈도(%) |
|---------|-----------|
| 예 | 50(87.6) |
| 아니오 | 12(19.4) |
| 계 | 62(100.0) |

학업 지속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 9명(18.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9명(18.0%)으로 조사대상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성취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표 VI-8〉 학업지속을 원하는 이유(복수응답 가능) (n=50)

| 이유 | 빈도(%) |
|-------------------------|---------|
|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 6(12.0) |
|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 | 9(18.0) |
|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하니까 | 2(4.0) |
| 더 나은 취업을 위해 | 6(12.0) |
| 관심있는 기술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 1(2.0) |
|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 8(16.0) |
|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 | 1(2.0) |
|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 2(4.0)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 9(18.0) |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 7(14.0) |
|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 | 1(2.0) |
|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 | 1(2.0) |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학교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 각각에게 질문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는 검정고시가 23명(36.5%)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 교육이 11명(17.5%), 원격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14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나 정규교육 이외의 방법을 학업 지속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나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까봐 또한 부정적인 시각 등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는 싶지만 출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이 때 검정고시나 정규교육 이외의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9〉 청소년 미혼모에게 바람직한 교육형태 단위 : 명(%)

| 교육 형태 | 청소년 미혼모 | 미혼모 시설 실무자 | 교사 | 학교 사회복지사 |
|--------------------------------|-----------|------------|------------|-----------|
| 원격학교에서 계속 공부 | 14(22.2) | 1(6.3) | 48(19.4) | 5(20.0) |
| 원래 다니던 학교의 위탁교육 (원격학교 졸업인정) | 8(12.7) | 4(25.0) | 101(40.7) | 14(56.0) |
| 다른 일반학교로 전학 | 3(4.8) | 1(6.3) | 28(11.3) | 0(0.0) |
| 검정고시 | 23(36.5) | 3(18.7) | 6(2.4) | 0(0.0) |
| 대안학교 진학 | 2(3.2) | 2(12.4) | 38(15.3) | 3(12.0) |
|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 | 11(17.5) | 4(25.0) | 14(5.6) | 0(0.0) |
| 기타 | 2(3.1) | 1(6.3) | 13(5.2) | 3(12.0) |
| 계 | 63(100.0) | 16(100.0) | 248(100.0) | 25(100.0) |

하지만 위의 응답내용을 ①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휴학 중 또는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②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로 임신 후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집단, ③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

지 않았던 학업 중단 청소년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VI-10>) 집단 유형에 따라 바람직하게 보는 교육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 그냥 다니는 것(6명, 50.0%)이나 원적학교의 위탁교육(4명, 33.3%)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다. 반면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서의 학업지속이나 다른 일반 학교로의 전학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규교육 이외의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진학 또는 원적학교의 위탁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번 임신으로 인해 정규교육에서 이탈된 학생들이므로 정규교육에서의 학업지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이 아니었던, 다시 말해 임신 이전에 이미 정규교육에서 이탈되어있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22명, 48.9%)나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7명, 15.6%)을 가장 바람직한 교육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31.2%(14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정규교육과정 속에서의 교육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다.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의 경우도 <표 VI-9>에서 보면 청소년 미혼모들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와 정규교육 이외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들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는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이 이미 임신 이전부터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교사들(101명, 40.7%)이나 학교사회복지사들(14명, 56.0%), 미혼모시설 실무자들(4명, 25.0%)은 원적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이 세 집단 중 특히 교사집단과 학교사회복지사 집단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미혼모 학생의 학업지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혼모 학생의 학업지속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 집단들이므로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0〉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 여부 및 현재 학업지속 여부에 따른 청소년 미혼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방법
단위 : 명(%)

| 교육 형태 | 원적 학교에서 계속 공부 | 원래 다니던 학교의 위탁교육 (원적학교 졸업인정) |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 | 검정 고시 | 대안 학교 진학 |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 | 기타 | 계 |
|--------------------------|---------------|-----------------------------|--------------|----------|----------|---------------------|---------|-----------|
| 학업지속 청소년 미혼모 | 6(50.0) | 4(33.3) | 0(0.0) | 0(0.0) | 0(0.0) | 2(16.7) | 0(0.0) | 12(100.0) |
| 임신 후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 0(0.0) | 1(16.7) | 0(0.0) | 1(16.7) | 1(16.7) | 2(33.3) | 1(16.7) | 6(100.0) |
|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 아니었던 청소년 미혼모 | 8(17.8) | 3(6.7) | 3(6.7) | 22(48.9) | 1(2.2) | 7(15.6) | 1(2.2) | 45(100.0) |
| 계 | 14(22.2) | 8(12.7) | 3(4.8) | 23(36.5) | 2(3.2) | 11(17.5) | 2(3.2) | 63(100.0) |

4)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실무자, 학교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물어 보았다.

우선 청소년 미혼모의 응답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16.7%),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15.0%),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15.0%) 순이었다. 2순위로 응답한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긴 학업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순위로는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이 18.8%로 나타났다.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 장애 요인으로 1·2·3 순위 모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청소년 미혼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는 이들의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VI-1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 | 9(15.0) | 2(3.5) | 1(2.1) |
| 학습 동기 부재 | 2(3.3) | 4(7.0) | 2(4.2) |
|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5(8.3) | 1(1.8) | 4(8.3) |
|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 | 4(6.7) | 5(8.8) | 1(2.1) |
|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9(15.0) | 8(14.0) | 6(12.5) |
| 긴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 6(10.0) | 10(17.5) | 8(16.7) |
|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 2(3.3) | 6(10.5) | 9(18.8) |
| 경제적 어려움 | 10(16.7) | 10(17.5) | 3(6.3) |
|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7(11.7) | 7(12.3) | 5(10.4) |
|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3(5.0) | 3(5.3) | 3(6.3) |
| 미혼부와의 불안한 관계 | 1(1.7) | 1(1.8) | 4(8.3) |
| 기타 | 2(3.3) | 0(0.0) | 2(4.2) |
| 계 | 60(100.0) | 57(100.0) | 48(100.0) |

기관 실무자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 장애요인 1순위를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 동기 부재와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라고 응답하였다(각각 25.0%). 또한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과 학교 내·외의 부정적 인식 및 편견에 각각 12.5%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경제적 어려움(18.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순위로는 긴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25.0%)와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18.7%),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18.7%)를 언급하였다.

〈표 VI-12〉 미혼모시설 실무자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 | 2(12.5) | 2(12.5) | 3(18.7) |
| 학습 동기 부재 | 4(25.0) | 0(0.0) | 1(6.3) |
|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4(25.0) | 2(12.5) | 1(6.3) |

〈표 VI-12〉 계속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 | 2(12.0) | 2(12.5) | 0(0.0) |
|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0(0.0) | 1(6.3) | 0(0.0) |
| 긴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 1(6.3) | 1(6.3) | 4(25.0) |
|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 0(0.0) | 2(12.5) | 1(6.3) |
| 경제적 어려움 | 1(6.3) | 3(18.6) | 1(6.3) |
|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1(6.3) | 2(12.5) | 3(18.7) |
|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1(6.3) | 0(0.0) | 2(12.4) |
| 미혼부와의 불안한 관계 | 0(0.0) | 0(0.0) | 0(0.0) |
| 기타 | 0(0.0) | 1(6.3) | 0(0.0) |
| 계 | 16(100.0) | 16(100.0) | 16(100.0) |

교사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 장애요인 1순위로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32.3%), 학교 내·외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22.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순위에서는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21.9%),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15.9%)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17.5%)와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15.9%)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VI-13〉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 | 81(32.3) | 28(11.2) | 40(15.9) |
| 학습 동기 부재 | 5(2.0) | 8(3.2) | 8(3.2) |
|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36(14.3) | 40(15.9) | 23(9.2) |
|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 | 57(22.7) | 55(21.9) | 30(12.0) |
|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1(0.4) | 3(1.2) | 10(4.0) |
| 긴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 1(0.4) | 6(2.4) | 5(2.0) |
|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 6(2.4) | 14(5.6) | 23(9.2) |

〈표 VI-13〉 계속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경제적 어려움 | 8(3.2) | 36(14.3) | 36(14.3) |
|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41(16.3) | 30(12.0) | 44(17.5) |
|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13(5.2) | 23(9.2) | 19(7.6) |
| 미혼부와의 불안한 관계 | 1(0.4) | 8(3.2) | 13(5.2) |
| 기타 | 1(0.4) | 0(0.0) | 0(0.0) |
| 계 | 251(100.0) | 251(100.0) | 251(100.0) |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32.0%),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32.0%)을 가장 많이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28.0%)는 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경우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28.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VI-14〉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어려운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 | 4(16.0) | 5(20.0) | 4(16.0) |
| 학습 동기 부재 | 0(0.0) | 2(8.0) | 1(4.0) |
|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8(32.0) | 7(28.0) | 4(16.0) |
|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 | 8(32.0) | 2(8.0) | 2(8.0) |
|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0(0.0) | 0(0.0) | 1(4.0) |
| 긴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 0(0.0) | 1(4.0) | 2(8.0) |
|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 0(0.0) | 3(12.0) | 1(4.0) |
| 경제적 어려움 | 2(8.0) | 3(12.0) | 2(8.0) |
|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3(12.0) | 1(4.0) | 7(28.0) |
|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0(0.0) | 1(4.0) | 1(4.0) |
| 계 | 25(100.0) | 25(100.0) | 25(100.0)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 아기 양육 문제, 학교 관계자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 현황 및 태도

1) 학교의 지도 현황

(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교의 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에게 임신 사실에 대한 학교의 인지여부를 질문하였는데 학교 측에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12명(66.6%)으로 2/3의 학교가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6명(33.3%)이 재학하던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반응을 물어 보았는데, 잠시 휴학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고 한 경우가 4명(66.6%), 자퇴를 권고한 경우가 2명(33.3%)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비난적’, ‘약간 비난적’, ‘보통’이 각각 2명(33.0%)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5>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사실에 대한 학교의 반응 단위 : 명(%)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학교의 인지여부 (n=18) | 안다 | 6(33.3) | 교사의 반응 (n=6) | 매우 비난적 약간 비난적 보통 | 2(33.3) 2(33.3) 2(33.3) |
| | 모른다 | 12(66.6) | | | |
| 학교의 반응 (n=6) | 휴학 권고 | 4(66.6) | | | |
| | 자퇴 권고 | 2(33.3) | | | |

학교의 임신사실 인지 여부가 학생들의 학적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별로 학교의 반응을 <표 VI-16>에 제시하였다. 학교가 아는 경우(6명) 휴학한 경우는 4명(66.6%)이며 자퇴한 경우는 2명(33.3%)이었다. 반면 학교가 모르는 상황에서(12명) 휴학하거나 계속 재학(무단결석 포함)한 경우는 4명(33.3%), 학교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자 자퇴한 경우가 8명

(66.6%)이었다.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은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학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게 되면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자신들이 먼저 학교를 자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학교가 임신사실을 알고 학생에게 비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휴학을 권고한 경우 학생들에게는 잠시 휴학 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며 자퇴를 권고 받은 2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교사와 또래 친구들을 포함하여)의 시각과 청소년 미혼모 자신들의 태도가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6〉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사실에 대한 학교의 인지 여부, 반응 및 학적변화

| 번호 | 학교의 임신 인지 여부 및 반응 | 임신 후 학적 변화 | 최종 학력 |
|----|--------------------------------------|------------|-------|
| 1 | 모름 | 휴학 | 중 휴학 |
| 2 | 모름 | 자퇴 | 중 중퇴 |
| 3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비난적’/ 잠시 휴학하고 오라고 함 | 휴학 | 중 휴학 |
| 4 | 모름 | 재학(무단결석) | 고 재학 |
| 5 | 모름 | 자퇴 | 고 휴학 |
| 6 | 모름 | 재학 | 고 재학 |
| 7 | 모름 | 재학 | 고 재학 |
| 8 | 모름 | 휴학 | 고 중퇴 |
| 9 | 모름 | 자퇴 | 고 중퇴 |
| 10 | 모름 | 재학 후 졸업 | 고 졸업 |
| 11 | 모름 | 휴학 | 고 재학 |
| 12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보통’/ 잠시 휴학하고 오라고 함 | 휴학 | 고 휴학 |
| 13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비난적’/자퇴하라고 했다 | 자퇴 | 고 중퇴 |
| 14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약간 비난적’/자퇴하라고 함 | 자퇴 | 고 중퇴 |

〈표 VI-16〉 계속

| 번호 | 학교의 임신 인지 여부 및 반응 | 임신 후 학적 변화 | 최종 학력 |
|----|---|------------|-------|
| 15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약간 비난적’/ 잠시 휴학하고 오라고 함 | 휴학 | 고 휴학 |
| 16 | 모름 | 자퇴 | 고 중퇴 |
| 17 | 안다/ 교사들의 반응은 ‘보통’/ 잠시 휴학하고 오라고 함 | 휴학 | 고 휴학 |
| 18 | 모름 | 휴학 | 고 재학 |

(2) 교사의 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임신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7명(14.9%)이었으며, 212명(85.1%)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방법을 살펴보면 상담 19명(51.4%), 부모 연락 23명(62.2%), 학생생활지도부 의뢰 2명(5.4%), 병원 데리고 감 6명(16.2%), 기타 3명(8.1%)으로 구성된다. 교사들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생과의 상담도 과반수가 넘는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학생생활지도부에 의뢰한 경우는 적게 나타났다.

〈표 VI-17〉 미혼모 학생 지도현황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 임신한 학생 지도경험 (n=249) | 있다 | 37(14.9) | 지도 학생의 아동양육 현황 (n=37) | 낙태 | 21(56.8) | |
| | 없다 | 212(85.1) | | 출산 후 입양 | 9(24.3) | |
| 지도 내용 (n=37) (복수 응답) | 상담 | 19(51.4) | 지도 학생의 학업지속 현황 (n=37) | 출산하여 양육 | 1(2.7) | |
| | 부모연락 | 23(62.2) | | 잘 모르겠음 | 6(16.2) | |
| | 학생생활 | 2(5.4) | | 원적학교를 휴학 | 17(45.9) | |
| | 지도부 의뢰 | 6(16.2) | | 하지 않고 다님 | 7(18.9) | |
| | 병원에 데리고 감 | 3(8.1) | | 얼마동안 휴학한 후 | 복학 | 6(16.2) |
| | 기타 | 3(8.1) | | 전학 | 6(16.2) | |
| | | | 자퇴 | 6(16.2) | | |
| | | | 기타 | 1(2.7) | | |

지도한 학생의 아기 양육 상황을 질문한 결과 낙태한 경우가 21명(56.8%)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많은 수가 임신한 경우 낙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출산 후 입양을 보냈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24.3%),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1명(2.7%)에 불과하였다.

지도한 학생의 학업 지속 상태를 조사한 결과, 원적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닌 경우가 17명(45.9%)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휴학 후 복학, 전학, 자퇴가 16.0%~19.0% 범위 내에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3) 학교사회복지사의 지도 현황

학교사회복지사 총 25명 중에서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명(24.0%)으로 약 1/4이 지도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6명 모두는 이들 임신한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했으며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도움을 주었다. 지도한 학생 중 5명(83.3%)은 낙태를 하였으며 1명은 출산하여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모두 원적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I-18〉 학교사회복지사의 임신학생 지도 현황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임신한 학생 지도경험 (n=25) | 있다 | 6(24.0) | 지도 학생의 아동양육 현황(n=6) | 낙태 | 5(83.3) |
| | 없다 | 19(76.0) | | 출산하여 양육 | 1(16.7) |
| 지도 내용 (n=6) (복수 응답 허용) | 상담 | 6(100.0) | 지도학생의 학업지속 현황 (n=6) | 원적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님 | 6(100.0) |
| | 부모연락 | 3(50.0) | | | |
| | 병원에 데리고 감 | 2(33.3) | | | |
| | 기타 | 3(50.0) | | | |

2)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1)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인지에 대한 견해

학교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138

명(55.9%), ‘아니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109명(44.1%)이었다. 반 수 조금 넘는 수의 교사가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전체의 32.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7명(68.0%)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VI-19〉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대상 | 예 | 아니오 | 합계 |
|---------|-----------|-----------|------------|
| 교사 | 138(55.9) | 109(44.1) | 247(100.0) |
| 학교사회복지사 | 8(32.0) | 17(68.0) | 25(100.0) |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개방식으로 적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내용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I-20>과 같다. 징계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임신이나 출산은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신은 개인의 책임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임신은 규칙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성관계는 개인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간섭은 개인권 침해이며, 자의에 의한 임신이 아닐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보호 차원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임신에 대한 징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징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표 VI-20〉 교사가 응답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 태도에 따른 이유 단위: 명(%)

|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
| 문제 발생의 원인 파악이 중요 | 1 | 사회 적응하도록 지원 및 지도 필요 | 6 |
| 개인의 책임 없는 잘못된 행동 | 14 |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간섭 불가 | 10 |
| 학교 부적응 초래 | 4 | 모권 보호 | 4 |
| 교칙 위배 | 16 | | |

〈표 VI-20〉 계속

|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
|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렵 | 7 | 교육권 보장 | 7 |
|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침 | 19 | 교칙에 임신에 대한 규정 없음 | 4 |
| 사회 통념상 문제 | 3 | 임신은 규칙 및 징계로 강제할 사항이 아님 | 18 |
|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음 | 21 | 남자에게도 책임 있음 | 1 |
| 예방 차원 | 4 |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보호 차원 | 9 |
| | | 성교육 필요- 올바른 가정 문화 형성 및 교육, 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필요 | 7 |
| | | 예방 필요 | 1 |
| | | 성폭행이나 자의에 의한 임신이 아닐 경우 보호 차원 | 10 |

학교사회복지사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가운데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 징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학생을 낙인찍는 결과가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VI-21〉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 태도에 따른 이유
단위 : 명(%)

|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이유 | 빈도 |
|-------------------------------------|----|-----------------------------------|----|
| 교칙상 징계대상이 됨 | 2 | 징계대상은 아님 | 3 |
| 학생신분에 어긋남 | 2 | 처벌보다는 보호 및 교육이 필요 | 3 |
|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및 예방 차원 | 4 | 사회와 학교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 | 2 |
| | | 본인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 1 |
| | | 징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 | 4 |
| | |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3 |
| | | 임신 원인에 따라 결정해야 함 | 1 |

(2)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는가에 대한 의견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질문하였는데 교사들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107명(43.0%), ‘매우 그렇다’가 78명(31.3%)을 차지해 조사참여 교사들의 약 75.0%가 임신 학생이 학교에 있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42명(16.9%)에 그쳤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 4명(16.0%), ‘약간 그렇다’ 9명(36.0%)으로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52.0%를 차지하였다.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학교사회복지사는 6명(24.0%)이었다.

〈표 VI-22〉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대상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교사 | 8 (3.2) | 34 (13.7) | 22 (8.8) | 107 (43.0) | 78 (31.3) | 249 (100.0) |
| 학교사회복지사 | 2 (8.0) | 4 (16.0) | 6 (24.0) | 9 (36.0) | 4 (16.0) | 25 (100.0) |

(3) 임신 학생 발견 시 재직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106명(42.7%), ‘자퇴시킨다’가 69명(27.8%), ‘전학 가도록 한다’가 45명(18.1%), ‘기타’가 28명(11.3%)을 차지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가 15명(60.0%), ‘전학 가도록 한다’ 5명(20.0%), ‘자퇴시킨다’ 4명(16.0)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집단에서 ‘자퇴시킨다’는 응답이 27.8%, 학교사회복지사 집단에서 16.0% 나왔다는 사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전학 가도록 한다’는 응답도 각각 18.0%와 20.0%를 차지하였는데 학생이 원해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학생이 원치 않는 전학 권유라면 이 또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어야 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 조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지만, 교사들의 예측은 미

혼모시설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신에 대해 학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 미혼모 설문조사에서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는 학생들은 총 18명이었는데 그 중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경우는 6명이었으며 이 중 2명(33.3%)에 대해 학교에서 자퇴를 권고하여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표 VI-16> 참조).

<표 VI-23> 출산 예정인 임신 학생 발생 시 현재 근무학교의 예상 조치 단위 : 명(%)

| 대상 |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 | 전학하도록 한다 | 자퇴 시킨다 | 기타 | 합계 |
|---------|---------------|----------|----------|----------|------------|
| 교사 | 106(42.7) | 45(18.1) | 69(27.8) | 28(11.3) | 248(100.0) |
| 학교사회복지사 | 15(60.0) | 5(20.0) | 4(16.0) | 1(4.0) | 25(100.0) |

3)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앞의 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서 언급한 대만의 출산휴가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교사는 ‘매우 부정적’ 56명(22.4%), ‘약간 부정적’ 74명(29.6%)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과반수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매우 긍정적’은 18명(7.2%), 약간 긍정적은 66명(26.4%)으로, 33.6%의 교사들이 출산휴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 1명(4.0%), ‘약간 부정적’ 10명(40.0%)

<표 VI-24> ‘출산휴가제’에 대한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태도 단위 : 명(%)

| 의견 | 교사 | 학교사회복지사 |
|--------|------------|-----------|
| 매우 부정적 | 56(22.4) | 1(4.0) |
| 약간 부정적 | 74(29.6) | 10(40.0) |
| 보통 | 36(14.4) | 3(12.0) |
| 약간 긍정적 | 66(26.4) | 8(32.0) |
| 매우 긍정적 | 18(7.2) | 3(12.0) |
| 계 | 250(100.0) | 25(100.0) |

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44.0%를 차지하였다. 반면 ‘약간 긍정적’은 8명(32.0%), ‘매우 긍정적’은 3명(12.0%)으로 54.0%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출산휴가제에 찬성하고 있었다.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상담서비스’가 54(2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중 건강진단 및 출산 비용 지원’과 ‘주거지 제공’이 각각 45(19.5%)명, 35(15.2%)명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학습지도(과외지도)’와 ‘교육관련 경제적 지원(학원비, 교통비 지원 등)’을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는 각각 9(3.9%)명, 4(1.8%)명에 불과해 교육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표 VI-25〉 청소년 미혼모가 제공받은 지역사회서비스(복수응답 허용) 단위 : 명(%)

| 서 비 스 | 빈 도 |
|----------------------------|----------|
| 상담서비스 | 54(23.4) |
| 정보제공 | 27(11.7) |
| 멘토링 서비스 | 1(0.4) |
| 학습지도(과외지도) | 9(3.9) |
| 직업교육(기술훈련), 취업알선 | 10(4.3) |
| 교육관련 경제적 지원(학원비, 교통비 지원 등) | 4(1.7) |
| 주거지 제공 | 35(15.2) |
| 생활비 지원(용돈 등) | 8(3.5) |
| 양육 교육 | 11(4.8) |
| 임신 중 건강진단 및 출산비용 지원 | 45(19.5) |
| 아기 의료지원 | 6(2.6) |
| 아기용품 지원(기저귀, 분유 등) | 12(5.2) |
| 자원봉사의 아기돌봄(베이비시터) | 3(1.3) |
| 아기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 3(1.3) |
| 기타 | 3(1.3) |

5.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학업지속 희망여부 관련 요인

1) 학업지속 관련 요인

어떤 특성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지속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관련 요인들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의 미혼모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미혼모 집단과 ② 임신 당시에는 학교에 다녔으나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미혼모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개인적 요인³⁵⁾, 가족 요인, 학교 및 친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 속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또는 χ^2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VI-26>과 같다.

<표 VI-26>에 있는 요인들에 대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떤 변수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총 18개 밖에 되지 않아 (학업지속집단 12명, 학업중단집단 6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두 집단 간에 살펴본 변수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두 집단이 실질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결국에는 중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서 살펴보지 못한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5) 개인적 요인 중 ‘자아정체감-목표지향성’은 Digan(1965)의 자아정체감척도(Ego Identity Scale)를 서봉연(1975)이 수정·변역한 척도의 하위척도 중의 하나인 ‘목표지향성’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목표지향성’이란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하는데(서초구립 반포종합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3),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정체감-자기수용’은 앞에서 설명한 동일한 자아정체감 척도 중 ‘자기수용’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상을 의미하며(서초구립 반포종합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3)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다.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개인 책임성은 청소년 미혼모가 된데 대한 당사자 책임성을 5점 척도 1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태도도 5점 척도 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VI-26> 학업지속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

| 개인적 요인 | 가족 요인 | 학교 및 친구 요인 | 지역사회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당시 연령 • 연령 • 횡수 • 자아정체감-자기수용성 • 자아정체감-자기수용성 •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 책임성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태도 • 아동양육 형태(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양육/미혼부 또는 미혼부 가족이 양육 또는 입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상황(부모 다 계시고 함께 사십/부모 중 1인 이상 사망 또는 이혼별거) • 가족의 경제적 수준 • 부모의 임신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임신 인지 여부 • 친한 친구의 임신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태도 |

2) 학업지속 희망 요인

어떤 특성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지속을 희망하는지 살펴보고자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 연구의 설문에 응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응답을 앞으로 ①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모 집단과 ②희망하지 않는 미혼모 집단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학교 및 친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t-test 또는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학업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변수들과 동일하다(<표 VI-27> 참조).

분석결과, <표 VI-27>에 있는 대부분의 변수들과 학업지속 희망여부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친한 친구들의 임신 사실 인지 여부와 우리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는 경우보다 학업 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아는 것을 매우 꺼리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볼수록 학업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는 자신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지속을 희망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 모들이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태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VI-27〉 학업지속 희망여부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요인들

| 요인 | | 학업지속 희망 여부 | | | χ^2 값/ t값 |
|----------------------------------|-----|------------|----------|-----------|-------------------|
| | | 예 | 아니오 | 계 | |
| 친구가 임신 사실을 아는지 여부 빈도(%) | 안다 | 34(75.6) | 11(24.4) | 45(100.0) | 2.92* |
| | 모른다 | 16(94.1) | 1(5.9) | 17(100.0) | |
| | 계 | 50(80.6) | 12(19.4) | 62(100.0) | |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 (평균점수) | | 8.10 | 6.58 | | 1.78* |

*p<0.1

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견

1)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임신 사실에 대해 미혼 부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니 아는 경우가 48명(76.2%)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모르는 경우는 15명(23.8%)이었다.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미혼부의 반응 중 출산하여 함께 키우자고 했 다가 15명(3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헤어지자고 했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가 12명(25.0%)이었으며, 낙태하라고 한 경우는 8명(16.7%), 출산하여 입양 보내자고한 경우는 6명(12.5%)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을 가족들이 아는 경우가 52명(82.5%)으로 매우 높았으며 모르는 경우는 11명(17.5%)이었다. 이번 임신 사실에 대해 가족의 주된 반응을 물어본 결과 매우 비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 (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비난적이 8명(15.4%)으로 과반수 이상의 가족 들이 청소년 자녀의 임신에 대해 비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약간 지지적인 경 우는 5명(9.6%), 지지적인 경우는 1명(1.9%)으로 11.5%가 지지적이었다.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는 경우가 47명(74.6%), 모르는 경우가 16명(25.4%)이다. 이번 임신 사실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보통에 20명(42.6%)이 응답하였다. 매우 지지적이 10명(21.3%), 약간 지지적이 5명(10.6%)으로, 이 두 경우를 합하면 약 30% 정도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여 가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임신 사실로 인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임신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 26명(41.9%)으로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

〈표 VI-28〉 임신 및 출산 사실에 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 특성 | 구분 | 빈도(%) | 특성 | 구분 | 빈도(%) |
|----------------------|-----|----------|---------|---------------------------------|----------|
| 미혼부 인지 여부 | 안다 | 48(76.2) | 미혼부의 반응 | 헤어지자고 했다/또는 연락을 끊었다 | 12(25.0) |
| | 모른다 | 15(23.8) | | 낙태하라고 했다 | 8(16.7) |
| 가족 인지 여부 | 안다 | 52(82.5) | 가족의 반응 | 출산하여 입양보내자고 했다 | 6(12.5) |
| | 모른다 | 11(17.5) | | 출산하여 함께 키우자고 했다 | 15(31.3) |
| 친구 인지 여부 | 안다 | 47(74.6) | 친구들의 반응 | 기 타 | 7(14.6) |
| | 모른다 | 16(25.4) | | 매우 비난적 | 22(42.3) |
| 임신 사실을 안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 | | 약간 비난적 | 8(15.4) |
| | | | | 보통 | 16(30.8) |
| | | | | 약간 지지적 | 5(9.6) |
| | | | | 매우 지지적 | 1(1.9) |
| | | | | 매우 비난적 | 5(10.6) |
| | | | | 약간 비난적 | 7(14.9) |
| | | | | 보통 | 20(42.6) |
| | | | | 약간 지지적 | 5(10.6) |
| | | | | 매우 지지적 | 10(21.3) |
| | | | |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다 | 7(11.3) |
| | |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 3(4.8) |
| | | | | 주변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여 괴로웠다 | 7(11.3) |
| | | | |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기관이나 시설이 없었다 | 3(4.8) |
| | | | | 학교 또는 주변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까봐 걱정이 되었다 | 26(41.9) |
| | | | |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 9(14.5) |
| | | | | 기 타 | 7(11.3) |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는데 9명(14.5%)이 응답하였으며,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다가 7명(11.3%),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7명(11.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3명(4.8%)이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까봐 걱정했다고 응답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임신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임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난,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태도

응답자 개인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명(49.2%), ‘부정적이지 않은 편’ 10명(15.9%),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이 13명(20.6%)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85.7%의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미혼모 시설 실무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부정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명(43.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이 5명(31.4%)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미혼모를 계속 접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교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매우 부정적’ 82명(32.7%) 또는 ‘조금 부정적’ 117명(46.6%)이라고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79.3%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정적이지 않은 편’은 19명(7.6%),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은 3명(1.2%)으로, 부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 미만이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 3명(12.0%), ‘조금 부정적’이 7명(28.0%)으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0%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4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이지 않은 편’이 3명(12.0%),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이 1명(4.0%)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9〉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 태도

단위 : 명(%)

| 개인적 태도 | 청소년 미혼모 | 미혼모 기관 실무자 | 교사 | 학교 사회복지사 |
|-------------|-----------|------------|------------|-----------|
| 매우 부정적 | 4(6.4) | 0(0.0) | 82(32.7) | 3(12.0) |
| 조금 부정적 | 5(7.9) | 1(6.3) | 117(46.6) | 7(28.0) |
| 보통 | 31(49.2) | 3(18.4) | 30(12.0) | 11(44.0) |
| 부정적이지 않은 편 | 10(15.9) | 7(43.9) | 19(7.6) | 3(12.0) |
|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 13(20.6) | 5(31.4) | 3(1.2) | 1(4.0) |
| 계 | 63(100.0) | 16(100.0) | 251(100.0) | 25(100.0) |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당사자 책임성에 대한 태도

청소년 미혼모가 된데 대한 당사자 책임성을 질문하였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책임이 조금 있다’가 27명(42.9%), ‘책임이 매우 있다’가 21명(33.3%)으로 나타나 76.2%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개인 책임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모 시설 실무자도 청소년들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책임이 조금 있다’가 6명(37.5%), ‘책임이 매우 있다’가 5명(31.3%)으로 나타나 68.8%가 청소년 개인 책임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30〉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 당사자 책임성 인식

단위 : 명(%)

| 당사자 책임성 | 청소년 미혼모 | 미혼모 기관 실무자 | 교사 | 학교 사회복지사 |
|-----------|-----------|------------|------------|-----------|
| 책임이 매우 있다 | 21(33.3) | 5(31.3) | 159(63.9) | 13(52.0) |
| 책임이 조금 있다 | 27(42.9) | 6(37.5) | 80(32.1) | 9(36.0) |
| 보통이다 | 14(22.2) | 2(12.5) | 6(2.4) | 3(12.0) |
| 책임이 별로 없다 | 1(1.6) | 3(18.7) | 3(1.2) | 0(0.0) |
| 책임이 전혀 없다 | 0(0.0) | 0(0.0) | 1(0.4) | 0(0.0) |
| 계 | 63(100.0) | 16(100.0) | 249(100.0) | 25(100.0) |

학교 교사들에게서는 ‘책임이 매우 있다’는 응답이 청소년 미혼모의 거의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교사들의 대부분이 청소년 개인에게 미혼모가 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도 청소년 미혼모 개인의 책임이 ‘매우 있다’ 13명(52.0%), ‘조금 있다’ 9명(36.0%)로 나타나, 88.8%가 청소년 미혼모에게 개인 책임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태도에 대한 인식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매우 부정적인 편에 해당하는 8점~10점에 응답한 비율이 69.3%였다. 미혼모시설 실무자들 중 8점~10점에 응답한 비율은 81.3%로 청소년 미혼모들보다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에게 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경우 9점 91명(36.3%), 10점 70명(27.9%), 8점 66명(26.3%)으로 8점~10점을 차지한 비율이 전체 교사들의 90.5%나 되어 대다수의 교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8점, 9점에 각각 9명(36.0%)씩 응답하였으며 10점은 5명(20.0%)이었다.

〈표 VI-3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 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응답자 유형 |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 매우 부정적 | | | | | | | | | | 계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청소년 미혼모 | 0 (0.0) | 1 (1.6) | 3 (4.8) | 2 (3.2) | 4 (6.5) | 5 (8.1) | 4 (6.3) | 16 (25.8) | 9 (14.5) | 18 (29.0) | 62 (100.0) |
| 기관 실무자 | 0 (0.0) | 0 (0.0) | 0 (0.0) | 1 (6.3) | 0 (0.0) | 1 (6.3) | 1 (6.3) | 6 (37.4) | 5 (31.2) | 2 (12.5) | 16 (100.0) |
| 교사 | 1 (0.4) | 0 (0.0) | 2 (0.8) | 0 (0.0) | 5 (2.0) | 2 (0.8) | 14 (5.6) | 66 (26.3) | 91 (36.3) | 70 (27.9) | 251 (100.0) |
| 학교 사회복지사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4.0) | 1 (4.0) | 9 (36.0) | 9 (36.6) | 5 (20.0) | 25 (100.0) |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5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는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으나, 시설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은 5% 미만으로 나타나 인식 측면에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3)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적도록 하였는데, 출산 후에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안학교 설치, 성교육 및 임신 예방 교육의 확충이 많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비슷한 내용끼리 묶여져 <표 VI-32>에 정리·제시되어 있다.

<표 VI-32>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 사항(복수응답 허용)

|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 빈도 |
|-----------------------------|----|
|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양육+교육 가능토록) | 16 |
| 경제적 지원 확충 | 8 |
| 양육권 보장 및 지원 | 8 |
| 성교육 및 임신 예방 교육 확충 | 13 |
| 전학 | 1 |
| 미혼모의 신분 보장 필요 | 1 |
| 미혼모 시설 마련 및 확충 | 2 |
| 미혼부에 대한 조치 마련 | 3 |
|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출산 후 재교육 지원) | 23 |
| 사회적 서비스 필요 | 4 |
| 출산휴가 정책 도입 | 7 |
| 기술 및 직업교육확보 | 8 |
| 보육시설의 확대 | 4 |
| 법개정 및 정책 변화 모색 | 8 |
| 사회인식 변화 유도 | 3 |
| 학교 교칙 변경 | 1 |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경우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다. 그 밖의 의견은 <표 VI-33>을 참고하면 된다.

<표 VI-33>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복수응답허용)

|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 빈도 |
|-----------------------------|----|
|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 1 |
| 인식개선 | 16 |
| 성교육 및 예방교육 제공 | 2 |
| 사후관리 제공 | 1 |
| 위탁교육 제공 | 1 |
| 출산 후 경제적 지원 및 교육 지원해주는 기관설립 | 1 |
|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 |
| 징계, 퇴학조치, 자퇴권고 금지 | 1 |

4)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1)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 미혼모의 48명(76.2%)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19.0%)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모기관 실무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5명(93.8%)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6.3%)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는 188명(74.9%)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명(2.0%)의 응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매우 필요하다’ 18명(72.0%), ‘조금 필요하다’ 6명(24.0%), ‘보통’ 1명(4.0%)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VI-34〉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 교육 형태 | 청소년 미혼모 | 미혼모 기관 실무자 | 교사 | 학교 사회복지사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0.0) | 0(0.0) | 2(0.8) | 0(0.0) |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1.6) | 0(0.0) | 3(1.2) | 0(0.0) |
| 보통이다 | 2(3.2) | 0(0.0) | 9(3.6) | 1(4.0) |
| 조금 필요하다 | 12(19.0) | 1(6.3) | 49(19.5) | 6(24.0) |
| 매우 필요하다 | 48(76.2) | 15(93.8) | 188(74.9) | 18(72.0) |
| 계 | 63(100.0) | 16(100.0) | 251(100.0) | 25(100.0) |

(2)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에 29명(46.0%), 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에 16명(25.4%)이라고 응답하였다. 기관 실무자들은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에 6명(37.5%),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환경 및 학력신장에 5명(31.2%)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교사들 중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아동 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77명, 30.7%)이고 다음으로는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67명, 26.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 환경 및 학력 신장이 42명(16.7%)을 차지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환경 및 학력 신장에 각각 7명(28.0%)씩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 한시적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연결에는 각각 4명(16.0%)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결 서비스에 3명(12.0%)이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설 실무자들은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와 미혼모의 교육환경 및 학력신장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청소년 미혼모

와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는 아동에 대한 양육정보와 양육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표 VI-35〉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
단위 : 명(%)

| 지원 내용 | 청소년 미혼모 | 미혼모 시설 실무자 | 교사 | 학교 사회복지사 |
|----------------------------------|-----------|------------|------------|-----------|
|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 29(46.0) | 2(12.5) | 77(30.7) | 7(28.0) |
|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환경 및 학력신장 | 5(7.9) | 5(31.2) | 42(16.7) | 7(28.0) |
| 직업훈련 및 취업연결 서비스 | 7(11.1) | 3(18.8) | 36(14.3) | 3(12.0) |
|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 | 4(6.3) | 6(37.5) | 67(26.7) | 4(16.0) |
| 한시적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연결(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 | 16(25.4) | 0(0.0) | 29(11.6) | 4(16.0) |
| 기타 | 2(3.2) | 0(0.0) | 0(0.0) | 0(0.0) |
| 계 | 63(100.0) | 16(100.0) | 251(100.0) | 25(100.0) |

(3)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1순위, 2순위에서 모두 경제적 지원(31.7%, 25.8%)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정책 유도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15.9%),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유도(15.9%)가 그 다음을 이었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경제적 지원(25.8%), 미혼모 시설 확대(16.1%)이다. 3순위로 지목한 것은 아기를 위한 보육비(20.3%), 직업 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18.6%)이다.

〈표 VI-36〉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단위 : 명(%)

| 지원 내용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10(15.9) | 3(4.8) | 8(13.6) |
| 미혼모시설 확대 | 6(9.5) | 10(16.1) | 4(6.8) |
| 미혼모시설 거주기간 연장 | 3(4.8) | 2(3.2) | 4(6.8) |
| 경제적 지원 | 20(31.7) | 16(25.8) | 4(6.8) |
| 의료지원 | 5(7.9) | 6(9.7) | 7(11.9) |
| 상담 서비스 확대 | 0(0.0) | 4(6.5) | 1(1.7) |
|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10(15.9) | 7(11.3) | 5(8.5) |
|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0(0.0) | 3(4.8) | 2(3.4) |
|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 6(9.5) | 4(6.5) | 11(18.6) |
| 아기를 위한 보육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2(3.2) | 5(8.1) | 12(20.3) |
|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1(1.6) | 2(3.2) | 1(1.7) |
| 기타 | 0(0.0) | 1(1.6) | 0(0.0) |
| 계 | 63(100.0) | 63(100.0) | 59(100.0) |

시설 실무자들은 적합하고 시급한 지원 1순위로 경제적 지원(37.5%),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25.0%),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18.8%)를 들었다. 2순위로 지목한 것은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25.0%),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18.8%)였다.

〈표 VI-37〉 미혼모시설 실무자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단위 : 명(%)

| 지원 내용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3(18.8) | 2(12.5) | 0(0.0) |
| 미혼모시설 확대 | 0(0.0) | 0(0.0) | 0(0.0) |
| 미혼모시설 거주기간 연장 | 0(0.0) | 1(6.3) | 1(6.3) |
| 경제적 지원 | 6(37.5) | 2(12.5) | 3(18.8) |
| 의료지원 | 0(0.0) | 0(0.0) | 0(0.0) |
| 상담 서비스 확대 | 0(0.0) | 1(6.3) | 0(0.0) |
|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4(25.0) | 3(18.8) | 4(25.0) |
|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1(6.3) | 2(12.5) | 1(6.3) |
|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 1(6.3) | 4(25.0) | 1(6.3) |
| 아기를 위한 보육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1(6.3) | 1(6.3) | 2(12.5) |
|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0(0.0) | 0(0.0) | 4(25.0) |
| 계 | 16(100.0) | 16(100.0) | 16(100.0) |

교사들로부터는 보다 다양한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 몇 가지 높은 응답률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1순위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21.9%),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16.7%), 경제적 지원(14.7%) 순으로 선택하였다. 2순위로는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17.1%), 아기를 위한 보육비(12.4%), 경제적 지원(12.0%), 직업 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12.0%)에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14.3%), 아기를 위한 보육비(13.5%),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13.1%)을 선택하였다.

〈표 VI-38〉 교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단위 : 명(%)

| 지원 내용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55(21.9) | 23(9.2) | 29(11.6) |
| 미혼모시설 확대 | 20(8.0) | 21(8.4) | 15(6.0) |
| 미혼모시설 거주기간 연장 | 11(4.4) | 10(4.0) | 7(2.8) |
| 경제적 지원 | 37(14.7) | 30(12.0) | 22(8.8) |
| 의료지원 | 7(2.8) | 7(2.8) | 5(2.0) |
| 상담 서비스 확대 | 16(6.4) | 11(4.4) | 19(7.6) |
|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42(16.7) | 43(17.1) | 36(14.3) |
|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24(9.6) | 27(10.8) | 27(10.8) |
|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 11(4.4) | 30(12.0) | 33(13.1) |
| 아기를 위한 보육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12(4.8) | 31(12.4) | 34(13.5) |
|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16(6.4) | 17(6.8) | 23(9.2) |
| 기타 | 0(0.0) | 1(0.4) | 1(0.4) |
| 계 | 251(100.0) | 251(100.0) | 251(100.0) |

학교사회복지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 3순위 모두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어 1순위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가 각각 20.0%(5명)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VI-39〉 학교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 단위 : 명(%)

| 지원 내용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5(20.0) | 5(20.0) | 4(16.0) |
| 미혼모시설 확대 | 1(4.0) | 1(4.0) | 2(8.0) |
| 미혼모시설 거주기간 연장 | 1(4.0) | 1(4.0) | 0(0.0) |
| 경제적 지원 | 3(12.0) | 2(8.0) | 0(0.0) |
| 의료지원 | 0(0.0) | 0(0.0) | 0(0.0) |
| 상담 서비스 확대 | 2(8.0) | 1(4.0) | 1(4.0) |
|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6(24.0) | 6(24.0) | 6(24.0) |
|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5(20.0) | 1(4.0) | 0(0.0) |
|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 1(4.0) | 2(8.0) | 4(16.0) |
| 아기를 위한 보육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1(4.0) | 3(12.0) | 5(20.0) |
|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0(0.0) | 3(12.0) | 2(8.0) |
| 계 | 25(100.0) | 25(100.0) | 25(100.0)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미혼모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정책의 유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Ⅶ. 심층면접 결과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학업 지속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1) 성공 사례¹³⁶⁾

① 일반적 사항

중 3때 임신하였으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미혼모 본인은 임신 당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오빠와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일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며 출산한 아기는 미혼부의 조모가 키우고 본인은 현재 미혼모생활보호시설에 거주 중이다.

② 임신 및 출산 관련 상황

중 3때 중학교 같은 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는 시기가 늦어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임신 후 5개월 동안은 배가 별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학교를 다녔고 배가 불러오는 시기가 겨울방학과 맞물려 졸업 때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학교에서 자퇴 권고를 받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③ 아동 양육

양쪽 부모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두 모여 아동양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족회의를 개최한 결과 미혼부의 부모가 키우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혼부의 조모가 현재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 미혼부와는 현재 헤어진 상태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아기를 데려올 예정이다.

36) 청소년 미혼모와의 심층면접 내용을 요약 기술한 것임.

④ 학적상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몸조리, 아동양육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1년을 쉬 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⑤ 학업지속에 영향을 준 요인들

어머니는 매우 강하신 분으로, 아버지와 이혼 후 미혼모의 임신 이전에 미혼모와 함께 동거해 왔는데 미혼모의 아기나 미혼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며 미혼모가 계속 공부하기를 강하게 원하셨다. 미혼부나 아기를 만나는 것이 미혼모의 학업에 방해될 것으로 생각되어 미혼부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나 만나라고 종용하였다. 미혼모가 아기를 보러 미혼부의 조모댁에 가는 것이 미혼부와 다시 결합하는 계기가 될까봐 미혼모가 아기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미혼모시설에 있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학생 무료 과외봉사 및 멘토 서비스였다. 여대생이 한 명 연결되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교회도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학업을 지속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 멘토를 만나고 나서 대학에 다니고 싶어졌다. 그리고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교사집단 무료과외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재 있는 시설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걱정 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⑥ 학업을 지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다른 친구들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것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알려 질까봐 항상 마음 졸여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친구들이 소문을 내고 “애엄마”라고 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출산으로 인해 1년 늦게 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1살 많게 된 것이 싫다고 이야기하였다.

⑦ 진로 및 향후 생활 계획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⑧ 청소년 미혼모의 성공적인 학업지속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출산을 한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거주지 마련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거주지 지원 이외에도 탁아서비스,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등의 양육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립도 높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학업 중단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면 이상하게 본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에 보다 개방적이게 되어 친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수 있고 마음 졸이지 않고 생활하기를 원한다.

(2) 성공 사례²³⁷⁾

① 일반적 사항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2학년 때 임신하여 3학년 1학기에 출산 기간 동안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아기를 입양시키고 현재는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운동부에 속해 있다.

② 임신 및 출산 관련 상황

2006년 임신하여 2007년 출산 후 아기를 입양 조치하였다. 어린나이의 학생

37) 청소년 미혼모와의 심층면접 내용을 요약 기술한 것이다.

신분으로 양육은 생각해 보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입양을 전격 지지하였다. 미혼모가 중학교에서 운동부에 있는 관계로 운동부 감독과 담임교사, 아버지만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 미혼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두절된 상태이다.

③ 학적상태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일삼아 오다가 자퇴 한 후 또래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중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상태였다. 운동부 감독과 담임교사,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고 학교 친구들은 임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운동부 감독의 도움으로 학교나 친구들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 동안을 시합을 위해 훈련에 참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핸드폰도 정지시키고 입소하였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④ 학업지속에 영향을 준 요인들

아버지와 담임교사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의 도움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⑤ 학업을 지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같이 다니지 못하고 운동복을 갈아입을 때에도 탈의실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친구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모르는 상황인데도 내 스스로 움츠려 진다. 무엇보다도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점이 싫다.

⑥ 진로 및 향후 생활 계획

앞으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말썽쟁이 중학생이지만 운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꿈도 있다.

⑦ 청소년 미혼모의 성공적인 학업지속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학교에서의 배려만 있다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앞두고 그리고, 출산 후 몸조리하는 한 달 이상이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퇴학처리를 해버리므로 학업이 중단되고 복학을 한다 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학교의 배려가 절실하다.

2) 면접 당시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① 일반적 사항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들을 면담하였기 때문에, 면담했던 4명은 모두 임신 말기이거나 산후조리 중이었다. 연령은 2명이 17세, 2명은 19세였으며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

〈표 VII-1〉 학업 중단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사항

| 미혼모 | 연령 | 임신 또는 출산 상황 | 임신 당시 학적상태 |
|-----|----|--------------------|---|
| 가 | 19 | 임신 7개월 | 임신 전인 고 1때 자퇴하고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다 임신함 |
| 나 | 17 | 임신 8개월 | 임신 전인 중 3 때 자퇴 |
| 다 | 17 | 1주 후 출산 예정 | 당시 고 2로 임신으로 인해 자퇴 |
| 라 | 19 | 2개월 전 출산. 아기를 양육 중 | <p>첫 번째 임신은 중 3때 - 임신 후 무단결석과 가출을 했으나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1개월만 휴학한 것으로 하고 무사히 졸업함</p> <p>이번 임신은 두 번째 임신으로 당시 고 3이었음 - 임신으로 인해 배가 불러와 자퇴함</p> |

이번 연구의 심층 면접에 응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는 모두 4명이었고, 2명은 임신하기 전에 이미 자퇴한 경우였고, 2명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자퇴한 경우였다. 임신하기 전에 자퇴한 사례 (가)와 (나)는 각각 고2, 고1때 자퇴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임신하게 되었다. 응답한 미혼모들의 일반적 사항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VII-2〉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일 및 학교자퇴 시기

| 일반적 사항 | 사례(가) | 사례(나) | 사례(다) | 사례(라) |
|---------|---------|---------|--------|---------|
| 연령 | 19세 | 17세 | 17세 | 19세 |
| 출산(예정)일 | 2007.10 | 2007.10 | 2007.8 | 2007.5 |
| 학교자퇴시기 | 2006.11 | 2006.5 | 2007.5 | 2006.12 |

② 임신 및 자퇴 경위

사례 (가)는 실업계고를 진학하였으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1학년 재학 중에 휴학하였다가 다시 복학하였으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생각으로 자퇴를 했고, 그 후 곧 학업중단 상태이던 미혼부를 만나 임신하게 되었다.

사례 (나)는 중3때부터 가출을 해왔고 고1때 친아버지의 성추행으로 인해 외갓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매를 맞는 등 생활이 순탄치 못하여 다시 가출하고 학교도 자퇴하였다. 그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혼부를 만나 2번의 임신을 하였는데 첫 번째 임신은 낙태하였고 두 번째 임신은 낙태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 (다)는 임신 7개월인 2007년 5월에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교를 자퇴하였다. 학교측과 부모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자퇴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미혼부는 세살 연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례 (라)는 임신 5개월인 2006년 12월에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또 자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미혼부의 학업 지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 학생에게는 이번 임신이 두 번째 임신이며 중2때 첫 출산을 하고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었다. 이번 임신의 미혼부는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

③ 임신한 사실에 대한 주변의 이해 및 지지 여부

사례 (가)와 (라)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원가족 또는 미혼부 가족)들이

알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원가족 또는 미혼부 가족 중 어느 한쪽과는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면접 당시 사례 (가)는 출산 후 양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례 (라)는 출산 후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례 (나)와 (다)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원가족 또는 미혼부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면접 당시 두 명 모두 양육과 입양 중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네 사례 모두 학교에서는 이들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두 사례는 이미 자퇴한 상태에 임신을 하였으며 다른 두 사례의 경우 자퇴 당시 학교에서 이들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④ 임신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면접에 응한 미혼모들은 무엇보다 임신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가족이나 미혼부조차도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속상했다고 응답했다. 또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아직 자신도 부모가 되기에는 어린 청소년으로서 그 시기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힘들어했다.

⑤ 임신 후 받은 서비스

이들은 모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립을 위한 준비, 부모 교육, 아기 양육 방법,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⑥ 진로 및 향후 생활 계획

사례 (가)와 (라)는 양육을 희망하거나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여서 자립 기반

을 마련할 때까지 1년 정도 더 시설에 있기를 원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미용 관련 기술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례 (나)와 (다)는 양육 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자의 집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와 (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를 원했다.

⑦ 서비스에 대한 제안

첫째, 양육 미혼모가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주어지면 좋겠고, 일반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워하는 미혼모들을 위해서는 대안 학교나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현재는 양육을 하는 미혼모가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공동생활과정과 같은 생활시설이 확대되면 좋겠다.

셋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거주 기간이 1년이므로 그 이후에는 거주할 곳이 확실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 퇴소 후에도 좀 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되면 좋겠다.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일반적 사항

이번 연구의 심층 면접에 응한 교사는 모두 5명이었고, 그 중 청소년 미혼모를 직접 상담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명이었고, 1명의 교사는 직접 미혼모를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미혼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교사였다. 나머지 2명은 미혼모를 직접 상담한 경험은 없는 교사였다. 연구 과정에서 미혼모를 직접 상담한 교사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상담 경험이 있는 교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비록 사

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지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응답한 교사들의 일반적 사항을 나타내면 <표 VII-3>과 같다.

<표 VII-3> 교사들의 일반적 사항

| 일반적 사항 | 사례 (가) | 사례 (나) | 사례 (다) | 사례 (다) | 사례 (라) |
|-------------------|--------------|--------------|--------|--------------|--------------|
| 성별 | 여 | 여 | 여 | 여 | 여 |
| 총근무경력(년) | 18 | 11 | 무응답 | 22 | 5 |
| 학교분류 (미혼모상담당시) | 고등학교, 인문계 | 고등학교, 실업계 | 중학교 | 고등학교, 인문계 | 고등학교, 인문계 |
| 미혼모 지도 경험 | 있음 | 있음(간접) | 있음 | 없음 | 없음 |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사례 (가)의 경우, 상담 학생의 상태는 임신 3개월이었고, 사례 (나)의 경우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사례 (다)의 경우는 임신 6주였다. 세 학생 모두 부모님께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낙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학생이 임신한 사실에 대해 부모와 학교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단 미혼모인 당사자가 자신의 임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부모에게조차도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 쪽에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담임교사로서 생활상의 문제로 학생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사례 (가)의 경우, 상담한 학생이 임신한 상태로 가출을 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자 학생의 부모를 만나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충격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학생이 가출을 하고 학교를 결석하고 있었지만

제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였다.

사례 (나)의 경우 미혼모의 상대자인 남학생을 면접한 경우로,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단 남학생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남학생의 어머니는 여학생의 부모를 만나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결국 여학생은 임신 7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가의 합의하에 낙태 수술을 하였다.

사례 (다)의 경우 학생의 임신 사실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만 알고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가 모두 낙태하기를 희망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았으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며칠은 병가처리를 해 주었다.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사례 (가)의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12월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방학을 이용하여 낙태 수술을 하게 하였고 개학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였다. 그런데 고3으로 진급한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했다.

사례 (나)의 경우도 학교에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는 없었고 남녀 학생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1년 후에 자퇴하였다.

사례 (다)의 경우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고, 학생은 학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가)와 (나) 두 사례 모두 학생 자퇴와 교사의 근무지 이동 등이 겹치면서 지속적인 지도나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사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중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다니고 있다.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교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없으나 임신을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와 같은 규정에 적용하여 처벌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칙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 이전에 학생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임신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인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위한 휴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미혼모 학생들은 임신 사실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고 주위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출을 하고 무단결석을 하거나 자퇴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학업 지속을 위한 학교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직 학교에 미혼모 학생들을 수용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혼모 학생을 단지 징계의 대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부모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출산 유무를 결정하도록 한 후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휴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남은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미혼모 학생들은 가족들에게도 냉대를 받기 쉽고 경제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결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대안학교와 같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신 및 출산으로 자퇴한 학생들이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학생을 위해서 아이를 기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곱째, 무엇보다 미혼모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미혼모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우선 학생의 관점에서 포용하고 이해해

서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3.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일반적 사항

이번 연구의 심층 면접에 응한 학교사회복지사는 모두 3명이었고, 전부 미혼모 학생을 상담한 경험이 있었다. 사례 (나) 사회복지사는 2명의 미혼모 학생을 상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사례 (다)는 미혼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였다. 응답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일반 사항을 나타내면 <표 VII-4>와 같다.

<표 VII-4>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일반적 사항

| 일반적 사항 | 사례 (가) | 사례 (나) | 사례 (다) |
|-------------------|--------|-----------|-----------|
| 성별 | 여 | 여 | 여 |
| 총근무경력(년) | 1.6 | 1 | 0.2 |
| 학교분류 (미혼모상담당시) | 중학교 | 고등학교, 실업계 | 고등학교, 실업계 |
| 미혼모 지도 경험 | 있음 | 있음(2건) | 있음(간접) |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사례 (나)의 경우, 임신 후반기에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들은 대체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진 상태였고,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임신 후반기여서 낙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출산을 전제로 하고 출산 후 학생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와 아이의 양육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가)의 경우, 장기결석과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학생은 담임교사 및 아버지와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 남자 친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사례 (다)의 경우는 남학생을 상담하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임신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모님과 담임교사 모르게 유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처럼 자신의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학생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임신 초기는 아직 신체적인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어려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인정하는 경우엔 유산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임신 후기는 이미 신체적인 변화가 뚜렷하고 의학적으로 유산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전제로 아이의 양육 문제나 학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사례 (가)의 경우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가정폭력문제만 불러온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금은 담임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만 알고 있고 계속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사례 (나)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담임교사만 임신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는 임신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들의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한 건은 어머니가 어렵듯하게라도 알고 있었고 다른 한 건은 부모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사례 (다)의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와 담임교사만 알고 있었고, 부모는 모르는 상태였다.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사례 (가)의 경우 매일 상담을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의 출결 상황과 학급 생활을 체크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병원 진찰을 받도록 해 주었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다. 사례 (나)의 경우 학생

의 어머니와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위한 상담을 지속했고, 두 경우 모두 임신 후반기였기 때문에 출산과 미혼모 시설, 입양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었다. 또 학업 지속을 위해 학습 자료와 지역 공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다)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남학생을 알고 있었던 경우로 여학생과 함께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 남학생의 학교에서 비밀 보장을 위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와 전화 연락을 통해 여학생의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합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사례 (가)의 경우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것을 감안하면 퇴학조치는 없을 것이지만 전학 등의 권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례 (나)의 경우 한 건은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는 없었고, 방학 기간에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마친 후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였다. 이 학생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였다. 다른 한 건은 본인이 임신을 알고 나서 학교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퇴하고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였다. 사례 (다)의 경우 남학생의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르고 있고 징계도 없었으며 정상 등교하고 있었다.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사례 (가)의 경우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고 있었고, 상담 당시 출산과 낙태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우선 임신초기였기 때문에 학생에게 매일 학생복지실에 오도록 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책을 찾고 있다. 사례 (나)의 경우 출산 후 학교에 정상 등교한 학생에게는 담임교사와의 협조로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그 학생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였다. 반면 임신 사실을 알고 자퇴한 학생에게는 지역 복지관의 검정고시대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퇴 후에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사례 (가)의 경우 중학교는 의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퇴학과 같은 조치는 없으나 자퇴나 전학 권고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의 경우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징계 조항이 있다. 사례 (나)와 (다)의 경우 임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가게 하기도 한다.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모에 대해 편견과 낙인이 심한 사회에서 학교가 미혼모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한다하더라도 미혼모 학생이 임신과 출산 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미혼모 학생이 주변의 비난과 시선을 견디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닌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업 지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미혼모 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미혼모 학생에게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담임교사, 학생부 교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의료진,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팀을 구성하여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 후 원적학교에 다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미혼모 학생이 원할 경우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양육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미혼모가 지역사회 미혼모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역시 미혼모를 문제 학생으로만 바라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 결과

다음은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다시 이를 내용별로 분류·정리·기술한 것이다.

1) 청소년 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점

(1) 교육 관련 문제점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기관 실무자에게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미 자퇴, 퇴학을 당한 후에 임신을 하여 미혼모 시설에 오는 아이들과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업을 그만 두게 된 경우에 따라 문제 접근 방법이 다르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다른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① 이미 자퇴, 퇴학을 당한 후에 미혼모 시설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기관 실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미 자퇴, 퇴학을 한 경우의 청소년은 조기 학교 중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 미혼모를 일반 학교로 돌아가게 한다면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기초 실력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개인 학습교육자를 붙여서 공부를 도와주도록 해야 하며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기 중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본인이 교육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②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학당하는 경우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학을 당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학교 분위기와 학교 관련자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이 또래와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출산 후에 학교로 복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학을 한다 하더라도 부적응하게 된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원적 학교로 돌아가길 원하나 출산 후에 적응기간까지 해서 상당기간 결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일수가 부족하게 된다.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 자동 자퇴처리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 미혼모는 휴학을 선택하려 하지만 임신은 휴학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휴학을 할 수 없다. 시설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문제를 다루면서 크게 부딪히고 어려웠던 점으로 학교 선생님들

의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대응 태도를 호소하였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치부하여 자퇴를 권고하는 것,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알려 학교에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

(2) 자립, 양육과 관련된 문제점들, 기타 문제점

① 자립 관련

(청소년 미혼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데, 각종 식비, 의류비, 주거비 등이 들어가고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있고 또 취업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비가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미혼모가 해결하기 힘든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 청소년 미혼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② 양육 관련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사회에서는 청소년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도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청소년의 경우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업과 양육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시설에서 청소년 미혼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재 시설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교육, 취업 및 진로 관련 서비스

① 학업 중퇴자의 경우는 검정고시를 지원함

학업 중퇴자에게는 검정고시를 지원한다.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학습봉사자를

붙여서 1대1로 학습을 지도한다. 한 기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야학에 보내어 학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시설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해서 담임, 교장 등을 찾아가 설득하여 임신에 대해 학교가 자퇴 및 퇴학을 권고하지 않고 휴학이나 병가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취업 교육

청소년 미혼모에게 중요한 사안 중 한가지로 자립 여건 조성 및 마련을 들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도록 학원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관심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듣도록 하며 관심 분야의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자극과 동기부여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관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 훈련 등을 연결하여 준다. 이를 통하여 취업 기술을 취득하여 소득을 갖게 하여 생존 기반을 마련한다.

(2) 서비스 제공시 어려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몇 가지 언급하였는데) 첫 번째로 입소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강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강의자나 교육자의 마인드와 자세에 따라 강의와 훈련의 질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령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와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자의 경우는 많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주지만 매우 단기적이고 금방 단절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부모, 학교, 선생님 등의 다차원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3)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 및 사회적 서비스

(시설 실무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적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1) 교육적 서비스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가장 현실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청소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1대1 학습지도를 제공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야 한다.

학업을 지속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휴학, 병가처리 등으로 수업일수를 보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의 인식 및 학교 교사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 정책 안에는 청소년들이 임신 및 출산 후에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사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또래 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교육 시간을 다른 수업시간이나 진로시간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성교육에 불참하지 않고 철저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생활에 필요한 재정 마련이다. 임신을 한 후 들어가는 비용 및 생활에 대한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각종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의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다양한 기술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서비스

청소년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의 일탈 및 상실감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미혼모를 낙인찍고 사회에서 소외시키

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미혼모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미혼모의 경우 지역 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경제교육 및 생활교육, 예를 들면 용돈 사용법, 내 집 마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 실제적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규모 있게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또한 관심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플로리스트, 애견, 네일아트, 미용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퍼비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귀 기울여주고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수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4)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을 지속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습이 중단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 미혼모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하여 각 사람의 욕구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방법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관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 중 한 가지가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이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통합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학교가 마련되어 그곳에서 학업을 받으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 기숙사 및 보육시설을 마련하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기관 실무자는 대안학교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미혼모들만 입학하는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청소년 미혼모들만 모여 있는 대안학교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특화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속에 융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중간의 집이나 센터 등을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설에서 학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사들을 투입하여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회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라는 단어를 한부모 등의 부정적이지 않은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문제를 음성화 시키지 않고,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부모교육, 교사 교육 등을 마련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마련하여 수시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간의 집 및 자립시설이 확대되어 청소년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양육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24시간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및 24시간 보육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청소년 미혼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자치체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별로 서비스 및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혜택 및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나 법 중에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면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될 때 입양 혹은 양육을 결정하기 전 단계까지 보호가 이루어지

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6)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관 실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을 물어보니) 청소년 미혼모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 및 훈련을 하는 장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시군구별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의 문제 및 시설 지원의 수준 및 형태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기관 실무자는 본인이 담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수급자였던 청소년이 미혼모가 된 후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려 하니 학생 신분이 아니라 모(母)로 인정이 되어버려 본인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도 및 법 안에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과 실제 생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여 제도 및 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연구과정 요약

본 연구는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발생원인 등을 살펴 보았으며 둘째, 교육권의 개념과 내용, 교육권 보장 실태를 알아보았다. 셋째,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과 교육권 보장 실태는 어떠한지, 어떤 학생지도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미혼모 시설 실무자 16명, 학교교사 252명, 학교사회복지사 2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4명, 학업지속 미혼모 2명, 교사 5명, 학교 사회복지사 3명을 심층면접하였다.

2)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다음에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및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관련 실태 및 욕구

①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후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으로 배가 불러

오거나 출산을 앞두고 되면 휴학이나 장기결석을 통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학교를 자퇴하고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였다.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18명의 미혼모 중에서 미혼모시설 입소 이전에 학교를 완전히 중퇴한 경우는 1/3 정도였다. 나머지 2/3의 미혼모는 휴학이나 장기결석 후 학교로 돌아갈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학교를 완전히 중퇴하지는 않았다.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연령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는 학교 이탈이 청소년 임신의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지적한 김만지(2004)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재임신 방지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임신 이후 학업중단의 이유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기 이전에 임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했던 여러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나 학생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며 퇴학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18명의 미혼모 중에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경우는 6명이었는데 이 중 학교로부터 자퇴 권고를 받는 경우는 2명(33.3%)이었다.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나머지 학생들은 휴학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응답한 미혼모 학생 지도현황에서도, 37명의 교사들이 지도했던 임신 학생들 중 전학을 간 학생이 16.2%, 자퇴를 한 학생이 16.2%(하지만 전학이나 자퇴가 학교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반면 원적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잠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가 65.0% 가량 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많은 미혼모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신이 교사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나 전학을 요구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의 미혼모 학생 지도현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도학생들의 거의 다(1명 제외) 낙태 또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한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고 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한 경우는 학생에게 잠시 휴학 후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자퇴를 권고 받은 학생들은 모두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권과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③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임신 및 출산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는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였다.

④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청소년 미혼모들은 검정고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 교육, 원적학교에서의 공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①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휴학 중 또는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②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으로 임신 후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집단, ③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았던 학업 중단 청소년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 유형에 따라 바람직하게 보는 교육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 그냥 다니는 것이나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다. 반면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서의 학업지속이나 다른 일반학교로의 전학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규교육 이외의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진학 또는 원적학교의 위탁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임신으로 인해 정규교육에서 이탈된 학생들이므로 정규교육에서의 학업지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이 아니었던, 다시 말해 임신 이전에 이미 정규교육에서 이탈되어있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나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교육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31.2%는 원적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정규교육과정 속에서의 교육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다.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의 경우도 청소년 미혼모들과 비슷하게 검정고시와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을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보다 높았다. 시설 실무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이미 중퇴한 미혼모들은 조기 학교 중퇴로 인해 기초 실력이 부족하며 결국 일반 학교로 돌아가게 한다면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의 기초 실력을 채워줄 개인 학습교육자를 붙여 공부를 도와주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통합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학교는 기숙사 및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미혼모 학생이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안학교 형태로는 ① 청소년 미혼모들의 어려움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학교, ②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③ 미혼모 중간의 집이나 센터 등을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형태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원적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미혼모 학생의 학업지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혼모 학생의 학업지속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 집단들이므로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교육 받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형태에 대해 조금씩 상이한 응답을 해주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존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다양한 교육 대안들이 존재해야 하며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1순위), 청소년 미혼모는 ‘아기양육의 역할 수행’, ‘경제적 어려움’,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설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 동기 부재’와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 ‘학교 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학교 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1순위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어 힘들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로 지적되었다. 면접에 응한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미혼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속상해했다. 또한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아직 자신도 부모가 되기에는 어린 청소년으로서 그 시기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힘들어했다.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아기 양육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사회와 학교의 미혼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 학생이 아동도 양육하고 학업도 지속하고 청소년으로서의 욕구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지도 현황 및 태도

① 학교의 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 중에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경우는 6명(33.3%) 불과하고 나머지는 알지 못했다. 학교가 안 경우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4명에 대해 휴학권고를, 2명에서 대해서는 자퇴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학교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미혼모들은 응답하였다. 반면 임신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37명의 교사들(전체 교사의 14.9%)은 주로 상담을 제공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 학생의 임신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은 임신 사실을 혼자 또는 보건교사와만 아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학생이 잠시 다른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것으로 하거나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병가처리해 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었다. 그 결과, 지도한 학생 중 원적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닌 경우가 45% 정도나 되었고 다음으로는 휴학 후 복학, 전학, 자퇴가 16%~19% 범위 내에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원적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닌 학생이 많은 이유는 임신한 학생 중 낙태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학교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명 중 6명(24.0%)이었는데 6명 모두 낙태를 하였으며 낙태 후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교사들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임신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심층면담에 나타나 있다. 학생의 징계를 막기 위해 학교에는 공식적으로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와만 학생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지역사회 보건복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병원 진찰을 받도록 해 주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학생의 어머니와 학생에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임신 후반기의 학생을 위해서는 출산과 미혼모 시설, 입양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학업 지속을 위해 학습 자료와 지역 공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남학생을 여학생과 함께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볼 때, 교사를 통한 임신 학생지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이나 낙태나 혹은 학업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항 결정을

위해 상담해 주는 것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직접 지도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혼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와 팀을 이루어 비록 학교 내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미혼모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 임신, 가출, 비행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용은 미혼모 학생을 위한 개입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반 수 조금 넘는 수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징계 이유는 임신이나 출산은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무책임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임신은 규칙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성관계는 개인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간섭은 개인권 침해이며, 자의에 의한 임신이 아닐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보호 차원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임신에 대한 징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징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경우는 25명 중 32%가 징계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징계 필요 사유였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징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 학생을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다.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약 75%, 학교사회복지사의 약 52%가 임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

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2.7%, ‘자퇴시킨다’가 27.8%, ‘전학 가도록 한다’가 18.1%를 차지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각각 60.0%, 20.0%, 16.0%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집단과 학교사회복지사 집단에서 자퇴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7.8%, 16.0% 나왔다는 사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학 가도록 한다는 응답도 18%~20%를 차지하였는데 학생이 원해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학생이 원치 않는 전학 권유라면 이 또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학교가 알았을 때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정적 조치들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생의 임신 사실을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학생의 교육권 보장 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도움은 교사 1인의 개인적 도움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지원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혼모 학생들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라는 사실에 낙인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교칙에 대한 개정 또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교들의 교칙에는 구체적으로 임신이 징계 대상이라고 규정한 항목은 없으나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와 같은 규정에 적용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임신 사실을 확인한 교사들조차도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 상황이며 학생들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칙의 이런 개연성이 많은 임신 학생들로부터 교육권을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③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앞의 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서 언급한 대만의 출산 휴가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반수를 조금 넘는 수의 교사와 44.0%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교사에게서 33.6%, 학교사회복지사에게서 54.0%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보다는 적었지만 긍정적 응답을 준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 결과는 임신 및 출산을 징계의 사유가 아니라는 응답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기간 동안 정식으로 휴학을 하거나 병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 취업, 진로 관련 서비스 실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사회복지사나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지원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미혼모시설이나 미혼모 중간의 집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미혼모 시설들은 학업 중퇴자들에게는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학습봉사자를 통한 1대1 학습, 야학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담임교사나 교장 등을 설득하여 학생에게 자퇴 및 퇴학 권고가 아닌 휴학이나 병가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학원비나 교통비를 지원하고 관심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얻도록 함과 동시에 자극과 동기부여를 통하여 미혼모들의 인생설계를 돕고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지속과 자립을 위해서는 미혼모시설 내의 서비스도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미흡한 학교,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학업지속 희망여부 관련 요인

① 학업지속 관련 요인

어떤 특성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지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설문조

사에 참여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의 미혼모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미혼모 집단과 ② 임신 당시에는 학교에 다녔으나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미혼모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미혼모 개인, 학교, 가족, 지역사회 요인에 속하는 16개의 변수들과 학업지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변수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총 18개 밖에 되지 않아 (학업지속집단에 12명, 학업중단집단에 6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두 집단 간에 여기서 살펴본 변수들에 대해 실제로 차이가 없다면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현재 매우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여기서 살펴보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요인은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학교가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친구들도 이 사실을 몰라야 했다.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자퇴나 전학을 권유받을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학생이 임신에 대한 표시가 나기 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배가 불러오면 학교를 잠시 쉬고 출산을 한 후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타인에게 아기 양육을 맡기고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학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불러오는 임신 후기가 방학이나 졸업과 맞물리면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아기를 낳아 직접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심층면담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혼모 학생을 위한 아기 양육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임신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알게 되면 징계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은 담임교사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학생이 자퇴하는 빈도가 더 낮았다. 교사가 임신 사실을 알고 휴학권고나 병가처리를 해 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있는데 교사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불안감을

가지고 자퇴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모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중퇴하지 않도록 학교가 임신 문제에 대해 처벌보다는 지원이라는 처방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기를 출산하여 입양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하였는데 아기 양육을 위해 자퇴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자퇴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미혼모들보다 덜 어렵게 아기 양육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들을 교육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아동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한 미혼모 학생은 학업지속의 요인을 미혼모생활시설의 거주지 제공과 타인에 의한 아동 양육,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혼모시설에서 연결해주는 대학생 멘토의 지원을 들었다. 대학생 멘토를 통해 학업지속에 대한 동기가 생겼고 자신도 대학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사례를 볼 때 주변의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좌절하고 상심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정신적 및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의 활용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심층 면접한 학업지속 사례 모두에서 부모가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지해 준 것이 학업지속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낙태를 선택하든, 출산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일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혼자서 자퇴를 통해 학업을 완전히 중단해 버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병가처리 등을 통해 출산기간을 배려해 주고 정신적 지지와 함께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 또는 연계하여 준다면 학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학업지속 희망 요인

어떤 특성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지속을 희망하는지 살펴보고자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 연구의 설문에 응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응답을 앞으로 ①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모 집단과 ②희망하지 않는 미혼모 집단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학교 및 친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 중 대부분은 학업지속 희망여부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친한 친구들의 임신 사실인지 여부와 우리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10.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 미혼모가 아는 미혼모보다 학업 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미혼모일수록 학업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는 자신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지속을 희망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태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미혼모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견

①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응답을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경험을 살펴보니, 임신 사실에 대해 미혼부가 알고 있는 경우가 76.2%였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기를 출산하여 함께 키우자고 한 31.3%를 제외하고는 헤어지자고 했거나 연락을 끊었으며 또는 낙태하거나 입양보내자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지자고 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도 25.0%나 되었는데 미혼부 또한 연령이 어린 청소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미혼모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임신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도 17.5%나 되었으며 임신 사실을 안다고 해도 대부분 지지적이지 않았으며 반 수 이상의 가족이 비난적이었다. 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아는 경우는 74.6%였는데 이들의 30% 정도만이 지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임신 사실로 인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미혼모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임신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들을 들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임신으로 인한 당혹감, 출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체계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 의료비, 양육비 등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담임교사, 미혼부는 이들에게 그다지 지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혼모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변화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미혼모시설들인데 시설에 거주해 있는 출산 전후 기간 동안 미혼모들이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보호와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 충족과 교육권 보장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65.1%의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의 대부분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 교사들의 경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79.3%나 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약 40%나 되었다.

청소년 미혼모가 된데 대한 당사자 책임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76.2%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모시설 실무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 개인 책임성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인 시각에 해당하는 8점~10점에 응답한 비율이 69.3%인 반면,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81.3%,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각각 90% 이상이었다.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5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는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으나, 시설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나 인식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들 자신보다는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혼모들이 시설 거주자들이고 현재 시설의 보호와 함께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자신들에 대해 덜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70% 이상이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산 후에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안학교 설치, 성교육 및 임신 예방 교육의 확충을 지적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미혼모 학생이 주변의 비난과 시선을 견디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학업 지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혼모 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혼모 학생에게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학생부 교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의료진,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팀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미혼모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대안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산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와

경제적 지원, 탁아서비스,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등의 양육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립도 높은 시설들에 대한 확충도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미혼모 학생들은 임신 사실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고 주위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출을 하고 무단결석을 하거나 자퇴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학업 지속을 위한 학교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직 학교에 미혼모 학생들을 수용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는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미혼모 학생을 단지 징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해 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많은 임신 청소년들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아이를 낳아 양육할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나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10대 미혼모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기를 낳은 친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양육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권유당하고 있다.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가 아기를 양육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계비, 양육비, 보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체계가 구축된다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아거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둘 다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모든 지원에 앞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은 모든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보고되었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한부모 등의 부정적이지 않은 용어로의 대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문제를 음성화 시키지 않고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먼저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모두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 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실무자는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환경 및 학력신장을 언급하였다.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도 미혼모나 시설 실무자들과 유사하게 아동 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치료와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 환경 및 학력 신장,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언급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것으로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1순위, 2순위에서 모두 경제적 지원을 지적하였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정책유도도 매우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순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많은 조사 대상자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편견의 감소와 함께 학업지속을 보장해 주어야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함의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교 이탈을 막는 동시에 학년 지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휴학으로 인해 학년에 지체되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고 학업지속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권 보장은 학교에 적을 두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나이에 맞는 진급이 이

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징계 및 차별 근절 필요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학업결손에 대해 질병결석 처리
-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 허용
-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둘째,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만이나 서구 여러나라의 경우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접근은 좀 시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안학교나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에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위탁교육 등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미혼모 학생이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들만을 위해 특화된 대안학교 마련 : 기존 미혼모시설이나 지역사회센터 등에 대안학교 설치 및 학력 인정
- 원적학교의 위탁교육형태로 대안학교 교육 활용 :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 동안 위탁을 맡은 대안학교 등에서 위탁교육을 제공하고 원적학교의 교육 이수로 인정
- 이미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학교 재입학 또는 검정고시 준비 지원

셋째,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 학생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아동양육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취업지원, 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청소년 미혼모에게 아동양육에 따르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제공.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의 체계화
-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 아동양육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초·중등교육 과정을 끝낼 때까지 시설 거주 기간 연장 및 미혼모 시설 확충
- 미혼모 관련 시설 내의 서비스 확충
-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를 반영한 취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 졸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졸업장 취득 시 자립지원금 지원 등
- 지역사회 기관들 내에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서비스 신설
-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미혼모의 친가족에 대한 개입 필요 :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이 지지체계 안에 편입되어야 하며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어 가정복귀가 가능하도록 유도

넷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 학교, 미혼모 시설, 병원, 입양기관, 보육시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묶어 주는 one-stop 종합보호체계 구축
-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종합적 보호체계로 들어가는 one-stop 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구 구축
- one-stop 기구를 통해 사례관리 실시
- 학교 현장은 전문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 종합보호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및 출산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

다섯째,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도 있으며 공개적 사회적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낙인감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 사용 필요
- 교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여섯째, 청소년의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보급
- 친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
- 성행위 관련 상담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3. 정책적 제언

연구 결과와 이의 함의를 토대로 도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내용은 다음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를 이용하는 방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확립, 관련법 체계를 개정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 대상 사회적 인식 전환 방안이 있다.

1)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본인이 원할 경우 원적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언의 법적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도록 강요당

한다면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한다면 이는 법 조항 내용 중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책 내용

원적학교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은 관련 법 개정 작업과 교육부 지침 발령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① 법 개정

앞서, 외국 사례 중 독일에서는 주 자치교육법 조항에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휴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법 개정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4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4조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의 법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신체적 조건’이라는 의미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로 국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4조 내용에서 ‘신체적 조건’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 신체적 조건이나 신체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할 수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생 징계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³⁸⁾ 이 법률 조항에 “③ 학교의 장은 신체상의 변화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의 경우,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유독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조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심층 논의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다른 부분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포괄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도 고

38)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려해 볼 수 있겠다.

〈표 VIII-1〉 법 개정 내용

| 관련 법 조항 | 개정 내용 |
|--------------|---|
| 교육기본법 제4조 | “... 신체적 조건이나 신체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변경.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③ 학교의 장은 신체상의 변화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 또는 차후 논의를 통해, 징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권에 대한 포괄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음. |

② 교육부 지침 발령

학생 차별이 사회문제화 되자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통한 개입에 나선 바가 있는 것처럼,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가 청소년 미혼모를 학교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내용에 청소년 미혼모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시안 내용은, 앞서 언급한 독일의 청소년 미혼모 관련 규정³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표 VIII-2).

〈표 VIII-2〉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추가 내용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학생은 질병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대우하여 질병결석 처리한다.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휴학처리를 해주며, 휴학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9) “임신 때문에 학교를 올 수 없거나 혹은 올 의향이 없는 여학생은 질병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대우한다. 직업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임신 때문에 취업 훈련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이러한 예시안 내용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자퇴 권고나 전학·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대부분 학교의 교칙 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교육체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거나, 기존 교육체계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이 존재하며 또한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안학교를 통하여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의 법적 토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토대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의 법적 토대는 대안학교의 성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정책 내용

대안학교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방안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대안학교 또는 청소년 미혼모만을 위한 새로운 대안학교의 교육을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통해 원격 학교 교육의 일정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① 청소년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 설립

한 가지 대안은 청소년 미혼모만 입학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하되, 동법 제20조 ③과 제19조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미혼모 보호시설이 주체가 되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미혼모 보호시설 개념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대안학교를 기존 미혼모 보호시설이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기숙대안학교 형태로 변화·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주체가 되는 대안학교는 기숙 형태 혹은 통학 형태의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 청소년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교육목적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떤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 모델이 가능하려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형태에 대안학교가 추가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져온다. 즉 동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청소년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가 추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법 제20조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안학교 설립 규정에 맞도록 여성가족부령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에 관한 규정처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혼모시설은 이 시설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표 VIII-3〉 대안학교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방안

| 개정 방향 | 개정 내용 |
|--------------------|--------------------------------------|
|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안학교 추가. |
| 지방자치단체가 대안학교 설립 | 초·중등교육법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 등’ 조항 신설. |

② 원격학교 위탁교육

대안학교를 설립할 경우 대안학교로 전학을 하는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대안학교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임신기간이나 시설입소 기간 동안 교육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신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원격학교에서의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육손실을 줄이고 휴학 등으로 인한 학년지체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도 처분을 받기 전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흔히 장기결석으로 처리되어 휴학 또는 자퇴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복학시 학년

이 지체되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도 시설입소기간 동안 장기결석이 되면 학업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병가처리하고 위탁교육을 제공하여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 적응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학기를 유지시키는 것도 학업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 이용 방안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법적 토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복지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1) 법적 토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상 복지급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2) 정책 내용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는 자녀양육을 하는 한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비 내지 학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복지 급여 내용에 초·중등 교육 과정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 대상 교육비 지원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표 VIII-4〉 청소년 미혼모 교육비 지원 방안

| 관련 법 | 개정 내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복지급여 | 급여 내용에 ‘초·중등 교육과정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 교육비 지원’삽입. |

4) 교육권 보장 전달체계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이 청소년이 갖는 일반적인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면, 여성으로서 청소년 미혼모가 갖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성 긴급 전화 1366 체계를 이용하여 청소년 미혼모가 학습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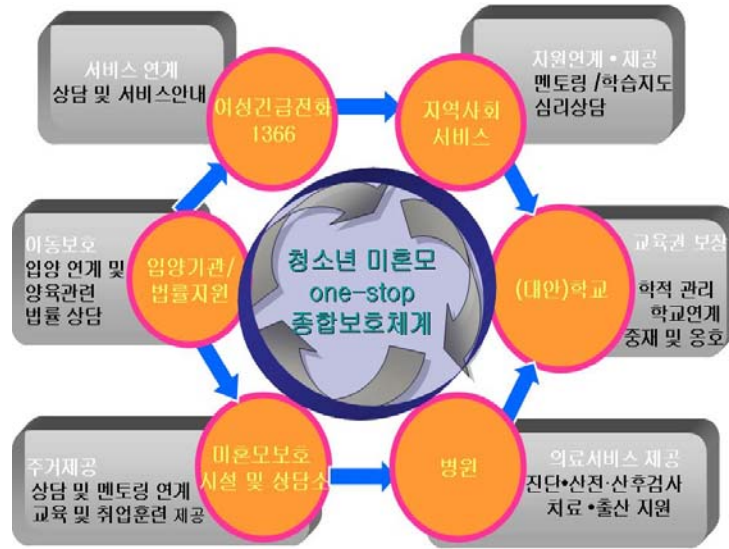
(1) 기존 체계

기존 1366 체계는 주로 폭력피해여성 대상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체계가 사회적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미 1366서비스는 폭력피해여성 대상에서 결혼이민여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확대 개편 방향은 기존 폭력피해여성 대상 서비스를 넘어서 한부모가족, 독신여성, 독거여성노인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대상 서비스 연결 기능 확보로 설정할 수 있다.

(2) 정책 내용

1366 서비스 연결체계의 장기 발전 방향 맥락에서 볼 때, 결혼이민여성에 이

어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서비스 연결 기능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전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 미혼모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대안) 학교 및 교사 간 중재, 상담·보호, 법률 지원, 입양,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동시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한 미혼모나 여대생 등을 멘토로 활용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림 VIII-1〉 청소년 미혼모 지원 one-stop 종합보호체계

5) 관련 법 개정

청소년 미혼모 지원 관련 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 이용 권리(제16조),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제17조), 시설 거주 기간(제19조)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련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①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는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규정되어 있지만, 한부모 자신을 위한 교육 서비스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법 제12조 복지급여 개정 제안으로서 한부모 자신의 교육비 지원 내용과 일치하려면 동법 제17조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한부모 대상 교육 서비스가 급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특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③ 시설 거주 기간

대개의 경우 한부모가족 시설 이용 기간은 (현행) 모부자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시설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 미혼모 실태 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이 결과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된다. 이때 청소년 미혼모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에서 청소년 미혼모 실태를 따로 분류하여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아동 개념과 차별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청소년 미혼모가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보호아동 개념 확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념에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추가한다면,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② 차별 금지 조항

아동복지법은 그 기본 이념으로서 동법 제3조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 장애유무, 질병 및 신체상의 변화,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서도 “... 신체조건·신체상의 변화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을 강조하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I-5〉 관련 법 개정 내용

| 관련 법 | 개정 방향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한부모 자신의 교육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명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한부모의 경우, 시설 거주 기간을 교육 과정 종료때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청소년 미혼모 실태 조사 항목을 따로 설정하도록 함 |
| 아동복지법 제2조 |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 내용 추가 |
| 아동복지법 제3조 | “... 장애유무, 질병 및 신체상의 변화,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로 내용 변경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 “... 신체조건·신체상의 변화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로 내용 변경 |

6) 사회적 인식 전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낙인적 용어 사용 지양,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과정 도입.

① 새로운 용어 사용

미혼모와 같은 낙인과 일탈을 내포하는 언어사용을 지양하고, 대안적 용어, 예를 들어, 독신모, 어린 엄마(리틀맘)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독신모는 혼인 유무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쓸 경우에 기존의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의 개념 분류가 사라지

게 된다. 그러나 독신모 개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낮고, 더 나아가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한부모가족 문제로 일반화됨으로써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리틀맘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우리 말식으로 개조했고, ‘리틀(little)’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반드시 10대 혹은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를 지칭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5항) 등에 제시되어 있는 아동의 개념을 사용하여 ‘아동모’ 또는 ‘아동·청소년모’, ‘청소년모’라는 용어의 사용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어 자체가 법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사회적 인식 변화

우선적으로 기존 교사, 공무원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 자격연수과정에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아동학대관련 교육처럼 미혼모 인권보장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대상 인권교육 과정에도 청소년 미혼모에게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인권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교육과정에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문제, 사회적 지원 방안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들의 교육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사회 각계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표 VIII-6〉 사회적 인식 변화 방안

| 분야 | 관련 내용 |
|---------------|---|
| 용어 사용에서 낙인 지양 | 미혼모 대신, 아동모, 아동·청소년모, 청소년모 등 새로운 용어 사용 |
| 교육 과정 내용 변화 | 교사, 학생, 공무원 대상 인권·양성평등 교육에서 청소년 미혼모 관련 내용 강화 |
| 사회적 차원의 논의 |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논의 필요 |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경주. 2001. “미혼모 발생과 입양실태”. 『기독교 사상』. 2001. 5. 대한기독교서회.
- 김귀옥. 2001.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 연구』. 7(2) : 247-275.
- 김만지. 2001. “청소년기 미혼모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 134-159.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5(2) : 5-25.
- 김연희. 2002. 『10대 미혼모를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득 · 이행숙. 2002.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6(1) : 71-100.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 김혜련. 2002.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 김은하. 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한국사회복지학』. 58(1) : 373-393.
- 김효준. 2001. 『인지행동적 상담이 10대 미혼모의 우울감소와 통제소제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 ·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 1-11.
- 박인선. 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한국모자보건학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52-65.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3.

-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나눔의 집.
- 신미식. 2002. 『한국 청소년의 성, 임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십대 임신예방대책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안재진 · 김지혜. 2004.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3) : 61-87.
- 안치민. 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5 : 5-25.
- 오정수 · 이혜원 · 정익중. 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 윤미현 ·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 149-169.
- 이시백 외. 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 이재명. 2007.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 연구』. 8(1) : 143-168.
- 인권운동사랑방. 2001.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44개 중 · 고등학교 교칙 분석”.
- 정재훈(2007).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 집문당.
- 통계청 (2006). 학년별 졸업자수, 진학자수. [http : //www.kosis.kr](http://www.kosis.kr).
- 하승수 · 김진. 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 한영주. 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 현황 및 한국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 모자보건학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연세집. 1-34.
- 허남순 · 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홀트아동복지회. 2001. 내부자료.
- 황성기. 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Rich, L. · 이수연. 2000. “미국 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 165-192.

〈국외 문헌〉

- Allen-Mears, P. 2007.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Fifth Edition). Allyn and Bacon.
- Anda, Diane de. 2006. *Baby Think it Over : Evaluation of an Infant Simula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Health & Social Work, Vol. 31, No.1, Feb. 2006, 26-35.
- Barro, K. H. 1984. "The Body Image of a Primigravda Following Caesarean Delivery." *Issue in Health Care of Woman*, 6, 367-376.
- BMFSFJ(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7. *Hilfen fuer Alleinerziehenden Frauen in Problemsituation*, Kohlhammer, Stuttgart.
- Center for Assessment and Policy Development(CAPD). 1996. *Working with T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 The Importance of School-Based Programs and Guidance for Child Care Professionals in the Field*(A Briefing Paper).
- Ehrlich, G. and Vega-Matos, C. A. 2000. *A Blueprint for Education Policymakers : Involvement in Prevention Efforts*. NASBE.
- Furstenberg, Frank Jr. 1976. *Unplanned Parenthood : The Social Consequences of Teenage Childbearing*. (NY : The Free Press).
- Department of Health. 2007. *Teenage Pregnancy Next Steps :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nd Primary Care Trusts on Effective Eelivery of Local Strategies*. Department of Health.
- Kaplan, April(1997). "Teen Parents and Welfare Reform Policy." *Welfare Information Network*. Vol.1, Number 3. March 1997.
- Marshall, T. H. & Bottomore, T.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 Roosa, M. W. 1991.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 An Introduction." *Family Relation*. 40. 370-372.
- Schneider, Norbert. 2001. "Allein Erziehen - Vielfalt und Dynamik einer Lebensform." *Theorie und Praxis der Sozialen Arbeit* Nr. 4/2001, S.123-128.
- Thomas, Charles L., & Dimitriv, Dimiter M. 2007. "Effects of a Teen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on Teens' Attitudes Toward Sexuality : A Latent Trait

- Modeling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3. No.1, 173-185.
- VAMV(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und Väter), 2004. *Allein Erziehend : Tipps und Informationen*.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4. *Adolescent Pregnancy : Issues in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Geneva.
- Young, T. M., Martin, S. S., Young, M. E., & Ting, L. 2001. “Internal Poverty and Teen Pregnancy.” *Adolescence*. 36(142) : 289-304.
- 厚生統計協会. 2004. 『厚生労働白書』.
- 厚生省児童家庭局編. 1978. 『児童福祉三十年の歩み』. 日本児童問題調査會.
- 厚生統計協會. 2004. 『國民衛生の動向』.
- 厚生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の動向』. 各年版.
- 新社會福祉學習總書編輯委員會編. 2000. 『兒童福祉論』. 日本全國社會福祉協議會.
- 高橋重宏・才村純編著. 1999. 『兒童家庭福祉論』 <社會福祉選書 4>. 健帛社.
- 古川孝順編著. 1975. 『兒童福祉の成立と展開』. 川島書店.

<기타>

- 한겨레신문. 2001. 5. 9.
- 한겨레신문. 2006. 10. 30.
- 2007년 7월 6일 MBC 시사 프로그램 W.
- [http : //www.cao.go.jp](http://www.cao.go.jp).
- [http : //www.cao.go.jp/shoushi/suisin/s-2/siry01.pdf](http://www.cao.go.jp/shoushi/suisin/s-2/siry01.pdf).
- [http : //www.childtrends.org/Lifecourse/Programs/OhioLEAP](http://www.childtrends.org/Lifecourse/Programs/OhioLEAP).
- [http : //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Statistik/en/Sozialleistungen/KinderJugendhilfe/Tabellen/Content100/AusserhElternhaus__persMerkmale,templateId=renderPrint.psml](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Statistik/en/Sozialleistungen/KinderJugendhilfe/Tabellen/Content100/AusserhElternhaus__persMerkmale,templateId=renderPrint.psml).
- [http : //www.dfes.gov.uk/teenagepregnancy](http://www.dfes.gov.uk/teenagepregnancy).
- [http : //www.direct.gov.uk/en/Parents](http://www.direct.gov.uk/en/Parents).
- [http : //www.donga.com](http://www.donga.com). 2007. 10. 6.
- [http : //www.ed.gov/pubs/Compendium/ch4c.html](http://www.ed.gov/pubs/Compendium/ch4c.html).

[http : //www.eltern.de/forfamily/schule_erziehung/erziehung/schwangerschaft_minderjaehrig.html?p=2](http://www.eltern.de/forfamily/schule_erziehung/erziehung/schwangerschaft_minderjaehrig.html?p=2) (2007. 10. 25).

[http : //www.fsasf.org/programs/children_youth_family.html](http://www.fsasf.org/programs/children_youth_family.html).

[http : //www.hani.co.kr](http://www.hani.co.kr) 2007. 8. 13.

[http : //www.haldimand-norfolk.org](http://www.haldimand-norfolk.org).

[http : //www.haldimand-norfolk.org/socialservices/learning%20earning%20and%20parenting.htm](http://www.haldimand-norfolk.org/socialservices/learning%20earning%20and%20parenting.htm).

[http : //www.jaog.or.jp](http://www.jaog.or.jp).

[http : //www.jaog.or.jp/JAPANESE/MEMBERS/TANPA/H15/030217.htm](http://www.jaog.or.jp/JAPANESE/MEMBERS/TANPA/H15/030217.htm).

[http : //www.massey.ca](http://www.massey.ca).

[http : //www.nasbe.org/Educational_Issues/Reports/teen_pregnancy.pdf](http://www.nasbe.org/Educational_Issues/Reports/teen_pregnancy.pdf).

[http : //www.sbcphd.org/family/cal_learn.html](http://www.sbcphd.org/family/cal_learn.html).

[http : //www.sbcphd.org/family/tapp.html](http://www.sbcphd.org/family/tapp.html).

[http : //www.teenagepregnancyunit.gov.uk](http://www.teenagepregnancyunit.gov.uk).

[http : //www.theko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http://www.theko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

[http : //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http://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
(2007. 10. 26).

IX. 부록

부록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대상 설문지

| | | |
|--|--|--|
| | | |
|--|--|--|

청소년 미혼모용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설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솔직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응답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9월

연구진 : 홍순혜(서울여대 교수/교육복지연구센터장)

김혜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혜원(성공회대 교수)

변귀연(호남대 교수)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이상희(성공회대 박사과정)

* 다음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A. 전반적 인식

1. 귀하 자신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부정적
- ___ ② 조금 부정적
- ___ ③ 보통
- ___ ④ 부정적이지 않은 편
- ___ ⑤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 책임성에 대해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 ___ ① 책임이 매우 있다
- ___ ② 책임이 조금 있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책임이 별로 없다
- ___ ⑤ 책임이 전혀 없다

3. 청소년 미혼모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___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조금 필요하다
- ___ ⑤ 매우 필요하다

* 다음은 귀하가 본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B. 자기인식

다음을 읽고 현재 귀하의 상황에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 | 문 항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그렇다 |
|----|---|-----------|------------------|-----------|-----|
| 1 |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 | | | | |
| 2 | 나는 지금의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다. | | | | |
| 3 | 나의 장래 일에 대한 결정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 | | | |
| 4 | 나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 | | | |
| 5 |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 | | | |
| 6 |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 | | | |
| 7 |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 | | | |
| 8 | 나의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 | | | |
| 9 |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 | | | |
| 10 |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 | | | |
| 11 | 앞길을 열린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 | | | |
| 12 |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 | | | |
| 13 | 나는 가끔 어느 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 | | | |
| 14 | 남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는 않다. | | | | |
| 15 | 나는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한다. | | | | |
| 16 |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 | | | |

* 다음은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C. 임신 및 출산

1. 귀하의 이번 임신은 첫 임신입니까?
___ ① 첫 임신이다
___ ② 재임신이다(총 임신 횟수 총 ___ 회)
2. 현재 귀하는 임신 상태입니까? 또는 출산한 상태이십니까?
___ ① 임신 중(임신 몇 ___ 개월)
___ ② 출산 후(총 출산 ___ 회)
3. 이번 임신(마지막 임신)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___ ① 임신초기(임신 3개월 미만)
___ ② 임신중기(임신 3-6개월 미만)
___ ③ 임신말기(임신 7개월 이상)
4. 이번 임신 당시의 나이는? 만 _____ 세
5. 이번 임신 당시 남자친구의 만 나이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적어주십시오) 만 _____ 세
6. 귀하는 이번 임신 말고 이전의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경험 한 적이 있었습니까?(만일 낙태 경험이 있다면 총 횟수를 기록해 주세요.)
___ ① 그렇다(낙태 총 경험 횟수 ___ 회)
___ ② 아니다

7. 이번 출산 후 아기는 누가 양육할 예정입니까? 이미 출산한 경우는 누가 양육하고 있습니까?

- ___ ① 나 혼자 양육한다
- ___ ② 나와 미혼부가 함께 양육한다
- ___ ③ 내 가족이 양육한다
- ___ ④ 미혼부나 미혼부 가족이 양육한다
- ___ ⑤ 입양기관에 보낸다
- ___ ⑥ 기타 ()

* 다음은 이번 임신(2회 이상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 임신을 의미함)과 관련하여 미혼부와 귀하의 가족 및 친구의 태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D. 가족 및 친구, 사회적 지지

1. 이번 임신 당시에 누구와 살고 있었습니까?

- ___ ① 부나 모와 동거 ___ ② 조부모나 친척과 동거
- ___ ③ 남자친구와 동거 ___ ④ 여자친구(들)과 동거
- ___ ⑤ 혼자 삼 ___ ⑥ 시설(쉼터 포함)에 거주
- ___ ⑦ 기타 ()

2. 귀하의 가족이나 미혼부 가족 중에 미혼모가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3. 귀하의 친구들 중에 미혼모가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4. 이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와 처음 상의하였습니까?

- ① 친구
- ② 미혼부
- ③ 내 부모
- ④ 내 형제자매
- ⑤ 미혼부 가족
- ⑥ 학교 교사
- ⑦ 미혼모시설 종사자 및 상담가
- ⑧ 기타()

5. 미혼부는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7번으로 바로 가시오)

6.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미혼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① 헤어지자고 했다/또는 연락을 끊었다
- ② 연락을 끊지 않았으나 네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
- ③ 낙태하라고 했다
- ④ 출산하여 입양보내자고 했다
- ⑤ 출산하여 함께 키우자고 했다
- ⑥ 기타()

7. 귀하의 가족들은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9번으로 바로 가시오)

8.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귀하 가족들의 주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비난적
- ② 약간 비난적
- ③ 보통
- ④ 약간 지지적
- ⑤ 매우 지지적

9. 귀하의 친한 친구들은 이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11번으로 바로 가시오)

2. 이번 임신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___ ① 그렇다(아래 표에 √ 하세요.)

___ ② 아니다(7번으로 바로 가시오)

| 초등학교 재학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대학교 재학 이상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 | | | | | | | |

3. 귀하는 이번 임신 이후 학업 지속 여부는 어떠했습니까?

___ ① 원래 학교를 계속 다녔다

___ ② 학교를 휴학하고 학업을 잠시 중단하였다

___ ③ 학교를 자퇴한 후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다

___ ④ 휴학 후 원래 학교로 복학하였다

___ ⑤ 자퇴 후 다른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였다

___ ⑥ 기타()

4. 귀하의 이번 임신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___ ① 학교 측에서는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다

___ ② 학교 측에서는 임신사실을 알았으나 무관심했다

___ ③ 전학가라고 했다

___ ④ 잠시 휴학한 후 다시 학교를 돌아오라고 했다

___ ⑤ 자퇴하라고 했다

___ ⑥ 기타()

5. 귀하의 이번 임신에 대한 교사들의 주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___ ① 매우 비난적

___ ② 약간 비난적

___ ③ 보통

___ ④ 약간 지지적

___ ⑤ 매우 지지적

___ ⑥ 나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함

6. 이번 임신 이후, 학교로부터 받은 서비스나 도움이 있다면 다음에 적어주십시오.

7. 현재 귀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학교를 다니고 있다
- ②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 ③ 자격증 취득, 기술훈련을 위해 학원, 센터, 복지관 등을 다니고 있다
- ④ 돈을 벌고 있다(취업, 아르바이트 등)
- ⑤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
- ⑥ 출산준비중이거나 산후 조리중이다
- ⑦ 기타()

8.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받기 가장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
- ② 원래 다니던 학교의 위탁교육(원적학교 졸업인정)
- ③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
- ④ 검정고시
- ⑤ 대안학교 진학
- ⑥ 정규 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 교육
- ⑦ 기타()

9. 앞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싶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___ ⑤ 직업교육(기술 훈련), 취업알선
- ___ ⑥ 교육관련 경제적 지원 (학원비, 교통비 지원 등)
- ___ ⑦ 주거지 제공
- ___ ⑧ 생활비 지원(용돈 등)
- ___ ⑨ 양육 교육
- ___ ⑩ 임신 중 건강진단 및 출산비용 지원
- ___ ⑪ 아기 의료지원
- ___ ⑫ 아기용품 지원(기저귀, 분유 등)
- ___ ⑬ 자원봉사자의 아기돌봄(베이비시터)
- ___ ⑭ 아기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 ___ ⑮ 기타()

13. 귀하는 앞으로 1-2년간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서비스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세요.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상담서비스
- ② 정보 제공
- ③ 멘토링 서비스
- ④ 학습지도(과외지도 등)
- ⑤ 직업교육(기술 훈련), 취업알선
- ⑥ 교육관련 경제적 지원(학원비, 교통비 지원 등)
- ⑦ 주거지 제공
- ⑧ 생활비 지원(용돈 등)
- ⑨ 양육 교육
- ⑩ 임신 중 건강진단 및 출산비용 지원
- ⑪ 아기 의료지원
- ⑫ 아기용품 지원(기저귀, 분유 등)
- ⑬ 자원봉사자의 아기돌봄(베이비시터)

- ⑭ 아기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 ⑮ 기타()

14.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② 미혼모시설 확대
- ③ 미혼모 시설 거주기간 연장
- ④ 경제적 지원
- ⑤ 의료 지원
- ⑥ 상담 서비스 확대
- ⑦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⑧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⑨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 지원
- ⑩ 아기를 위한 보육비(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⑪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⑫ 기타()

15. 마지막으로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F. 일반적 사항

1. 현재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_____세

2.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___ ① 초등학교 중퇴 | ___ ② 초등학교 졸업 |
| ___ ③ 중학교 재학중 | ___ ④ 중학교 휴학중 |
| ___ ⑤ 중학교 중퇴 | ___ ⑥ 중학교 졸업 |
| ___ ⑦ 고등학교 재학중 | ___ ⑧ 고등학교 휴학중 |
| ___ ⑨ 고등학교 중퇴 | ___ ⑩ 고등학교 졸업 |
| ___ ⑪ 대학교 재학중 | |
| ___ ⑫ 기타 (_____) | |

3. 현재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 | |
|--------------------------------|
| ___ ① 미혼모자 시설(미혼모 생활시설) |
| ___ ② 모자보호 시설(모자원) |
| ___ ③ 미혼모자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중간의 집) |
| ___ ④ 기타(_____) |

4. 현재 부모님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 | |
|-------------------------|
| ___ ① 두 분 다 돌아가셨다 |
| ___ ② 아버지만 돌아가셨다 |
| ___ ③ 어머니만 돌아가셨다 |
| ___ ④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신다 |
| ___ 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다 |
| ___ ⑥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 중이시다 |

5. 현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 ___ ① 아주 잘 사는 편 ___ ② 잘 사는 편
___ ③ 보통 ___ ④ 어려운 편
___ ⑤ 아주 어려운 편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2. 미혼모 시설 실무자 대상 설문지

| | | |
|--|--|--|
| | | |
|--|--|--|

기관 실무자용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실무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설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솔직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응답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9월

연구진 : 홍순혜(서울여대 교수/교육복지연구센터장)

김혜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혜원(성공회대 교수)

변귀연(호남대 교수)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이상희(성공회대 박사과정)

* 다음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A.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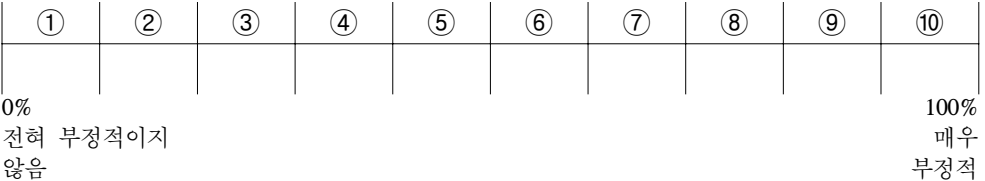
1. 귀하 자신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 ② 조금 부정적
- ③ 보통
- ④ 부정적이지 않은 편
- ⑤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 책임성에 대해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 ① 책임이 매우 있다 ② 책임이 조금 있다
- ③ 보통이다 ④ 책임이 별로 없다
- ⑤ 책임이 전혀 없다

3.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위치에 V표시 해주십시오.



4. 청소년 미혼모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5.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 ___ ②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 환경 및 학력신장
- ___ ③ 직업훈련 및 취업연결 서비스
- ___ ④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
- ___ ⑤ 한시적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연결(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
- ___ ⑥ 기타()

* 다음은 기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B. 기관현황

1. 현재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 ___ ① 미혼모자 시설(미혼모 생활시설)
- ___ ② 모자보호 시설(모자원)
- ___ ③ 미혼모자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중간의 집)
- ___ ④ 기타()

2. 현재 기관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3. 현재 거주하는 미혼모 중 십대(19세 이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3.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
- ② 학습 동기 부재
- ③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④ 학교내·외 부정적 인식과 편견
- ⑤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⑥ 긴 학업 중단으로 인한 기초 학력의 저하
- ⑦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 환경
- ⑧ 경제적 어려움
- ⑨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⑩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⑪ 미혼부와의 불안한 관계
- ⑫ 기타()

5.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② 미혼모시설 확대

- ③ 미혼모 시설 거주기간 연장
- ④ 경제적 지원
- ⑤ 의료 지원
- ⑥ 상담 서비스 확대
- ⑦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⑧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⑨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 지원
- ⑩ 아기를 위한 보육비(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⑪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⑫ 기타()

6. 청소년 미혼모가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원적 학교에서 계속 공부
- ___ ②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원적학교 졸업으로 인정)
- ___ ③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
- ___ ④ 검정고시
- ___ ⑤ 대안학교 진학
- ___ ⑥ 정규 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 교육
- ___ ⑦ 기타()

7.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6.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장
- ② 사무국장
- ③ 생활복지사
- ④ 생활지도원
- ⑤ 기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지

| | | |
|--|--|--|
| | | |
|--|--|--|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용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설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솔직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응답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연구진 : **홍순혜**(서울여대 교수/교육복지연구센터장)

김혜래(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 교수)

이혜원(성공회대 교수)

변귀연(호남대 교수)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이상희(성공회대 박사과정)

본 설문지에서 ‘청소년 미혼모’란 중·고등학생으로서 임신하여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A.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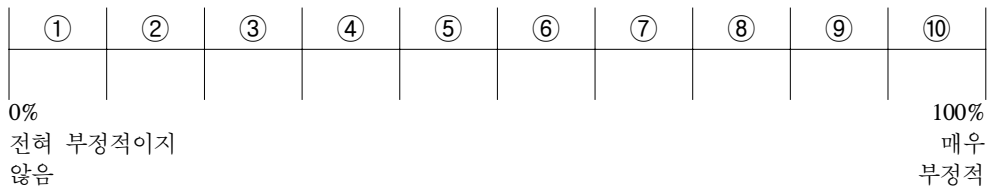
1. 귀하 자신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 ② 조금 부정적
- ③ 보통
- ④ 부정적이지 않은 편
- ⑤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개인 책임성(당사자 책임)에 대해 귀하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 ① 책임이 매우 있다
- ② 책임이 조금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책임이 별로 없다
- ⑤ 책임이 전혀 없다

3.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하는 위치에 V표시 해주십시오.



4. 청소년 미혼모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___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조금 필요하다
 ___ ⑤ 매우 필요하다
5.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
 ___ ②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의 교육 환경 및 학력신장
 ___ ③ 직업훈련 및 취업연결 서비스
 ___ ④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
 ___ ⑤ 한시적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연결(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
 ___ ⑥ 기타()

B. 지도경험

1. 학교에 근무하시는 동안(현재 재직 학교 이전의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없다 (☞ 바로 C 학교조치로 가십시오.)
 ___ ② 있다
2. 임신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___ ① 상담
 ___ ② 부모에게 연락
 ___ ③ 학생생활지도부에 의뢰

- ___④ 병원에 데리고 감
- ___⑤ 기타 ()

3. 결과적으로 임신했던 학생은 아기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 ___① 낙태하였다
- ___② 출산 후 입양보냈다
- ___③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
- ___④ 잘 모르겠다
- ___⑤ 기타()

4. 임신했던 학생의 학업지속 상태는 어땠습니까?

- ___① 원적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녔다
- ___② 얼마동안 휴학한 후 복학하였다
- ___③ 전학하였다
- ___④ 자퇴하였다
- ___⑤ 기타()

C. 학교조치

1. 귀하는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학교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예
- ___② 아니오

2. 위 질문에 대해 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3. 지금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 출산기간 동안 휴학이 필요하다면 휴학한 후 다시 복학하도록 한다
- ② 전학하도록 한다
- ③ 자퇴시킨다
- ④ 기타()

4. 귀하는 학교에 임신(출산 예정) 중이거나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학생이 있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는 청소년 미혼모가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격 학교에서 계속 공부
- ② 원격학교의 위탁교육(원격학교 졸업으로 인정)
- ③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
- ④ 자퇴후 검정고시
- ⑤ 대안학교로 전학
- ⑥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취업 기술교육(원격학교 졸업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⑦ 기타()

6. 최근 대만에서는 중·고교생들을 위한 출산휴가정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중·고등학생이 임신한 경우 56일의 출산휴가 및 최고 2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가기간은 결석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___ ① 매우 부정적 ___ ② 약간 부정적
 ___ ③ 보통 ___ ④ 약간 긍정적
 ___ ⑤ 매우 긍정적

7.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D.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1.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
- ② 학습 동기 부재
- ③ 학교 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
- ④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
- ⑤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
- ⑥ 긴 학업 중단으로 인한 기초 학력의 저하
- ⑦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 ⑧ 경제적 어려움

- ⑨ 스스로 느끼는 자신과 학교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 ⑩ 친부모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부모자녀관계 악화
- ⑪ 미혼부와의 불안한 관계
- ⑫ 기타()

2.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② 미혼모시설 수의 확대
- ③ 미혼모시설 거주기간 연장
- ④ 경제적 지원
- ⑤ 의료 지원
- ⑥ 상담 서비스 확대
- ⑦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유도
- ⑧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⑨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 지원 확대
- ⑩ 아기를 위한 보육비(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⑪ 친부모 등 가족관계 강화 지원
- ⑫ 기타()

E. 일반적 사항

1. 다음 중 귀하는 어떤 유형의 학교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 ___ ① 중학교
 - ___ ② 일반계 고등학교
 - ___ ③ 실업계 고등학교
 - ___ ④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___⑤ 기타()

8.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___① 대학 졸업

___②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이상)

___③ 대학원 졸업(박사학위 이상)

9.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20대

___② 30대

___③ 40대

___④ 50대

___⑤ 60대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인쇄일 | 2007년 12월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빌딩 6층

전 화 | 062) 710-9712

홈페이지 | <http://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036-293330